



대학 창의적 자산 기반 창업 길잡이



대학 창의적 자산이란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나 학생이 창의적 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아이디어, 발명, 콘텐츠 등의 지식자산을 의미하며, 대학 창의적 자산이 창업으로 연계되는 방식에는 대학 주도형 창업, 교원 주도형 창업, 학생 주도형 창업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대학 창의적 자산기반 창업 길잡이는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나 학생이 만들어낸 창의적 자산을 창업으로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안내서입니다.

이 도서에 수록된 내용들은 집필진의 견해이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이 도서를 주로 활용할 대학 관계자께서는 도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대학별 특성에 맞는 창업 매뉴얼을 확립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대학 창의적
자산 기반

창업

길잡이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대학 창의적 자산 기반 창업 길잡이 / 집필진 : 김유신, 이지훈,
김해도, 박태식, 류인호, 김한기. — [세종] : 교육부 ; 대전 :
한국연구재단, 2016

p. ; cm

ISBN 979-11-86956-04-5 93320 : 비매품

창업[創業]

산학 협력[産學協力]

325.21-KDC6

658.11-DDC23

CIP2016019675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
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
(<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6019675)



대학 창의적 자산 기반
창업 길잡이

Contents

I 개론

1. 창업의 이해 _ 8
2. 대학기반 창업의 유형 _ 11

II 대학(산학협력단) 주도형 창업

1.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_ 16
2. 신기술창업전문회사 _ 34
3. 학교기업 _ 37

III 교원 또는 학생 주도형 창업

1. 교원창업 _ 46
2. 학생창업 _ 52

IV 대학기반 창업의 특수 유형

1. 벤처기업 _ 60
2. 연구소기업 _ 66
3. 사회적기업 _ 73
4. 협동조합 _ 79

부록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_ 90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_ 107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_ 120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_ 153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_ 176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_ 203
7. 사회적기업 육성법 _ 221
8.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_ 228
9. 협동조합 기본법 _ 235
10.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_ 264



표 목차

I. 개론

- | 표 1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_ 10
- | 표 2 | 대학기반 창업기업의 일반유형 _ 11
- | 표 3 | 대학기반 창업기업의 특수유형 _ 12
- | 표 4 | 대학기반 창업기업 설립준비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_ 13
- | 표 5 | 기술지주회사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실업실창업에 대한 제도 비교 _ 14

II. 대학(산학협력단) 주도형 창업

- | 표 6 | 연도별 기술지주회사 설립현황(2016 6월 기준) _ 20
- | 표 7 | 기술지주회사 설립 지역별 분포(2016년 6월 기준) _ 20
- | 표 8 | 연도별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현황 _ 21
- | 표 9 | 자회사 설립의 3가지 주요 방식의 장단점 _ 23
- | 표 10 | 자회사 설립(발기 설립 등) 프로세스 _ 26
- | 표 11 | 자회사 설립 등기 후 후속처리 프로세스 _ 27
- | 표 12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및 사업화 모델(예시) _ 28
- | 표 13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개요 _ 34
- | 표 14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현황 _ 36
- | 표 15 |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 현황 _ 41
- | 표 16 | 2014년 학교기업 운영 순위(4년제 대학) _ 41
- | 표 17 | 2014년 학교기업 운영 순위(전문 대학) _ 42

III. 교원 또는 학생 주도형 창업

- | 표 18 | 교원창업의 발생 가능 유형 _ 46
- | 표 19 | 대학의 교원창업기업 설립 및 운영 현황 _ 51
- | 표 20 | 2014년 교원창업기업의 설립을 허가한 대학수 _ 51
- | 표 21 | 창업교육 제공 사업 _ 53
- | 표 22 | 창업관련 정보 제공처 _ 53
- | 표 23 | 창업관련 공모전 _ 53
- | 표 24 |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_ 54
- | 표 25 | 창업관련 종합지원 프로그램 _ 54



- | 표 26 | 창업자금 용자 및 보증 _ 54
- | 표 27 |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_ 55
- | 표 28 | 창업관련 자금조달(크라우드 펀딩) _ 55
- | 표 29 | 창업기획사 _ 55
- | 표 30 | 창업기업 엑셀러레이터 _ 55
- | 표 31 | 창업기업 마케팅 _ 56
- | 표 32 | 창업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 _ 56
- | 표 33 | 창업보육 프로그램 _ 56
- | 표 34 | 창업공간 지원 _ 56

IV. 대학기반 창업의 특수 유형

- | 표 35 | 유형별 벤처 확인 기업수(2016년 6월 기준) _ 62
- | 표 36 | 벤처기업 등록 유형 _ 63
- | 표 37 | 벤처기업 지원 제도 _ 64
- | 표 38 | 연구소기업의 설립유형별 특성 _ 68
- | 표 39 |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 _ 69
- | 표 40 | 연구소기업 설립 세제혜택 _ 71
- | 표 41 | 연구소기업과 유사제도의 비교 _ 72
- | 표 42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_ 75
- | 표 43 | 권역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리스트 _ 77
- | 표 44 | 사회적기업의 권역별 인증수 _ 78
- | 표 45 | 사회적기업 인증 사례 _ 78
- | 표 46 | 국제협동조합연맹이 표명한 협동조합의 7대 기본원칙 _ 80
- | 표 47 | 숫자로 풀어본 알기 쉬운 협동조합기본법 _ 82
- | 표 48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_ 83
- | 표 49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전후 비교 _ 83
- | 표 50 | 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_ 84
- | 표 51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_ 85



그림 목차



I. 개론

- | 그림 1 | 대학기반 창업 유형 _ 12
- | 그림 2 | 대학관련 창업유형의 의사결정 흐름도 _ 13

II. 대학(산학협력단) 주도형 창업

- | 그림 3 |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본 구조 _ 16
- | 그림 4 | 기술지주회사의 운영체제 _ 18
- | 그림 5 | 전국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지역 분포 _ 21
- | 그림 6 | 자회사 설립의 3가지 주요 방식 _ 23
- | 그림 7 | 자회사 설립의 내부 기본프로세스(예시) _ 24
- | 그림 8 | 자회사 설립의 외부 프로세스 _ 15
- | 그림 9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투자회수 전략(예시) _ 27
- | 그림 10 | 사립대학의 대학(교비회계) 소속 학교기업 조직 설치(예시) _ 38
- | 그림 11 | 사립대학의 산학협력단 소속 학교기업 조직 설치(예시) _ 38
- | 그림 12 | 국·공립대학의 산학협력단 소속 학교기업 조직 설치(예시) _ 39
- | 그림 13 | 학교기업 설치절차 _ 39

III. 교원 또는 학생 주도형 창업

- | 그림 14 | 교원(실험실)창업 절차 (예시) _ 49
- | 그림 15 | 한양대학교 실험실창업 설립절차 및 주요내용 _ 50

IV. 대학기반 창업의 특수 유형

- | 그림 16 | 업종별 벤처 확인 기업수(2016년 6월 기준) _ 62
- | 그림 17 | 연도별 벤처 확인 누적기업수(2016년 6월 기준) _ 62
- | 그림 18 | 벤처확인신청 절차 흐름도 _ 65
- | 그림 19 | 연구소기업의 개념도 _ 66
- | 그림 20 | 연구소기업의 설립유형 _ 68
- | 그림 21 | 연구소기업의 설립과 등록단계 _ 70
- | 그림 22 | 사회적기업의 영역 _ 73
- | 그림 23 | 사회적기업의 역할 _ 74
- | 그림 24 | 사회적기업의 인증 절차 _ 76
- | 그림 25 | 일반협동조합(9,280개)의 지역별 분포 _ 86



I. 개론

1. 창업의 이해

2. 대학기반 창업의 유형

창업



1. 창업의 이해

가 창업이란?

- 창업이 무엇인지는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으나 통상 창업이란 창업자가 어떤 목적을 가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 즉,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만드는 과정으로, 창업자가 사업의 기회를 포착하여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자본, 인력, 설비 등 경영자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 참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의 창업관련 정의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창업가란?

- 창업가란 올바른 기업가정신에 입각하여 기업을 창업하고 경영활동을 행하며, 선구자적 모험정신을 통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를 의미한다.
- 통상 창업가는 전문경영자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리더로, 자금조달, 기업혁신, 리더십, 조직관리, 정보전달, 의사결정 등과 같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창업가는 조직을 설계하고 통제,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었으나, 현대의 창업가에게는 기업혁신, 리더십, 정보전달, 의사결정 등 다양한 기능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기업성장을 유도하는 혁신 기능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다 창업 준비 요소

- 창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필요하나 다음과 같은 4가지가 비교적 중요한 요소이다.
 - ① 바람직한 기업가정신과 사업에 대한 비전 (Mind)
 - ② 핵심 인적 자원 (Team)
 - ③ 사업을 시작하고 영위하기 위한 자본 (Money)
 - ④ 창업 환경과 시장을 고려한 적절한 시점 (Timing)

라 창업을 위한 사업타당성 분석

- 사업타당성 분석이란 사업 아이디어가 제품화 과정을 거쳐 시장에서 수요를 창출하여 사업이 성공할 가능성의 여부를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이는 재무 경제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창업자를 실패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전점검 장치라 할 수 있다.
- 통상 사업타당성 검토는 외부 전문가 또는 제3자의 객관적이고 냉정한 검토를 받아보는 절차가 필요하다.
-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사업타당성 분석을 통해 통상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 ①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 ② 필요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효율적으로 파악하여 창업 준비기간을 단축 가능하다.
 - ③ 창업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검토와 위기관리가 가능하다.
 - ④ 창업자의 경영능력을 향상시키고 사업지식의 습득이 가능하다.

마 창업을 위한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사업에 대한 밑그림으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전반에 대한 내용을 문서화한 것이다.
- 사업계획서 작성의 기본원칙은 통상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요약 가능하다.
 - 신뢰성, 간결성, 합목적성, 성실성, 객관성, 유연성, 일관성, 검증가능성



1. 개론

- 사업계획서의 구성내용은 통상 다음과 같다.
 - ① 사업소개 : 회사 및 창업자, 아이템/사업모델, 상품/서비스/기술, 내부 핵심역량
 - ② 조사/분석 : 시장 및 고객, 기술 및 서비스, 경쟁업체 및 상품, 상권 및 입지, 법률 및 환경
 - ③ 계획수립 : 비전 및 전략, 투자 및 자금계획, 시설계획, 마케팅 및 영업계획, 조직 및 인력계획
 - ④ 이익확인 : 추정 매출액, 비용 및 이익, 자금수지 계획, 현금흐름 계획, 투자회수 계획

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약 99%는 개인사업자 또는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사업자이고, 나머지는 유한회사나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통상 아래 표와 같이 요약 가능하다.

| 표 1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개인사업자	분류기준	법인사업자
기업과 기업주가 동일 기업의 손익이 기업주의 손익	이익 배분	기업의 이윤은 주주의 지분에 따라 배당
기업설립절차 간편 (사업자등록으로 개시)	기업설립 절차	발기 또는 모집설립 시, 법인등기 절차 필요
경영활동의 의사결정 신속	의사결정	주요 의사결정은 주주총회, 이사회 의결 필요
경영에 따른 기업주의 무한책임	기업주의 책임	투자한 자본의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
투자 및 차입 등 자본조달의 어려움	자본조달	주주 또는 제3자를 통한 자본조달이 상대적 용이
소규모 사업에 적합 추후 법인사업자로 전환 가능	사업 규모	법인에 대한 대외 공신력 등으로 경영 및 영업활동 규모가 큰 사업에 유리
소득세법	적용세법	법인세법
소득금액에 따라 6~38%(5단계)의 초과누진세율 구조	세율	소득금액에 따라 10~22%(3단계)의 초과누진세율 구조

2. 대학기반 창업의 유형



가 대학기반 창업의 유형

- 대학기반 창업의 일반유형은 대체로 1)대학(또는 산학협력단) 주도형 창업, 2)교원 주도형 창업, 3)학생 주도형 창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이 중 대학 주도형 창업은 기업의 설립이나 설치 형태와 근거법에 따라 1)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2)신기술창업전문회사, 3)학교기업으로 구분된다.
- 상기에 열거한 일반유형의 대학기반 창업기업들은 관계 법률에 따라 인증이나 등록과정을 거쳐 1)벤처기업, 2)연구소기업, 3)사회적기업, 4)협동조합 등과 같은 특수유형의 성격을 보유할 수 있다.

| 표 2 | 대학기반 창업기업의 일반유형

창업유형	기업 설립 또는 설치 형태 (근거 법규)	특수유형의 인증 또는 등록 가능성(*)			
		벤처기업	연구소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대학 주도형 창업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	○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	○	×
	학교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	×	×
교원 주도형 창업	일반인 창업기업과 동일 (학교 내규)	○	○	○	○
학생 주도형 창업	일반인 창업기업과 동일 (특별한 근거 법규 부재)	○	○	○	○

* 인증 또는 등록 가능성 :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1. 개론

표 3 | 대학기반 창업기업의 특수유형

유형	근거법	비고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요건을 갖추면 인증서 발급
연구소기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
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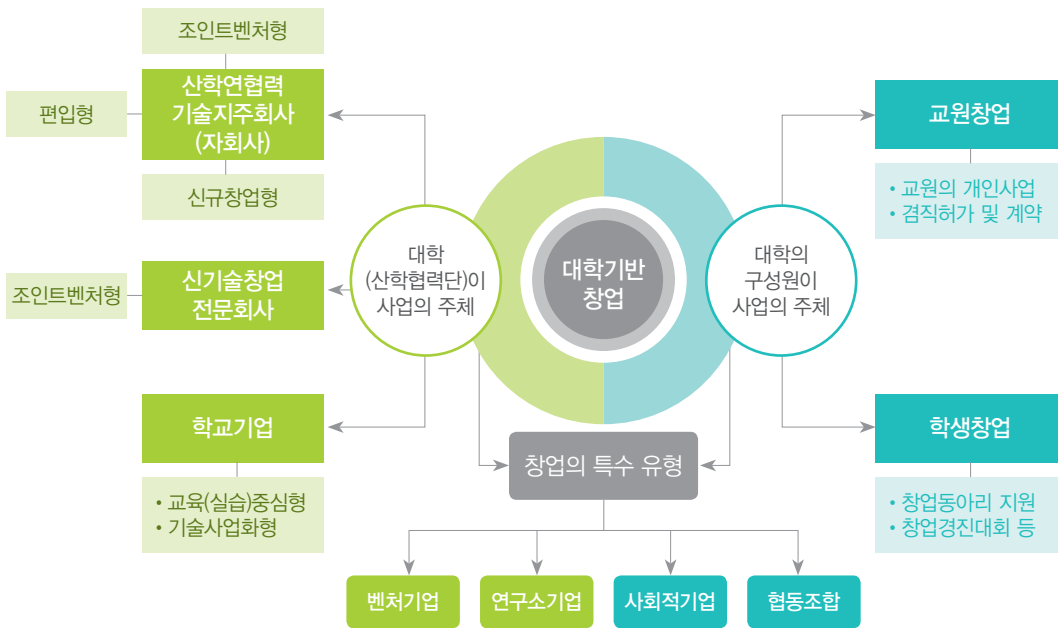


그림 1 | 대학기반 창업 유형

나

대학관련 창업유형의 결정방식

- 대학관련 창업유형의 결정방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창업아이템 발명자의 신분(교수 또는 학생)과 창업 추진 주체에 따라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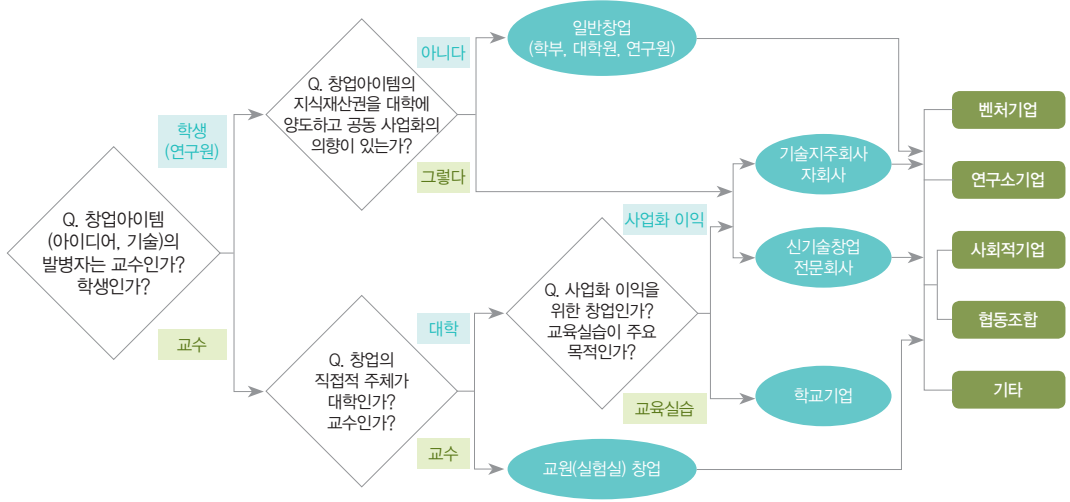


그림 2 | 대학관련 창업유형의 의사결정 흐름도

표 4 | 대학기반 창업기업 설립준비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기관명	웹사이트 주소	주요 내용
(사)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www.kath.or.kr	• 기술지주회사(협회) 소개 • 관련사업 안내, 회원교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사업)소개 • 연구소기업지원사업 안내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www.koef.or.kr/koef	• 기업가정신(교육)사업 소개 • 기업가정신 관련자료 안내
학교기업지원포털	www.sbe.or.kr	• 학교기업지원사업 소개 • 현황, 통계, 우수사례 소개
(사)벤처기업협회	www.venture.or.kr	• 벤처기업 현황 및 통계 • 벤처기업 혜택 및 지원사업
벤처인(venturein)	www.venturein.or.kr	• 벤처기업 확인 절차 안내 • 벤처기업 확인 온라인 신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	• 사회적기업 현황 및 통계 • 지원사업 및 인증업무
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사이트 COOP, 서울시협동조합지원센터	www.coop.go.kr www.15445077.net	• 협동조합 안내, 현황, 통계 • 협동조합 설립 지원, 상담



다 대학 보유기술 기반 창업의 주요 유형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행 법규상 대학관련 창업유형은 여러 가지이나, 대학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 기업은 크게 1)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자회사 포함), 2)신기술창업전문회사, 3)교원창업 기업 3가지라고 할 수 있다.

[표 5] 기술지주회사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실험실창업에 대한 제도 비교

구분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교원(실험실)창업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산학협력단)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전문적인 경영지원을 통해 자회사를 성공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전문조직으로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 운영하는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산학협력단)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설립하는 회사의 지분을 산학협력단이 직접 소유, 지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하는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명자가 관련 법률에 근거, 학교장의 승인으로 창업하고, 창업 기업의 실질적 경영권자로서 권한과 책임을 갖는 모델(개인 영리사업의 성격)
소관법률 (인가부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36조의2 (교육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8항 (중소기업청)	대학 내규 (학교장)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사업화 • 각 (창업)회사에 참여하는 교직원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소속 대학의 장이 승인하는 겸직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창업기업에 임직원으로 활동 가능 • 상법상의 영리회사로 설립, 운영(산학협력법 제36조 상의 학교기업과 별개) 		
지분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지분 20% 이상 보유 • 현물출자 금액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발명자 보상 • 현물과 현금 투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학협력단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지분 10% 이상 보유 • 대학이 설립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자회사를 둘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자에 의한 독자적 지분구성 (일반적으로 대학과의 계약에 의해 소규모의 지분을 기부, 통상 5% 이하)
지재권 (라이선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로 지재권 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회사로 지재권 출자(현금만으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시, 창업회사로 기술 이전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재권은 대학소유가 기본, 필요 시 계약에 의해 개별 실시권 확보 또는 양수도(계약에 따라 기술료 지급)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회사의 사업실패 시, 기술지주회사가 완충역할을 수행(회계, 법률적 책임 등) • 사업화전문가들의 경영지원을 통해 사업성공률 제고(경영관리, 파이낸싱 등) • 발명자의 과도한 경영참여부담 및 재무적 부담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산학협력단) 직접 설립으로 초기 비용의 절감효과 • 사업화 성공 시, 중간 버퍼의 생략으로 기대이익의 상대적 규모가 산술적으로는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창업자)의 독자적인 경영과 기업의 소유형태로 사업화의 자율권 확보 • 상대적으로 높은 창업자(교수, 발명자) 지분을 확보 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초기 설립,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 • 단독설립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자회사 지분을 가능성 - 사업의 성공률과 규모 제고를 통해 전체 수익 발생을 키우는 보완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기업의 사업실패 시, 대학(산학협력단)으로 직접적인 충격이 전달(회계, 법률 등)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수가 늘어날수록 산학협력단의 관리, 통제, 지원의 어려움 발생(전문적인 사업화 수행 사실상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실패의 책임은 창업자 • 낮은 성공률(경영경험 부족 및 수업, 연구, 기타 활동 병행이 일반적) • 사업실패 시, 의도 되지 않은 대학의 피해 발생 가능(사업에 대한 통제, 관리 어려움)



Ⅱ. 대학(산학협력단) 주도형 창업

1.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2. 신기술창업전문회사
3. 학교기업

창업



1.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가 개요

기술지주회사의 개념 ▶▶▶

-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란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조직을 말한다.

| 참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정의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 “자회사(子會社)”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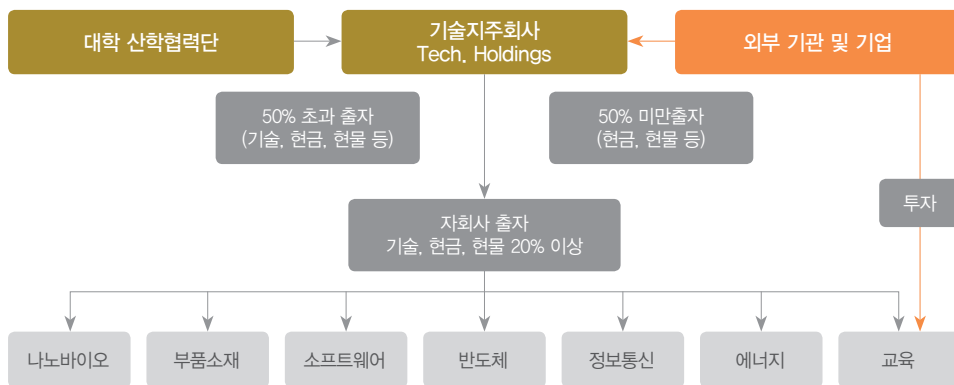


그림 3 |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기본 구조

기술지주회사가 필요한 이유 ▶▶▶

- 우리나라 대학에 기술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산학공동연구, 기술이전, 실험실창업 등 기존의 대학 기술 사업화 유형의 단점을 극복하고 보완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 기술지주회사제도는 자회사 설립 경로를 활용하여 대학 주도의 전략적 기술사업화가 가능하고 자회사가 성공 시는 단순 기술이전에 비해 큰 규모의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 또, 기술지주회사제도를 활용하면 대학(산학협력단)이 직접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방식(학교기업 등)에 비해 비즈니스로 인한 위험요인(제조물이나 서비스 관련 손해배상 소송, 기업채무에 대한 연대책임 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 ▶▶▶

- (기본업무) 기술지주회사의 기본업무는 자회사 설립 및 경영 지원이다.
- (기타업무) 기술지주회사는 상기의 기본업무 이외에도 목적사업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이나 기술사업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대학의 특성에 따라 산학협력 관련조직(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 기업가센터 등)과 협력하여 기술이전, 인큐베이팅, 교육, 컨설팅 등의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다.
 - 특히 2016년 4월 12일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제9호)'이 개정됨에 따라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거나 자회사에 출자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조합의 결성뿐만 아니라 투자조합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 참고 | 기술지주회사의 펀드투자조합 참여 가능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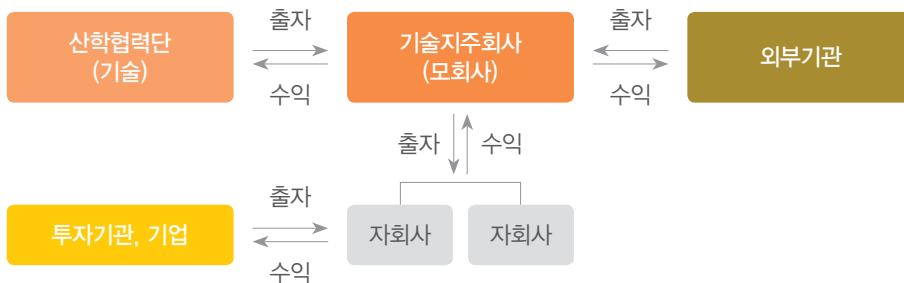
2016년 4월 12일 이전	2016년 4월 12일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조합의 단순투자자(LP : 유한책임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조합의 단순투자자(LP : 유한책임사원) • 개인투자조합 운용사(GP : 업무집행조합원)



II. 대학(산학협력단) 주도형 창업

기술지주회사의 업무(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1. 자회사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자문 업무
2. 자회사의 기업 공개를 지원하는 업무
3. 자회사와 다른 회사 간의 합병, 자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매각, 자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자회사의 분할 등에 관한 업무
4. 자회사의 자원 조달을 지원하는 업무
- 4의2. 자회사에 대한 시설임대 업무
5.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가 보유한 기술의 자회사에 대한 이전·사업화 및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자회사의 홍보, 교육·훈련, 마케팅에 관한 업무
7. 창업보육센터, 실험실공장,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산업기술단지 또는 교지 안에 설치·운영 되는 기업 및 연구소와의 상호 협력 업무
8.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는 업무
9.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거나 자회사에 출자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조합 결성 또는 운영 업무
10.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등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무
11. 해당 산업교육기관과 자회사 외의 다른 산업교육기관 및 다른 회사에 대한 기술·경영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업무



[그림 4] 기술지주회사의 운영체계

참고 | 지방자치단체가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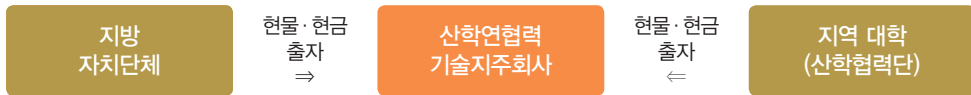
1. 기술지주회사에 간접(우회) 출자하는 방식

-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현금·현물을 지자체 출연기관에 출연하여 지역대학과 지자체 출연기관이 공동으로 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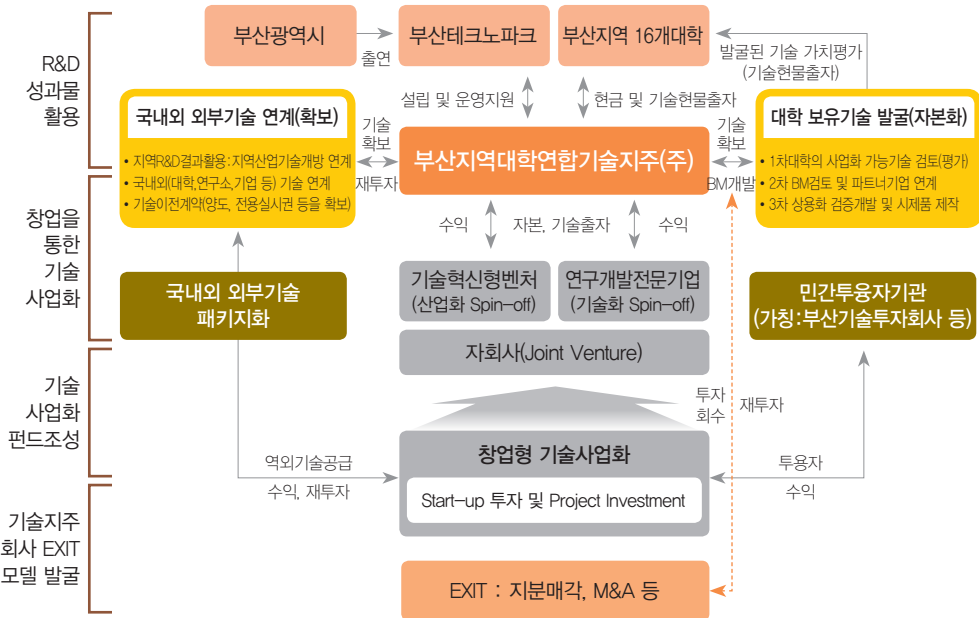


2. 기술지주회사에 직접 출자하는 방식(아직까지는 사례 없음)

- 지자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 현금·현물을 출자하여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하는 방식



〈부산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운영모델〉





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설립 현황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

- 한양대학교가 제1호 기술지주회사를 2008년 9월에 설립한 이래, 2016년 6월까지 총 46개의 기술지주회사가 설립되었다.
→ 참고로 연합설립에 참여한 대학을 포함할 경우, 2016년 6월까지 총 77개 대학이 기술지주회사 설립에 참여하였다.
- 기술지주회사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50%로 가장 많고, 동남권과 충청권 13%, 호남권과 대경권이 8.7%, 강원권 4.3%, 제주권 2.1%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표 6 | 연도별 기술지주회사 설립 현황(2016년 6월 기준)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
기술지주회사	2	6	5	3	7	5	9	1	10
누적	2	8	13	16	23	28	35	36	46

| 표 7 | 기술지주회사 설립 지역별 분포(2016년 6월 기준)

구분	수도권	호남권	동남권	대경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권	계
기술지주회사 수	23	4	6	4	6	2	1	46
비율	50.0%	8.7%	13.0%	8.7%	13.0%	4.3%	2.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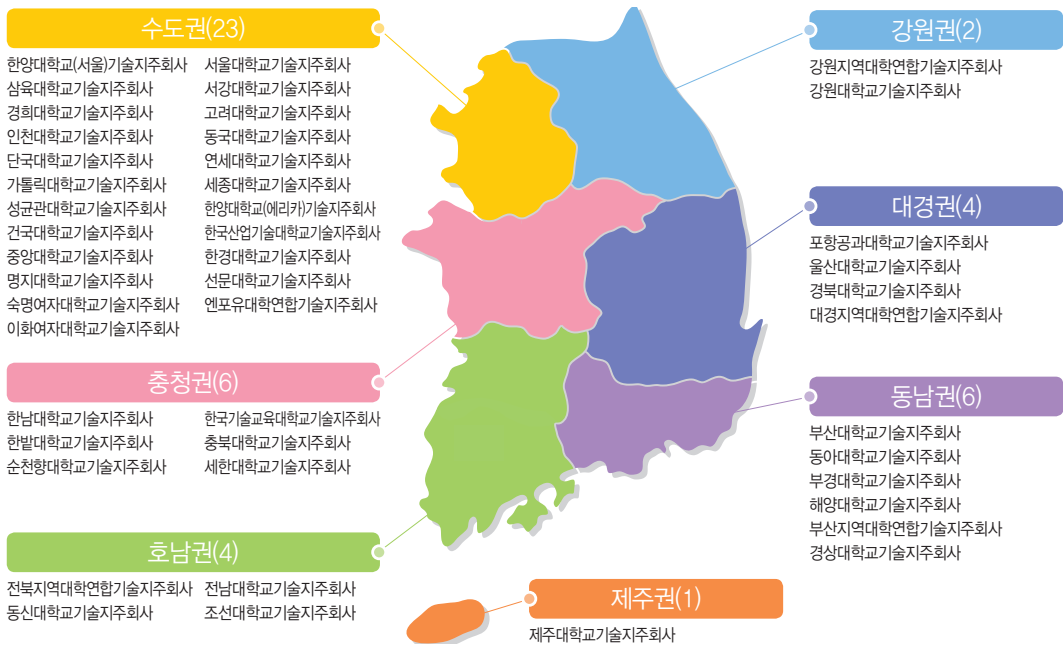


그림 5 | 전국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지역 분포

기술지주회사 자회사의 설립 ▶▶▶

- 2016년 6월 기준, 46개 기술지주회사가 총 334개 자회사를 설립하였다.

표 8 | 연도별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현황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6.
자회사	2	16	26	32	43	25	57	71	70
누적	2	18	44	76	119	144	201	272	342* (334**)

* 자회사 설립 현황 : 설립 누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EXIT · 폐업 · 휴업 자회사 전부 포함

** 기술지주회사 공동자회사 중복을 제외한 자회사 수



다 자회사 설립 방식

-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이 1)단독설립, 2)조인트벤처, 3)자회사편입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단독설립 ▶▶▶

- 대학이 보유한 유망기술을 기반으로 기술과 자본을 초기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① 출자대상 기술의 완성도가 높고, 단기간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한 자회사 설립 방식에 적합하다.
 - ② 자회사 설립을 통한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대학에 배당되는 수익 창출 규모가 크다.
 - ③ 대학이 독자적으로 사업화 검증과 현금출자를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조인트벤처 ▶▶▶

- 대학이 보유한 유망기술과 외부기업(기관)과 합작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① 대학은 주로 기술출자와 연구를 담당하고 외부기업은 자금출자와 마케팅·경영관리·상용화 개발을 담당하는 방식의 협업이 이루어진다.
 - ② 대학은 상용화 개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기업은 대학의 우수기술 확보를 통한 전략적 R&D 자원 발굴이 가능한 방식이다.
 - ③ 동 모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1)협력의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파트너 기업의 발굴, 2)상호 협력의 범위와 역할의 명확화, 3)지분구조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 담보 등이 관건이다.

자회사 편입 (기존 기업에 출자) ▶▶▶

- 대학이 보유한 유망기술 분야의 유관기업에 기술을 출자하여 해당기업의 주식(지분)을 인수하고 이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① 통상 창업 초기기업이며, 대학보유 유망기술과 관련성이 높은 기업이 대상이다.
 - ② 자회사 프로세스의 신속한 진행과 저비용 및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지만, 현금출자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기술지주회사의 경영지원이 동반되어야 하며, 해당기업의 기본 경영전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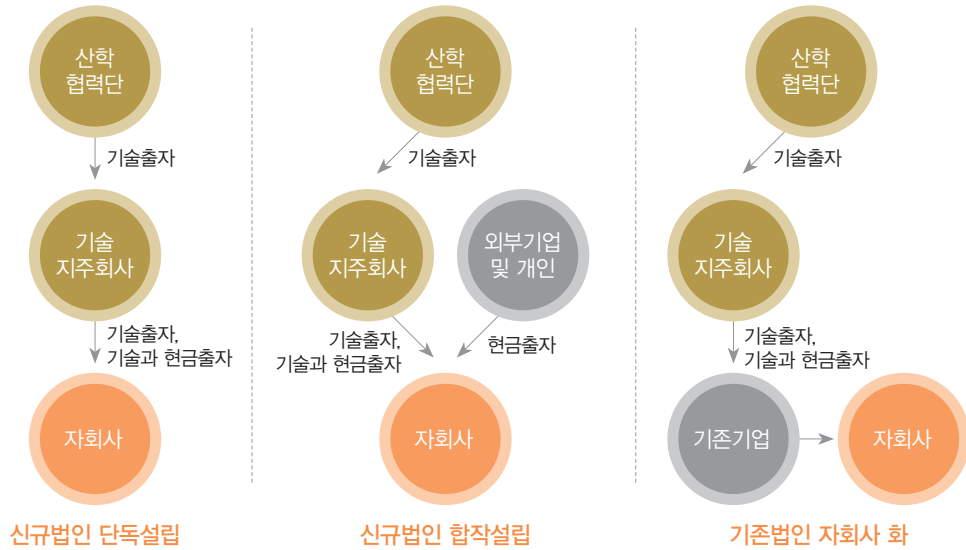


그림 6 | 자회사 설립의 3가지 주요 방식

표 9 | 자회사 설립의 3가지 주요 방식의 장단점

방식	장점	단점
단독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 및 설립 이후 경영에 있어 의사결정구조의 단순 및 신속성 사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규모 있는 수익창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자적인 사업화 검증 시스템과 현금출자에 대한 부담 자회사 설립단계부터 전문적인 경영지원에 따른 유무형의 비용증가
조인트벤처(합작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은 상용화 개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며, 기업은 대학의 우수기술 확보를 통한 전략적 R&D자원 발굴이 가능하고, 이를 통한 중장기 성장전략의 계획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의 시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파트너 기업의 발굴과 상호 협력의 범위 및 역할, 지분구조 및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합의하는 것이 관건
자회사 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회사 프로세스의 신속한 진행과 저비용, 긴밀한 협력이 가능 사업화타당성 및 상용화에 대하여 어느정도 시장에서의 검증 확인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출자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기업의 기본 경영전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기술지주회사의 추가적인 경영지원의 필요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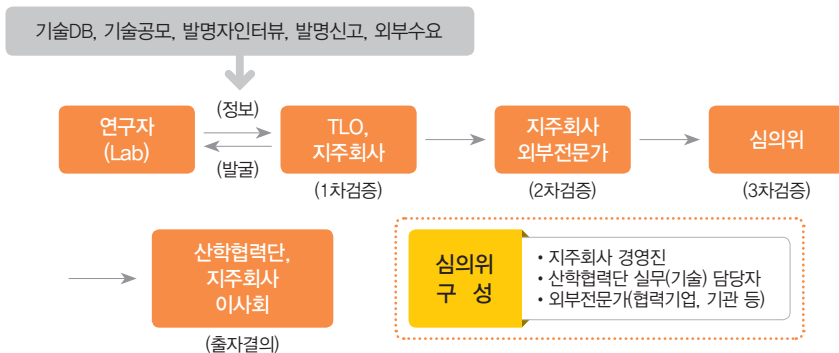
라 자회사 설립 절차

개요 ▶▶▶

- 자회사 설립의 프로세스는 설립 형태(단독설립, 조인트벤처, 자회사 편입 등)에 따라 세부내용 및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 따라서 기술지주회사를 통해 단독설립하는 형태(외부기업 미 참여)를 기본 프로세스로 하여, 기타 형태들의 특수한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회사 설립 내부 프로세스 ▶▶▶

- 기술발굴 및 수요의 출발점이 다를 수는 있으나, 자회사 설립 내부(산학협력단 보유기술의 기술지주회사 출자) 프로세스 단계에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 ① 기술 개발자인 발명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사업화 후보기술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획득하고, 이후 사업화 검증에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기술성, 사업성 및 상용화 가능성 검증이 이루어진 (특허)기술의 출자를 위한 가치평가를 진행하기 전까지 산학협력단의 내부 심의 및 결의, 기술지주회사의 심의 및 이사회(주주총회)를 통한 결의가 주요한 프로세스이다.
 - ③ 대학 또는 기술지주회사의 형태에 따라 단계별 심의 및 평가 등이 추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연합 기술지주회사의 경우 각 설립주체와의 합의과정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수 있다.
 - ④ 자회사 설립 시 이후 투자 및 금융지원을 고려하여 협력기관의 심의 또는 평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 ⑤ 설립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문서, 내부기안, 외부 협조문 등의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해야 한다.



| 그림 7 | 자회사 설립의 내부 프로세스(예시)

자회사 설립 외부 프로세스 ▶▶▶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과 관련된 외부(기술지주회사에 출자된 기술을 활용한 자회사 설립) 프로세스는 통상 다음과 같은 7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	기술지주회사 내부심의	신규 자회사 설립(편입) 타당성 내부 심의 및 결의	기술지주회사 내부 (예 : 투자심의위원회)
2	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	현물 출자 재산(기술)에 대한 법원의 인가	관할 지방법원
3	기술지주회사 이사회 개최	신규 자회사 출자 및 신주 발행사항(현물 증자) 의결	기술지주회사 이사회
4	현물출자용 가치평가 검사	현물 출자 재산(기술)에 대한 법원의 인가	관할 지방법원
5	현물출자의 이행(권리 이전)	현물 출자 재산의 권리 이전 (기술지주회사 → 자회사)	특허청
6	자회사 출자(발기 설립 등기)	현물 및 현금 유상증자에 따른 변경사항 등기	관할 등기국
7	자회사 설립등기 후 후속처리	사업자등록, 은행거래계좌 개설, 4대 보험 신고, 자회사 설립(편입) 보고 등	업무별 해당 기관

| 그림 8 | 자회사 설립의 외부 프로세스

① 기술지주회사 내부 심의·결의

기술지주회사 경영진, 기술지주회사 실무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자회사 설립을 위한 기술지주회사 내부 심의와 결의를 진행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산학협력단 경영진이나 실무진이 기술지주회사 내부 심의에 참여한다.

② 자회사 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 실시

기술성, 사업성 및 상용화 가능성 검증이 이루어진 (특히)기술의 현물출자를 위한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한다. 현물출자를 위한 기술가치평가는 공인기관의 평가를 통해 산학협력단에서 기술지주회사로 출자한 후, 최초 확인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자회사로의 출자가 이루어 질 경우 최초 가치평가를 준용(별도의 추가 평가 없음)한다. 이 과정은 자회사에 기술현물출자 형태로 증자를 하지 않는 경우(현금 출자만을 하거나 기술이전인 경우 등)에는 필요 없다.

③ 기술지주회사 이사회 개최·결의

기술지주회사 이사회를 개최하여 자회사 설립(또는 편입)에 대한 심의 및 결의를 한다.



II. 대학(산학협력단) 주도형 창업

④ 자회사 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서 검사

자회사 현물출자용 기술가치평가 보고서에 대한 법원의 인가 신청(관할 지방법원)을 한다.

⑤ 자회사 현물출자의 이행(권리 이전)

자회사 현물출자용 기술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이전한다. 기술이 특허권인 경우는 특허청을 통해 특허권의 명의를 변경한다.

⑥ 자회사 설립(발기 등기, 현물 및 현금 출자)

자회사 설립을 위해 발기 등기를 통한 현금 및 현물을 출자(유상증자)한다. 경우에 따라 자회사 출자는 1)현금유상증자, 2)현물(기술 등)유상증자, 3)현금과 현물 병행한 유상증자 실시하여 자회사를 설립(또는 편입)한다.

| 표 10 | 자회사 설립(발기 설립 등) 프로세스

구분	세부내용	업무담당기관
① 발기인구성 회의	정관작성,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주식의 청약 및 배정	발기인
② 발기인의 주식 인수 (현금)	발기인은 납입기일까지 주금납입 완료	발기인
③ 발기설립 조사보고 (현물)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에 대한 법원의 인가	관할 지방법원
④ 현물출자의 이행	현물 출자 재산의 권리 이전(산단 → 지주회사)	특허청
⑤ 발기인총회 개최	정관승인, 이사 감사 선임, 현물출자 완료 보고 등	발기인
⑥ 이사회 개최	대표이사 선임 결의	발기인
⑦ 등록, 면허세 납부	등록세, 교육세 납부	관할 구청 법인세과
⑧ 설립 등기	법인 설립 등기	관할 등기국

⑦ 자회사 설립 등기 후 후속처리

자회사 설립 등기 후 실질적인 사업개시를 위한 후속 처리를 한다.

표 11 | 자회사 설립 등기 후 후속처리 프로세스

구분	세부내용	업무담당기관
① 사업자등록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청	관할 세무서
② 겸직허가 신청	대학소속 교수가 임원 등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허가 신청	해당 대학 본부
③ 금융거래 개설	법인통장, 인터넷 뱅킹, 법인신용카드 개설	해당 거래은행
④ 4대 보험 신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관할 지역본부
⑤ 취업규칙 작성, 신고	상시10인 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신고	관할 고용 노동지청
⑥ 변경사항 보고	기술지주회사의 변동내역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

마 자회사 설립 시 고려사항

자회사 설립단계부터 EXIT 전략 수립이 필요 ▶▶▶

-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 비즈니스 모델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회사가 일정 수준의 성장단계에 진입하였을 때 어떤 방식으로 투자금을 회수(EXIT)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전략을 자회사 설립단계에서 수립해야 한다.



그림 9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투자회수 전략(예시)



바 자회사 설립 상세 모델

-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3가지 방식(단독설립, 조인트벤처, 자회사 편입)을 기반으로 하나 실제 자회사 설립 모델은 무수히 많다.
- 아래 표는 실무상 이루어지고 있는 자회사 설립 및 사업화 모델(예시)이다.

| 표 12 |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및 사업화 모델(예시)

유형	설립모델(예시)	세부 내용
단독설립	대학 보유기술 단독출자	기술지주회사 단독으로 자회사 설립하여 보유기술을 사업화
단독설립 & 합작법인	학교기업의 자회사 전환	학교기업을 자회사로 전환하면서 단독창업 또는 합작법인으로 설립
단독설립 & 합작법인	대학자원을 활용한 자회사 설립	대학 보유한 특성화된 인프라(인적, 물적)를 활용한 단독창업 또는 합작법인으로 설립
단독설립 & 합작법인	외부기술 인수를 통한 자회사 설립	외부기술 인수(매입 등)하고 보유기술과 패키징하여 기술사업화 추진
단독설립 & 합작법인	해외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화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해외법인을 단독으로 설립하거나 해외진출(법인설립)을 희망하는 국내기업 또는 해외기업과 해외합작법인 설립
합작법인	기술 수요기업을 통한 사업화	파트너기업과 현물 또는 현물·현금 출자에 의한 자회사 설립
합작법인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사업화	기존 기업 또는 합작법인 설립 후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사업화(파트너 기업 발굴)
합작법인	사업화 모델링(신기술 창업자 발굴)을 통한 자회사 설립	창업자 발굴(BM기획) 후 기술출자, 현금출자(기술이전)에 의한 자회사 설립
합작법인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현금 출자에 의한 자회사 설립 후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합작법인	기술지주회사간 공동출자(법인 설립)을 통한 사업화	대학, 출연연, 파트너기업 등의 보유기술들을 패키징하여 공동 기술 사업화
합작법인	비영리·공공기관의 투자대행을 통한 사업화	지역 내 기술사업화 공동(협력)사업(기술사업화전문기관 역할)
합작법인 & 지분편입	교수·연구원 창업기업을 통한 사업화	교수, 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자회사 설립 또는 출자에 의한 편입
합작법인 & 지분편입	졸업생·학생창업기업을 통한 사업화	졸업생, 재학생 등과 공동으로 자회사 설립 또는 출자에 의한 편입
지분편입	기술이전으로 기존기업의 지분인수를 통한 사업화	기존 기술이전 받은 기업이나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기술 이전, 기술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분인수로 자회사 편입
지분편입	현금으로 기존기업의 지분인수에 의한 사업화	산학협력단을 통한 기술이전 이후 기술지주회사 현금으로 지분 인수하여 자회사로 편입하거나 현금으로 지분을 인수하여 자회사 편입 후 기술이전하는 경우

사 자회사 설립 사례

단독설립 사례 :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 자회사 ▶▶▶

- 자회사명 : (주)브이아이티시스템
- 핵심사항 : 국내·해외 특허를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였고, 기존제품 대비 저연산·고성능의 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으로 뛰어난 가시성 향상 결과를 제공함. 또한 최적화된 임베디드SW 모듈을 제공하여 HW의 재설계 없이 기존제품의 성능 향상이 가능. 기술 및 현금의 단독 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한 사례임
- 주요사업 : 차량용 카메라 영상변화 및 무선영상 송수신 관련 영상 처리
- 사업추진경과

단계	기간	추진내용	이슈사항
기술발굴단계	2011.01. ~ 2011.05.	• 전남대학교 내 TCSP(Technology Candidate Scouting Program)을 통한 기술 발굴	공모발굴
기술검증단계	2012.05. ~ 2013.10.	•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통한 기술검증 • 지주회사 시제품제작을 통한 기술검증	기술가치제고
사업기획단계	2012.11. ~ 2013.12.	• 일부 기술 (주)티디엘에 기술이전 • 사업화기획 및 사업타당성 평가 • 기술가치평가 실시	사업타당성 검토 및 기술이전
창업공간확보 및 법인 설립	2014.01. ~ 2014.03.	• 법인 설립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 • 벤처기업 인증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소기업 등록	창업공간 확보



II. 대학(산학협력단) 주도형 창업

단계	기간	추진내용	이슈사항
사업화 진행	2014.03.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특구 R&BD 사업 수주 (주)팅크웨어와 사업화협력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비게이션 K11, 차량용후방카메라, 블랙박스 (주)세오와 가시성 향상기술의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협의 엘이이노텍의 안전운전지원 카메라모듈의 프로세서 성능 등 기술적용 협의 동남아 Military Tech.社와 기술사업화 협의 	제품개발 공동사업화 추진

가시성 향상 기능 SW 및 HW 모듈에 의해 개선된 영상

안개나 야간 환경에서 가시성이 낮은 영상

조인트벤처(합작법인) 사례 : 강원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자회사 ▶▶▶

- 자회사명 : (주)아이엠헬스케어
- 핵심사항 : KOSDAQ 중견기업의 신사업 분야 진출을 위한 사업기획 초기부터 사업화 전략을 공동계 획하고 지역내 창업과 고용창출에 기여한 사례(파트너기업 발굴에 의한 지역 내 기술사업화 기업유치 사례)임
- 주요사업 : 나노와이어 바이오센서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 제조/판매
- 파트너기업 : (주)아이엠, 코스닥 상장사
- 사업진행사항

단계	기간	추진내용	이슈사항
BM검토단계	2009.05. ~ 2009.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아이엠의 신규사업 추진기획 정보입수 - 강원도 원주 의료기기산업 여건 설명 및 조건 협의 - 광역경제권선도산업(의료융합분야) 사업 공동기획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와협력) 	강원도에서 신사업추진 당위성 (본사:기흥)
사업계획단계	2009.12. ~ 201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아이엠, 강원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신규 자회사(J/V) 설립 및 사업화 기획 - 신규창업형기술개발사업 신청(탈락) 	신규법인 설립 수익모델
사업 재검토단계	2010.08. ~ 201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아이엠 경영위원회 설득을 위한 수정 및 사업계획 작성 - 아이엠헬스케어 경영진 구성 문제 - 향후 매출계획의 타당성 등 	매출계획
창업공간확보 및 법인 설립	2010.10. ~ 201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공간 확보 및 입주심사계획서 공동작성(원주의료기기산업단지) • 법인설립 	인력확보 행정처리
사업화 개발	2011.03. ~ 20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주의료사업단과중국어지역에서U-healthcare(변좌형생체신호 측정기)시범 사업 추진 • Spi 응용제품 양산테스트 	양산제품 개발
BM 재설계 신제품 개발	2013.01.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pi 기술 기반 음이온 발생기-닥터유에스비 출시(2013. 1월) • IOT 기술 기반 체성분 분석기-스마트밸런스 양산 개시(2014. 하반기) • 일본, 독일, 중국과 사업계약 추진 중 - 2014년 매출 16억 달성 	매출확보

(Product Portfol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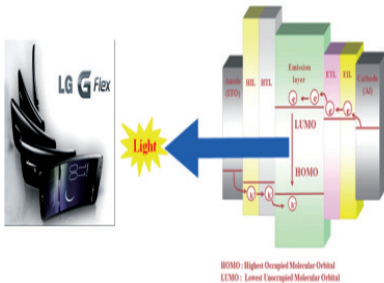


II. 대학(산학협력단) 주도형 창업

자회사(지분)편입 사례 :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

- 자회사명 : (주)위텔소재
- 핵심사항 : 신기술창업자 발굴 후 인큐베이팅 및 창업지원, 창업 이후 기술 및 현금출자를 통한 자회사 편입, 현재 총 65억원의 투자유치 성공 및 양산공장 개소에 따른 성장기반 확충함.
- 주요사업 : OLED 핵심소재 개발, 제조
- 주요성과 : KTB네트워크,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가 및 VC로부터 총 65억원의 투자유치 성공, 3,000평 규모 양산공장 완공
- 사업진행사항

단계	기간	추진내용	이슈사항
신기술창업자 발굴 및 인큐베이팅	2008.11. ~ 2009.01.	• 사업모델링 및 창업공간 확보 지원	창업공간
법인 설립	2009.01.	• 창업 행정절차 지원 • 기술보증기금 용자 및 정부과제 수주를 통한 자금조달 지원	R&D 자금조달
자회사 편입	2009.11.	• 특허 및 현금출자를 통한 자회사 편입	지분을 조정
사업 진행	2009.11. ~ 현재	• 대기업 납품 수주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영업지원 • 영업인력 채용 지원 및 양산공장 부지 공동 research • OO디스플레이 Vender 등록	인력확보 양산설비 확보
투자유치 성공	2012.06. ~ 2013.11.	• 투자유치 전략 수립 및 투자기관 섭외	투자처 발굴
양산 준비	2014.08. ~ 현재	• 익산공장 완공(3,000평)을 통한 자체 대규모 양산 능력 구축 • 양산대비 인력 확보 지원 • 신사업 확장을 위한 추가 투자유치 지원	인력 확보



OLED 소재 제품 적용



신축 양산공장

학교기업 전환 사례 :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

- 자회사명 : (주)엔비포스텍
- 핵심사항 : 학교기업 엔에스비포스텍으로 출범 및 운영 중 법인을 설립하여 당사 자회사로 편입. '16년도 상반기에 60억 원 투자 자금 유치 및 당사 보유 지분 일부 매각을 통해 30억 원 투자금 회수가 이루어짐
- 주요사업 : NanoCone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칩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 사업진행사항

단계	기간	추진내용	이슈사항
학교기업 운영	2006.04. ~ 2008.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스코, 포스텍에서 차세대 바이오칩 개발 • US, EU 및 주요국가에 특허 출원 • 1호 학교기업 NSB POSTECH 출범 	학교기업
법인 설립	2008.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엔에스비포스텍 설립(16.3 (주)엔비포스텍으로 상호 변경) • 대학 기술이전 및 지분 투자 	Spin-off
해외 사업 진출	2009.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내 자회사 NANOGEA 설립 	자회사 설립
1차 투자 유치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억 원 투자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PMTECH 10억 원 - (주)한독 10억 원 - 기타 6억 원 	투자 유치
자회사 편입	2013.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 	대학 보유지분 출자
사업 분야 확장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d, Wafer, 멤브레인 등 제품군 다양화 	제품군 다양화
2차 투자 유치	2016.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독으로부터 보통주 신주 발행 60억 원 투자 유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지주회사에서 투자계약 조건 검토 및 협상 지원 - 법률자문 위탁, VC 투자자문 진행 	법률자문 및 투자자문 위탁
투자금 회수	2016.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독에 보유 지분 일부 매각 추진을 통해 30억 원 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 대비 18배 	구주 매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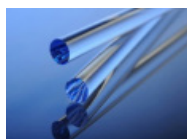
Slid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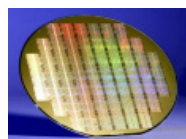
Protein Microarray



AFM Probes



Rod



Silicon Wafers



2.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가 개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제도의 도입배경 ▶▶▶

- 정부는 2007년 8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제11조의 2에서 7까지 신설)을 통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인적·물적 자원을 중소기업의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하기 위하여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제도의 개념 ▶▶▶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제도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등 현물과 현금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로써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제도와 유사하나 세부적인 운용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 참고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8항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8.3>

| 표 13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개요

형태	상법상 주식회사	주식소유	대학·연구소가 10% 이상 소유
임원 구성	금고이상 실행 후 5년 이내인 자 등 제외	주식소유	유사수신행위 금지 자회사와의 채무보증 등 금지
주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유기술의 직접사업화, 자회사 설립(대학 제외) • 창업보육센터의 설치·운영 • 신기술창업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이전 •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이전 알선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각종 실험실창업 지원 등) 		
수익의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연구기관의 고유목적 사업 •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설립 등록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의 2 제2항)」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설립 가능한 기관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의 2 제1항)」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은 1)대학(산학협력단 포함), 2)국공립연구기관, 3)정부출연연구기관, 4)전문생산기술연구소, 5)비영리법인(과학 또는 산업분야)이다.

설립 특례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의 5)」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가 있다.
 - 교원·연구원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대표나 임직원으로 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휴·겸직 및 겸임 특례를 허용한다.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시 산업재산권 등의 현물가치평가 특례가 허용된다.
 - * 기술지주회사 설립의 방식과 동일하며, 기술보증기금 등 기술가치평가기관이 평가한 내용을 상법(제299조의2)에 의한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간주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인 연구기관이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등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현황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현황에 관련 공식통계는 없으나, 2015년말 기준으로 총 16개가 설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II. 대학(산학협력단) 주도형 창업

- 이 중에서 기술지주회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설립한 (주)에트리홀딩스,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17개 정부출연연구소가 공동으로 설립한 한국과학기술지주(주), 한국과학기술원 등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공동으로 설립한 미래과학기술지주(주)가 있다.

표 14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현황

번호	회사명(등록연월)	설립기관	자본금 (백만원)	기술 개요
1	(주)리스팅스('08.02.)	포항산업 과학연구원	50	• 산업부산물에서 Ni를 회수하여 스테인리스 원료 재가공
2	(주)글로텍('08.11.)	호서대	100	• 케이블 트로프용 건축자재 제조
3	(주)메디엠('09.05.)	포항산업과학연구원	300	• 임플란트용 코팅제 제조
4	(주)지씨에스스톤('09.12.)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50	• 석재 기반 LED 발광체 제조
5	(주)유비콤('10.10.)	충북대 산학협력단	329	• 무선 원격 검침시스템
6	(주)에트리홀딩스('10.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000	• 임베디드 시스템 플랫폼
7	(주)호서랩티드('11.03.)	호서대	100	• 천연 항생제 개발
8	(주)세스트('11.05.)	경북대	1,000	• U-Tag 서비스 관련 기술 제품 생산
9	(주)엠디테크('11.06.)	동아대	2,000	• 플라스틱 LCD 패널(3D 안경),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스마트키
10	(주)하티('11.07.)	(재)홍천메디컬허브 연구소	81	• 인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11	(주)철원플라즈마테크놀로지 ('12.05.)	(재)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1	• 플라즈마 터치시스템 및 나노분말 제조장 치, 나노소재 제품생산
12	(주)인지바이오('12.12.)	광주과학기술원	1,487	• 바이오센서(콜레스테롤 진단센서 등)
13	미래과학기술지주(주) ('14.08.)	한국과학기술원	2,000	• 대학 및 기업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기술 벤처 설립 및 육성 지원
14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주) ('15.01.)	한국과학기술원	10,414	• 기술사업화 및 자회사 투자, 정부 기술 사업화 지원 등
15	엠엔유바이오솔텍(주) ('15.01.)	목포대 산학협력단	150	• 고부가가치 소금(천일염, 죽염, 자죽염) 및 신기술가공식품 제조 · 판매
16	한국과학기술지주(주)('15.03.)	한국원자력연구원	33,216	• 기술사업화 및 자회사 투자, 정부 기술 사업화 지원 등

※ 출처 :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검토, 2015. 12.

3. 학교기업



가 개요

학교기업제도의 도입배경 ▶▶▶

- 정부가 수립한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산학연(産學研) 협력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공유·확산을 위한 국가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산업체·학교 및 정부출연연구소 간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5월에 기존 “산업교육진흥법”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로 변경되었다.
- 동 개정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대학, 실업계 고등학교 등)은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행하는 부서인 학교기업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학교기업제도의 개념 ▶▶▶

- 학교기업(School-Based Enterprise)이란 산업교육기관(또는 산학협력단)이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분야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학교 내 부서를 의미한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 참고로 학교기업은 별도의 법인격이 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목적사업을 추진하는 기구로서 산업교육기관의 부서형태로 설치하거나 대학 산학협력단의 부서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제36조 제2항).
- 참고로 학교기업은 독립 법인이 아니고 부서 형태이므로 설립이라는 용어 대신 “설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나 대학에서 학교기업을 설치하는 형태

대학의 부서형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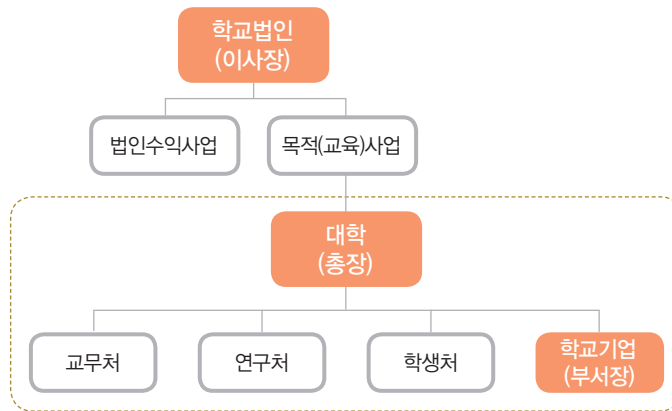
- 대학의 부서형태로 설치된 학교기업은 교비회계로 설치·운영되며, 사립대학에서 가능한 형태(국·공립대학 불가)이다.
- 참고로 이 형태의 학교기업의 모든 수익과 손실은 교비회계 내에서만 운영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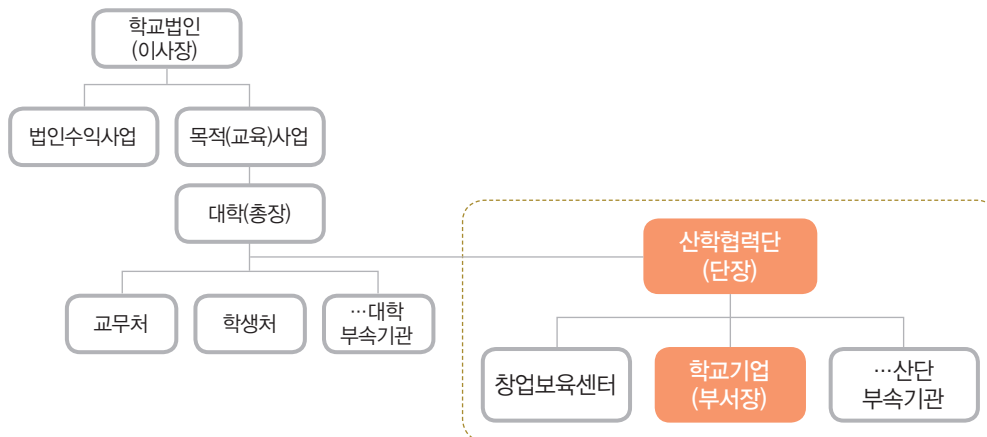
II. 대학(산학협력단) 주도형 창업

산학협력단의 부서형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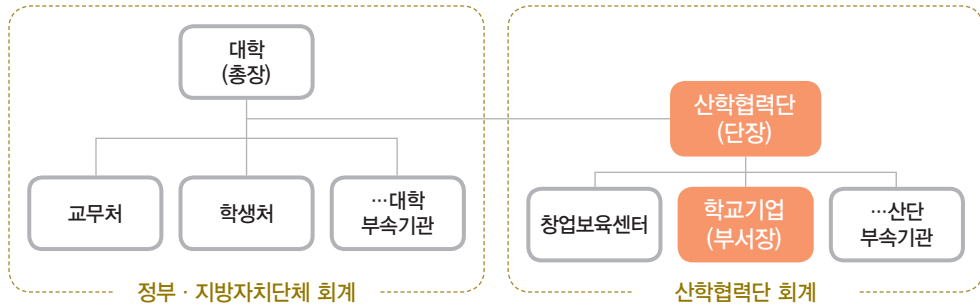
- 산학협력단의 부서형태로 설치된 학교기업은 산학협력단회계로 설치·운영되는 형태로서 국·공립대학과 산학협력단 있는 사립대학에서 설치 가능한 형태이다. 참고로 국·공립대학의 학교기업은 모두 산학협력단 부서형태로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 이 형태의 학교기업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전환이 가능하고 수익(이익)금은 교비회계로 전출이 가능하다.



| 그림 10 | 사립대학의 대학(교비회계) 소속 학교기업 조직 설치(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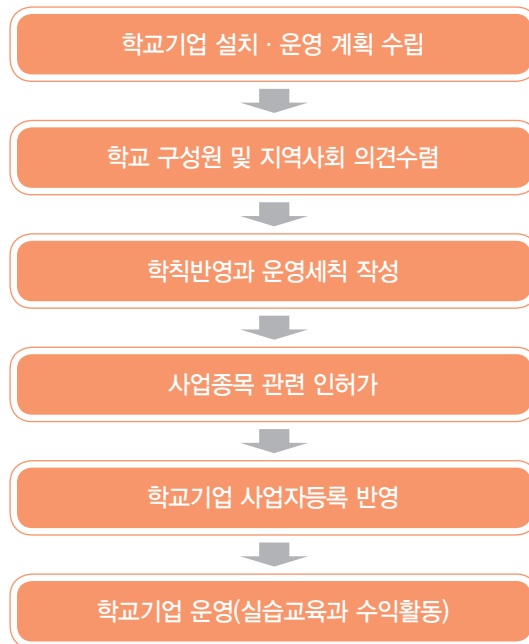
| 그림 11 | 사립대학의 산학협력단 소속 학교기업 조직 설치(예시)



| 그림 12 | 국·공립대학의 산학협력단 소속 학교기업 조직 설치(예시)

다 학교기업 설치절차

- 학교기업 설치절차는 통상 아래 그림과 같다.



| 그림 13 | 학교기업 설치절차



라 학교기업 설치·운영 계획서 작성 주요 항목

-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① 학교기업의 명칭
 - ② 학교기업의 사업종목(업종)과 연계학과
 - ③ 학교기업의 설치 주체(대학 또는 산학협력단)
 - ④ 학교기업의 소재지와 면적(전용공간의 위치와 면적)
 - ⑤ 학교기업의 설치(개업)일자
 - ⑥ 학교기업의 조직편제
 - ⑦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
 - ⑧ 학칙변경사항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 ⑨ 재정투자계획 및 시설확보 계획에 관한 사항
 - ⑩ 학교기업 조직 및 인력총원 계획에 관한 사항
 - ⑪ 현장실습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⑫ 학교기업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 ⑬ 인허가 획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마 대학의 학교기업 설치 현황

- 2014년 기준 대학의 학교기업 설치수는 159개이고 매출액 585억원으로 최근 감소 추세인데, 그 이유는 일부 학교기업이 기술지주회사 자회사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표 15 | 학교기업 설치 및 운영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 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학교기업 설치수	전 체	160	160	157
	대 학	82	87	87
	전문대학	78	73	70
학점인정 현장실습학생수	전 체	7,674	9,830	8,931
	대 학	4,821	6,192	6,237
	전문대학	2,853	3,638	2,694
매출액	전 체	65,581	61,718	58,584
	대 학	23,730	25,789	26,046
	전문대학	41,851	35,929	32,538

※ 출처 :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결과 각 연도(한국연구재단)

| 표 16 | 2014년 학교기업 운영 순위(4년제 대학)

(단위 : 명, 백만원)

순위	대학명	현장실습 참여학생 수	순위	대학명	매출액
1	세한대학교	844	1	경상대학교	3,358.6
2	경상대학교	713	2	전북대학교	2,671.8
3	강원대학교	697	3	전주대학교	1,664.6
4	한국교통대학교	505	4	가야대학교	1,654.6
5	대전대학교	415	5	충북대학교	1,424.4
6	삼육대학교	306	6	대구한의대학교	1,273.2
7	한국해양대학교	260	7	강원대학교	1,139
8	부산대학교	250	8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91.3
9	광운대학교	244	9	서경대학교	1,036.7
10	충북대학교	211	10	경희대학교	813.9
평균	-	204.8	평균	-	668.7

※ 출처 : 2014년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결과(한국연구재단)



II. 대학(산학협력단) 주도형 창업

| 표 17 | 2014년 학교기업 운영 순위(전문대학)

(단위 : 명, 백만원)

순위	대학명	현장실습 참여학생 수	순위	대학명	매출액
1	마산대학교	361	1	경북과학대학교	13,103.1
2	수원여자대학교	317	2	동의과학대학교	2,717.9
3	전남과학대학교	260	3	수원여자대학교	2,488.2
4	서울여자간호대학교	200	4	대전보건대학교	1,816.2
5	경북도립대학교	181	5	천안연암대학	1,345.4
6	청강문화산업대학교	152	6	전주기전대학	1,074.8
7	부산경상대학교	142	7	계명문화대학교	995.0
8	동의과학대학교	142	8	서울여자간호대학교	984.0
9	춘해보건대학교	122	9	울산과학대학교	789.6
10	한양여자대학교	109	10	마산대학교	769.6
평균	-	87.5	평균	-	556.4

※ 출처 : 2014년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결과(한국연구재단)

바

학교기업 설치·운영 사례

OO대학 식품분석연구센터 ▶▶▶

| 설치·운영 경과 |

- 2005년 : 학교기업 설치, 일반현장실습 4주, 160시간 현장실습 실시(11명)
- 2006년 : 기초 및 심화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식품미생물, 식품분석)
- 4과목 현장실습 교과목 개설, 4주, 160시간 이수, 2학점 부여
- 2007년-현재 : 연구원 채용 증가로 1:1 맞춤형 현장실습생 증가
- 2011년-현재 : 현장실습생의 인턴직원으로 채용(매년 1-3명)
- 2011년-현재 : 산업체(학교기업) 인턴쉽 현장실습 실시(3학년 2학기, 3개월)

| 현장실습 관련 주요 운영 사항 |

- 연계학과 : 식품영양과(80명), 제과제빵과(40명), 2개 학과 현장실습 실시
- 학교기업 현장실습 교과목 : 4개 과목, 각 2학점, 최대 8학점 취득 가능

성과지표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합계	비고
학점인정 현장실습생수(명)	11	43	33	40	49	56	61	64	357	4주, 160시간
인턴현장 실습생수(명)	-	7	10	17	15	5	9	10	73	6개월-1년 (학기중)
교과중 현장 실습생수(명)	-	253	666	416	284	323	296	327	2,565	교과목 중 일부
견학 등(명)	84	84	84	84	84	84	154	224	882	견학,체험
인턴실 현장실습(명) (3개월)	-	-	-	-	-	-	3	2	5	실습학기제 형 운영
현장실습생 인턴직원 채용(명)	-	-	-	-	-	-	1	5	6	졸업후 1년
현장실습 학습자료개발(건)	-	4건	4건	4건	3건	3건	1건	1건	20건	교재개발
실습장학금액 (천원)	-	10,282	16,994	20,167	26,763	27,000	35,031	22,109	158,346	학생 지원비

| 주요 성과 |

- 체계적인 현장실습을 통해 식품관련업체에 맞춤형 인력 양성 공급함
- 1:1 멘토-멘티 순환형 현장실습 도입으로 다양한 분석능력과 경험 함양
- 영양사 외에 식품관련업체 품질분석 연구원 등으로 학과의 취업처가 다양해짐

대학 창의적
자산 기반

창UP
길잡이





Ⅲ. 교원 또는 학생 주도형 창업

1. 교원창업

2. 학생창업

창업



1. 교원창업

가 개요

교원창업의 개념과 유형 ▶▶▶

- 현행 법규 어디에도 교원창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 교원창업이란 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나 임원으로 참여하여 활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요 대학에서는 “교원창업규정” 또는 “실험실창업규정”을 두어 교원의 창업활동을 관리하고 있다.
- 교원의 창업 활동의 허용범위와 허용방법은 대학마다 다르다. 그 이유는 대학마다 교원창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추구하는 이념과 학풍이 다르기 때문이다.
- 교원창업의 유형은 1)대학자산(특허, 연구시설 등) 활용여부, 2)창업기업의 위치(대학 내부 또는 외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표 18 | 교원창업의 발생 가능 유형

구 분		대학자산(특허, 연구시설 등) 활용여부	
		활용한 경우	활용하지 않은 경우
창업기업 위치	대학내부	제1유형	제3유형
	대학외부	제2유형	제4유형

- 상기 4가지 유형 중에서 제1유형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교원창업 유형이고 이를 통상 실험실창업이라 부르고 있다. 실험실창업제도를 직접 규율하고 있는 법규는 없으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5호 및 제18조의 2)에 “실험실공장”의 정의와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실험실창업이라는 용어도 자연스럽게 통용되고 있다.

실험실공장제도 ▶▶▶

- (개념)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5항)).
- (대상) 다음 각 호의 해당 자 중에서 그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8조의 2 제1항)).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 및 학생
 2.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3.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4. 벤처기업의 창업자
- 상기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대학에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교원 및 학생이므로 엄밀히 말해 교원창업(제1유형)을 실험실창업으로 명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실험실창업”으로 명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교원창업 관련 휴·겸직제도 ▶▶▶

- 교원의 창업활동과 관련된 휴직이나 겸직제도는 대학마다 다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및 제16조의 2)은 대학교원 등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창업관련 휴직과 겸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 (휴직 허용) 대학의 교원은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휴직 가능 기간은 창업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5년 이내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 (겸직 허용) 대학의 교원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단, 교원의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 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이나 겸임이 제한된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 2)).



나

교원의 실험실창업기업 설립절차 (예시)

| 주의 사항 |

교원창업기업은 별도의 근거법규에 의해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별 내규와 일반적인 창업관계법에 따라 설립되기 때문에 전 대학이 공통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적인 설립모델은 없다. 이에 본 매뉴얼에서는 교원창업(제1유형)에 해당하는 실험실창업기업 설립에 초점을 두어 설립절차 예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 참고자료이므로 각 대학은 대학별 교원창업규정에 맞추어 상세한 설립절차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험실창업 준비 시 주요 고려 사항 (예시) ▶▶▶

- (창업대상) 실험실창업은 교원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여 하나, 필요시 교원과 소속 연구원 및 외부 인력이 창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창업대표자) 실험실 창업자인 교원이 설립기업의 대표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전문경영인 영입 등 제시 가능하고 납득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교원이 공동대표자 또는 임원(이사회 멤버)으로 겸직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창업교원이 최대주주이거나 이에 준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대학은 필요 시 창업교원의 겸직 및 창업허가에 대한 요청을 불허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외부인사가 편법적인 방법으로 대학 내에서 창업을 하는 것으로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 (창업공간) 창업공간 즉 사업자등록지가 원칙적으로 대학 내이어야 하며, 타 교원 및 연구실에 대하여 배타적 사용 권리를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창업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교육 및 학문연구 활동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는 대학당국은 창업공간의 사용을 불허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대학원생 등을 임직원으로 활용) 실험실창업기업의 임직원 채용은 실험실 내·외부 인력 모두가 가능하며, 내부인력(대학원생, 포스닥연구원 등)에 대한 인건비 및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채우는 기존 연구실의 연구과제나 장학금 등과 연계할 수 없다. 만일 이와 같은 상황이 확인 될 때는 대학 당국은 해당 교원의 겸직 및 창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창업자가 대학에서 요구하는 절차 진행) 창업을 진행하고자하는 교원(예비창업자)은 대학별로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 예비벤처인증, 겸직허가, 실험실창업허가, 실험실창업허가(기술사업화)계약체결 등을 절차에 따라 밟아야 하며, 특수한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대학자원 활용)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 지식재산권 등을 활용한 모든 사업화 행위는 대학당국(산학협력단)의 검토(심사), 승인, 계약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 (관계규정 검토) 창업준비 교원은 사전에 대학의 지식재산관리규정, 교원검직규정 등을 반드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실험실창업 주요 절차 (예시) ▶▶▶

- (실험실창업 상담) 실험실창업 추진 전에 산학협력단 등 대학의 창업관련 담당자 등과 창업타당성이나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상세하게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예비벤처인증) 대학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기술보증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통해 기술사업계획 평가 받고 예비벤처인증을 받아야 한다.
- (검직허가) 통상 소속 단과대학(학과)의 확인을 거쳐 교무(인사)처로 요청한다.
- (실험실창업허가) 산학협력단 등 대학창업 관련기구에 창업허가를 신청한다.
- (회사 설립)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형태로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받는다.



| 그림 14 | 교원(실험실)창업 절차 (예시)



III. 교원 또는 학생 주도형 창업

| 참고 | 한양대학교 실험실창업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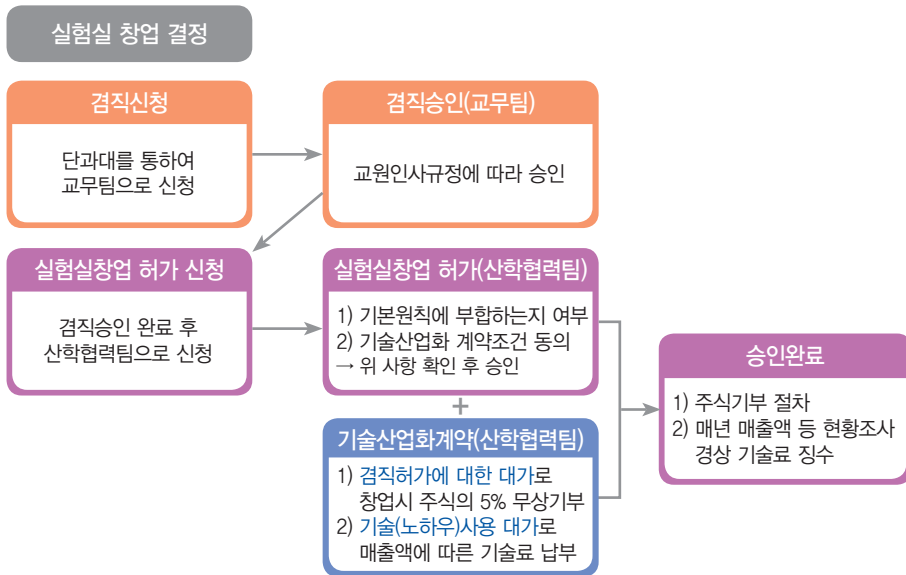
• 실험실창업 목적

대학 내 교수 및 연구실의 실험실 연구성과를 창업아이템으로 하여 기술력과 일정조건을 갖춘 교수 및 연구실에 대해 벤처기업으로의 창업을 허가함으로써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제도와 함께 성공적 기술사업화를 통한 실용학풍의 구현 및 대학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실험실창업 개념

대학으로부터 일정조건을 갖추어 휴직 또는 겸직이 허용되는 전임교수가 실험실 및 연구공간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벤처 기업을 설립하고, 보유하고 있는 연구성과를 사업화함을 말한다.

구분	실험실창업
지분구조	창업자인 교수 또는 연구자의 지분으로 구성
대학기술투자 참여방법	지재권은 산학협력단이 보유, 필요할 경우 창업기업과 라이선싱 혹은 양도 계약 체결
기타	교수 또는 연구자의 직접운영



| 그림 15 | 한양대학교 실험실창업 설립절차 및 주요내용

※ 출처 : <http://research.hanyang.ac.kr/certi/foundation.php>

다 교원창업기업 설립현황

- 한국연구재단의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에 대학의 교원창업기업 설립수는 51개이고 이들 기업의 2014년 매출액은 90억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표 19 | 대학의 교원창업기업 설립 및 운영 현황

(단위 : 개, 백만 원, 명)

구 분		2012	2013	2014
교원창업 기업수	전체	84	72	51
	대학	59	64	44
	전문대학	25	8	7
매출액	전체	2,790	2,175	9,033
	대학	2,178	2113	8,888
	전문대학	612	62	145
고용인원	전체	180	72	77
	대학	80	64	74
	전문대학	100	8	3

※ 출처 :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결과 각 연도(한국연구재단)

| 표 20 | 2014년 교원창업기업의 설립을 허가한 대학수

(단위 : 개)

구 분	2개 기업 설립 허가 대학	1개 기업 설립허가 대학	교원창업기업 설립허가 대학
전체	13	25	38
대학	12	20	32
전문대학	1	5	6

※ 출처 : 2014년도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결과(한국연구재단)



2. 학생창업



가 개요

- 통상 대학에서의 학생창업은 학부, 대학원(석, 박사)을 포함한다. 학생창업은 교원의 실험실창업과는 달리 대학으로부터 별도의 검직허가 및 창업허가 등을 받지 않으며, 전반적인 창업활동은 일반인의 창업활동과 크게 다르지 않다.
- 다만, 대학은 자체자금, 정부 및 산업계 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학생창업 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 참고로 학생들도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창업이 가능하며, 이때에는 대학(산학협력단)과 (특허) 기술의 권리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한 계약이 필요하다.

나 학생창업 지원 프로그램

- 대학들이 시행 중인 학생창업 지원 프로그램들은 그 종류를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으나 지원 유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 창업동아리, 발명동아리 지원 프로그램
 - ② 창업교육(기업가정신, 비즈니스모델, 사업계획서, 캡스톤디자인 등)
 - ③ 아이디어 및 창업경진대회, 시제품제작 경진대회 등
 - ④ 기술이전센터를 통한 기술지원,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창업공간 지원
 - ⑤ 회사설립 및 제품개발, (엔젤)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이외에도 학생이나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인프라가 많이 있으나,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인프라는 다음과 같다.
 - ① 전국 17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
 - ② 민간 엑셀러레이터와의 연계를 통한 창업지원

다 창업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외부자원

- 학생창업자 등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초기 창업자들이 활용 가능한 외부자원(공공 및 민간부문 포함)은 무수히 많으나, 이 중에서 창업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외부자원을 부문별로 구분하자면 <표 21>에서 <표 34>까지로 정리할 수 있다.

| 표 21 | 창업교육 제공 사업

• G-창업스쿨(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캠퍼스CEO 육성사업(서울산업진흥원)
• IP 창조 Zone(한국발명진흥원)	• 참살이 서비스분야 창업 및 취업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YES 리더 특강(벤처기업협회)	• 실전창업스쿨(창업진흥원)
• 서울특별시 창업스쿨(서울산업진흥원)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창업진흥원)
• 한화 SEEKERS(씨즈)	• 창업대학원(창업진흥원)
• 대학기업가센터(창업진흥원)	• 창업인턴제(창업진흥원)
• 산학협력선도대학의 창업교육센터(한국연구재단)	• 스포츠산업 창업지원(한국스포츠개발원)
• 스마트벤처창업학교(창업진흥원)	• 차세대여성CEO 양성교육(창업진흥원)
• 앙트십코리아(OEC열린기업가센터)	• 창업아카데미(창업진흥원)

| 표 22 | 창업관련 정보 제공처

• be SUCCESS	• 벤처스퀘어
• 데모데이	• 플래텀
• 로켓펀치	• 아웃스탠딩

| 표 23 | 창업관련 공모전

• H-온드림 오디션(현대자동차그룹)	• 소셜벤처 경연대회(사회적기업진흥원)
• K-Global Startup 공모전(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사회적기업진흥원)
• K-Champ 벤처창업 공모전(KT)	• 아이디어 오디션(창업진흥원)
• 여성창업경진대회((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한국관광공사)
• 글로벌 K-스타트업(한국인터넷진흥원)	• 핀테크 코리아 챌린지(한국증권전산)
• 글로벌 창업리그 슈퍼스타 V(창업진흥원)	



Ⅲ. 교원 또는 학생 주도형 창업

| 표 24 | 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 6개월 챌린지 플랫폼 사업(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한이음 ICT멘토링(한이음)
• K-Global 스마트 미디어(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 K-Global 기업가정신 및 인큐베이팅 인턴십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K-Global 창업멘토링(K-ICT창업멘토링센터)	• K-Global 빅데이터 스타트업 지원(한국정보화진흥원)
• 국내·해외 지식재산 권리화(지역지식재산센터)	• K-ICT 창업 멘토링센터(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 미래 글로벌 창업 지원센터(K-ICT본투글로벌센터)	• 국민행복기술 구현사업(발명진흥회)
• 스파크랩스(스파크랩스)	• 액셀러레이터 연계지원 사업(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여성벤처창업 케어 프로그램(한국여성벤처협회)	• 지식재산 재능나눔(지역지식재산센터)
• 창조경제타운(창조경제타운)	• 투자유치 인큐베이팅 프로그램(한국발명진흥회)

| 표 25 | 창업관련 종합지원 프로그램

• KDB 스타트업 프로그램(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 K-Startup(창업진흥원)
• KT 에코노베이션 센터(KT)	• SK플래닛 상생혁신센터(SK)
• 경기문화창조허브(경기콘텐츠진흥원)	• 광주테크노파크(광주테크노파크)
• 서울시 청년창업지원(서울산업진흥원)	• 아산나눔재단(아산나눔재단)
•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은행권청년창업재단)	•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창업진흥원)
• 청년 ICT창업성장센터(청년 ICT창업성장센터)	• 청년창업사관학교(중소기업진흥공단)
• 포스코 아이디어 마켓플레이스(포스코)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 표 26 | 창업자금 융자 및 보증

• 예비창업자 사전보증(기술보증기금)	• 일반창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 재창업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 창업기업 보증(신용보증기금)
• 창업기업지원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 청년창업전용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 청년창업특례보증(기술보증기금)	

| 표 27 | 창업기업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창업 활성화(창업진흥원)	• 데이터기업 해외진출지원(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스마트세계로누림터(창업진흥원)	• 스마트콘텐츠 해외진출지원(한국콘텐츠진흥원)
• 창업도약패키지(창업진흥원)	• 해외IT지원센터사업(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K-Global 해외진출사업(K-ICT 본투글로벌센터)	

| 표 28 | 창업관련 자금조달(크라우드 펀딩)

• 골든큐브	• 유캐펀딩
• 굿펀딩	• 인디고고
• 더불어플랫폼	• 키다리펀딩
• 오픈트레이드	• 킥스타터
• 와디즈	

| 표 29 | 창업기획사

• K-Global IoT 챌린지(한국인터넷진흥원)	• 앤텔스/골프존 컨소시엄
• TIPS 프로그램(창업진흥원)	• 텀블벅
• 본앤젤스	• 패스트트랙아시아
• 소풍	• 포스코
• 액트너랩/Lab IX 컨소시엄	• 한화 S&C/Yozma 컨소시엄

| 표 30 | 창업기업 엑셀러레이터

• DSC인베스트먼트	•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창업진흥원)
• K-Global Re-Startup(정보통신진흥원)	• 케이큐브벤처스
• 디쓰리쥬빌리	• 쿨리코너인베스트먼트
• 소프트뱅크벤처스	• 퓨처플레이
• 오렌지팜	• 프라이머



III. 교원 또는 학생 주도형 창업

| 표 31 | 창업기업 마케팅

• D2(네이버)	• 구글캠퍼스 서울(구글)
• MARU180(아산나눔재단)	• 디캠프(은행권청년창업재단)
• 게임벤처3.0(한국콘텐츠진흥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

| 표 32 | 창업기업 기술개발자금 지원

• K-Global ICT 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재창업 아이디어 신제품 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SW동아리재능기부챌린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 선도벤처연계기술창업(창업진흥원)
• 광주시 청년창업기업 지원사업(광주테크노파크)	• 스마트창업터(창업진흥원)

| 표 33 | 창업보육 프로그램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 센터(창업진흥원)	• 울산청년창업센터(울산경제진흥원)
• JST 제물포스마트타운(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창업발전소(한국콘텐츠진흥원)
• 경기벤처창업보육센터(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혁신벤처센터(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게임기업인큐베이션(한국콘텐츠진흥원)	• 네오플라이(네오위즈)
• 넥슨엔파트너스센터(NPC)(넥슨)	• K-Global Startup 스마트 디바이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K-Global 클라우드기반 SW개발환경지원 (클라우드혁신센터)
• 서초창의허브(현대자동차그룹)	

| 표 34 | 창업공간 지원

•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창업진흥원)	•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창업진흥원)
• K-Global DB-Stars(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지원사업(창업진흥원)

라 학생창업 사례

콘텐츠 기반 창업기업 (주)비디오빌리지 ▶▶▶

| 창업회사 개요 |

- 2014년 10월 창업, 창업동아리로 출발하여 (주)비디오빌리지 설립함.
 - 다중채널네트워크(MCN) 분야의 스타트업으로 유머, 뷰티, 키즈, 엔터테인먼트 분야 1인 콘텐츠 창작자들의 글로벌 진출과 수익모델 다각화를 지원하는 기업임.
 - 1인 창업기업에서 출발하여 17명의 고용을 창출하였고 2015년에는 매출액 4.5억원, 투자유치 6억 원을 달성함.
 - 2016년 현재 50여 명의 크리에이터들이 총 700만 명 이상의 구독자와 월평균 7,800만 이상의 조회수(유튜브, 페이스북)를 기록함.

| 창업회사 특징 |

- “IT 스타트업은 되는데 왜 콘텐츠 스타트업은 안될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여, C대학 LINC사업단 지원 창업동아리를 기반으로 대학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창업함.
 - 참고로 (주)비디오빌리지 CEO는 대기업 입사 후 창업을 위해 퇴사하여 창업동아리 후배들과 창업 회사를 설립함.
- (주)비디오빌리지는 대학이 보유한 창업지원 플랫폼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임
 - 창업동아리 지원 → 산학협동인턴십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 → 창업(2014.10월) → 링크사업단 가족 기업 등록 → ‘Value-up Doctor’(LINC사업단 전문가 자문단) 지도 및 애로기술 컨설팅
- (주)비디오빌리지는 국내 MCN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플랫폼 회사들과 유통계약을 체결하였음.
 - 특히 MCN분야가 콘텐츠, 미디어 업계에서 많은 자본과 인재가 몰리는 유망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주)비디오빌리지는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미디어 사업자와 함께 글로벌 진출을 진행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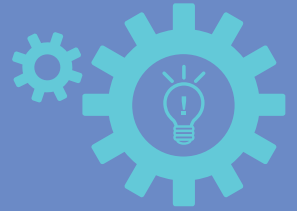
비디오 빌리지



대학 창의적
자산 기반

창UP
길잡이





IV. 대학기반 창업의 특수 유형

1. 벤처기업
2. 연구소기업
3.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창업



IV. 대학기반 창업의 특수 유형

- 대학기반 창업의 기본 유형인 기술지주회사(자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교원창업(실험실창업) 등의 설립방식은 필요에 따라 사업의 전문성과 지향하는 바를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기업의 설립, 운영방식을 택할 수 있는데, 본 매뉴얼에서는 이를 대학기반 창업의 특수 유형이라 분류하였다.
- 이러한 특수유형 중 벤처기업과 연구소기업은 기술창업기업으로서 전문성에 대한 인증받기 위한 제도이고,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사업의 목적과 운영방식에 따른 제도인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벤처기업



가 개요

- 벤처기업(venture business)이란 첨단 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으로 한국에서는 연구개발형 기업, 기술집약형 기업, 모험기업 등으로 부르며, 한편으로는 위험기업이라고도 부른다. 벤처기업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 ① 소수의 기술 창업인이 기술혁신의 아이디어를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한 신생기업이다.
 - ② 높은 위험부담이 있으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이익이 예상된다.
 - ③ 모험적 사업에 도전하는 왕성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가에 의해 주도된다.

나 벤처기업의 요건

- 벤처기업인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 (3)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 (4) 「여성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 (6)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벤처 확인기업 현황

- (사)벤처기업협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기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에 따른 벤처 확인을 받은 기업수는 총 31,766개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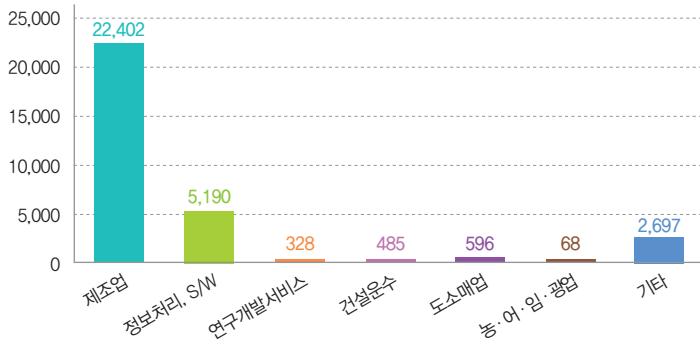
IV. 대학기반 창업의 특수 유형

- 벤처 확인을 받은 누적기업수는 1998년 2,042개로 시작하여 2011년에 1만개 돌파, 2010년에 2만개 돌파, 2015년에 3만개를 돌파하는 등 매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표 35 | 유형별 벤처 확인 기업수(2016년 6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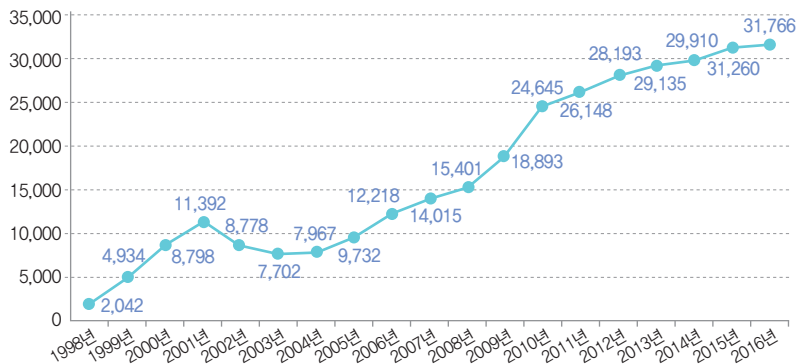
구분	벤처투자 기업	연구개발 기업	기술평가 보증기업	기술평가 대출기업	예비벤처 기업	합계
업체수	1,046	1,848	25,996	2,807	69	31,766
비율(%)	3.3	5.8	81.8	8.8	0.2	100

※ 출처 : 벤처 기업 현황(2006, (사)벤처기업협회)



※ 출처 : 벤처 기업 현황(2006, (사)벤처기업협회)

그림 16 | 업종별 벤처 확인 기업수(2016년 6월 기준)



※ 출처 : 벤처 기업 현황(2006, (사)벤처기업협회)

그림 17 | 연도별 벤처 확인 누적기업수(2016년 6월 기준)

라 벤처기업 등록 유형

● 벤처기업 등록 유형은 아래 표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된다.

표 36 | 벤처기업 등록 유형

벤처유형	기준요건	평가기관
벤처투자기업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일 것(단,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벤처투자기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투자전담회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연구개발기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보유) 4. 업력에 따라 아래 기준을 충족할 것 · 창업 3년이상 기업 : 벤처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기준 이상일 것. · 창업 3년미만 기업 : 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비율 적용제외) 5. 연구개발기업 사업성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평가보증기업 (보증 승인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6. 기보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7.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 또는 중진공의 대출(보증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8. 상기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 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원 이상 (총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 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대출기업 (대출 승인만으로 벤처 인증 가능)	9.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10. 중진공의 대출(대출가능금액 포함, 직접 취급한 신용대출에 한함) 또는 기보의 보증(보증가능금액 포함)을 순수신용으로 받을 것 ※기보 : 기술평가보증에 한함 ※중진공 : 창업기업지원자금/개발기술사업화자금/신성장기반자금 중 녹색·신성장자금/투융자복합금융자금 ※벤처특별법 개정 시행일('06.6.4)이후 취급한 보증 및 대출에 한함 11. 상기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금액이 8천만원 이상이고, 당해기업의 총 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 ※창업 후 1년미만 기업 :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4천만원 이상 (총 자산대비 비율은 적용배제) ※보증금액 10억원 이상인 기업은 총 자산대비 비율 적용배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많은 확인기관에 벤처확인 신청함	중소기업진흥공단
예비벤처기업	12.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13. 상기의 해당자의 기술 및 사업계획이 기보, 중진공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기술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 출처 : (사)벤처기업협회, <http://www.venture.or.kr>



마 벤처기업 관련 주요 지원제도

● 벤처기업과 관련된 주요 지원제도는 아래 표와 같다.

| 표 37 | 벤처기업 지원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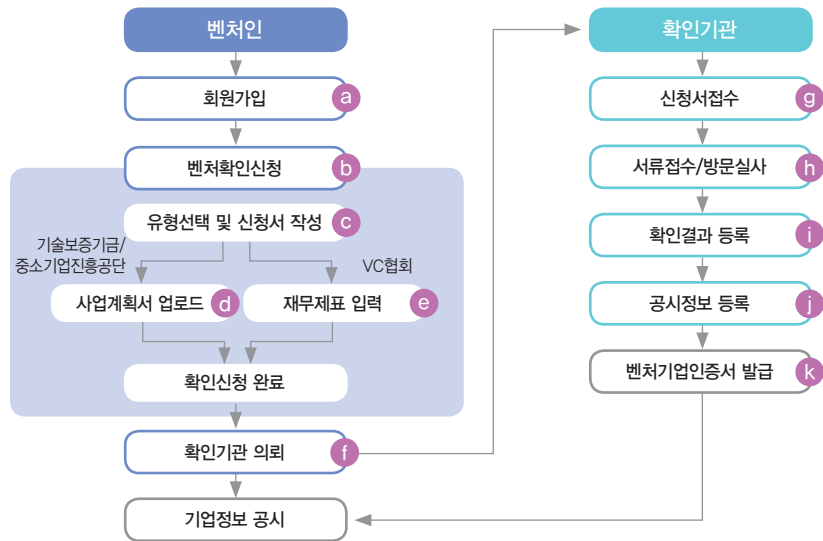
구분		주요지원내용	근거
창업	교수·연구원창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근무하기 위해 휴직가능(3년 이내) 교수·연구원(교육공무원등)이 벤처기업의 대표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16조2
	산업재산권 출자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의 권리포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세제	지원대상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법인세, 소득세 5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확인받은 이후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 감면('18.12.31까지 벤처확인 받은 기업에 한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으로 중복 세액감면적용은 불가 감면기간중 벤처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1항, 2항
	취득세 75% 감면	창업벤처중 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75%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1항
	재산세 50% 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3 2항
금융	코스닥 상장	상장심사시 우대 *자본금 및 자기자본기준 이익률 기준 하향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면제 등	코스닥시장상장성 (한국거래소)
	정책자금	중소기업정책자금 한도 우대	중진공 규정 (기업금융처)
	신용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한도 확대, 보증료율 0.2%감면등) 기술력 및 신용도 우수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기준 완화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규정
입지	실험실공장	교수·연구원의 실험실 공장 설치 허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18조 2
	창업보육센터입주 기업에 대한 도시형 공장 등록특례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기업의 경우 건축법 14조, 대덕연구단지관리법 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3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건축금지에 대한 특례	건축법에서 건축제한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전용 단지내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특례 인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 21조
	집적시설입주벤처 기업특례	과밀억제권역내에서의 취득세, 재산세 증과세를 적용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특허	우선심사	벤처기업이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특허법시행령 제9조 실용신안법시행령 제15조
마케팅	방송광고	벤처기업에 대해 TV, 라디오 광고지원(광고비 70%감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내부기준에 의거 선정	한국방송광고 진흥공사 내부지침
기타	주식교환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교환 가능 (전략적 제휴 및 신주발행을 통한 주식교환)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

※ 출처 : (사)벤처기업협회, <http://www.venture.or.kr>

바 벤처기업 확인 절차

- 벤처기업 확인 절차는 통상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주요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 출처 : 벤처인, <http://www.venturein.or.kr>

| 그림 18 | 벤처확인신청 절차 흐름도

사 벤처기업 확인(평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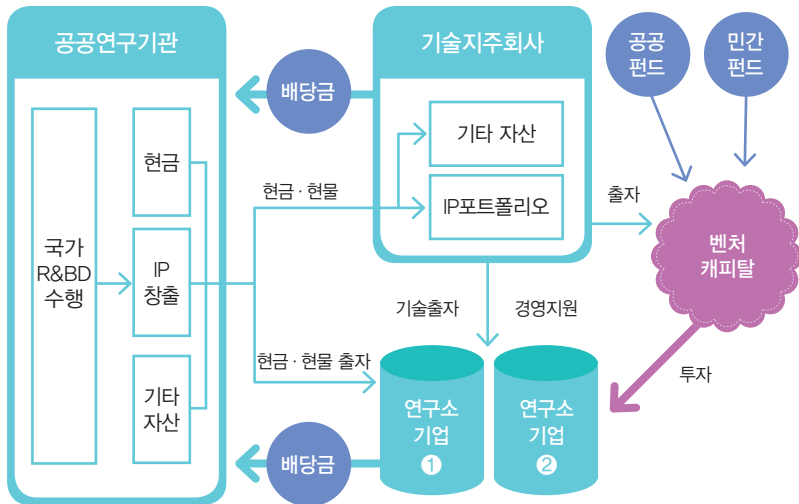
- 벤처기업 확인 유형에 따라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으로 구분된다.



2. 연구소기업

가 개요

-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이나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 이상의 해당 연구소기업 주식(지분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 제9조의3, 동법 시행령 제13조).
- 연구소기업제도는 2005년 1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당초 법률명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 시 도입된 제도이다. 참고로 연구소기업제도는 동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설정된 것으로, 정부출연기관 등이 보유한 기술을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 출처 : 연구소기업 설립 GUIDEBOOK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15)

| 그림 19 | 연구소기업의 개념도

나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또는 회사

-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단독이나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제1항)과 동법 시행령).
 - ① 공공연구기관 :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②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회사
 - ④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다 연구소기업의 등록 요건

- 연구소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제2,3항)과 동법 시행령).
 - ①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20% 이상의 해당 연구소기업 주식(지분 포함)을 보유할 것
 - ②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 ③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할 것

라 연구소기업의 설립유형

- 연구소기업의 설립유형은 크게 1)합작투자형, 2)기존기업 기술출자형, 3)신규창업형 등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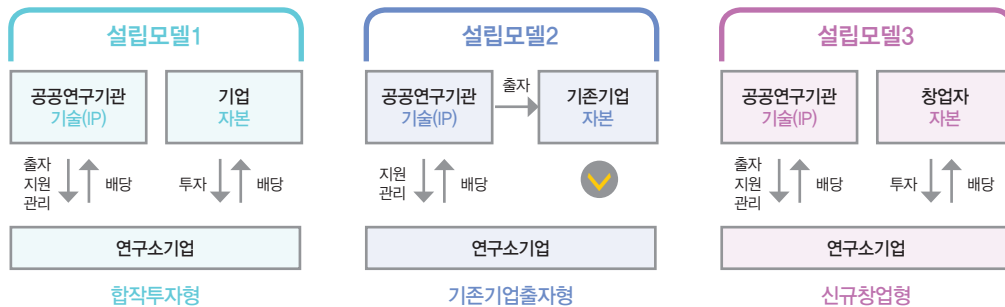


IV. 대학기반 창업의 특수 유형

| 표 38 | 연구소기업의 설립유형별 특성

구분	개념	주요 특징
합작투자형	공공연구기관과 기존 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 역량과 기업이 보유한 경영자원의 결합을 통해 기술사업화 추진 과정에서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신사업 발굴, 신규 시장 진출의 기회로 활용 가능
기존기업 기술출자형	공공연구기관이 기존 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하여 해당 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연구기관이 출자하는 기술이 연구소기업으로 전환되는 기존 기업의 사업영역과 유사한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술사업화 추진이 용이 연구소기업 전환 시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지분율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신규창업형	공공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해 새로운 기업을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소기업의 대표 또는 경영진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나 지식이 매우 높다는 장점 판로개척, 마케팅, 인사관리, 투자유치 등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원과 경험이 부족 빠른 시장 진입 및 초기 사업 안정화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

※ 출처 : 연구소기업 설립 GUIDEBOOK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15)



※ 출처 : <https://www.innopolis.or.kr/sub0303>

| 그림 20 | 연구소기업의 설립유형

마 연구소기업의 설립 절차

- 연구소기업의 설립 절차는 설립유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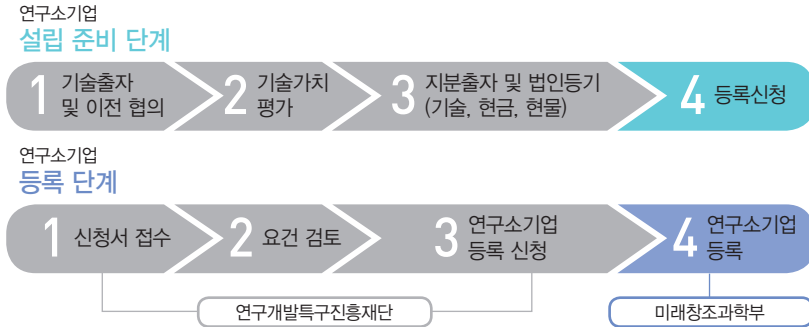
| 표 39 | 연구소기업 설립 절차

설립 절차	주요 업무
① 연구소기업 출자 기술 발굴 및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 기술 발굴 • 기술 출자의 타당성 검토[해당 기술의 출자 가능 여부 확인, 해당 기술의 우수성 검토, 해당 기술의 사업화 방법으로써 연구소기업 설립 방식의 타당성 검토(수요 기업이 제한하는 경우), 기술수요 기업의 사업화 역량 검토] • 심의 및 선정
② 연구소기업 설립 주체 및 공동 출자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 또는 공동 설립 여부 결정(공공연구기관,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 공동 출자자(합작투자기업, 연구소기업 전환 예정 기업, 창업자) 발굴(설명회 개최 등) • 공동출자자 평가 및 선정
③ 연구소기업 설립 기본 합의서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 주체 간 기본 합의서 작성 및 체결(출자 대상 기술 선정, 설립 주체 선정 등의 과정에서 합의점에 도달한 내용)
④ 출자대상 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평가기관 선정 • 기술평가 신청, 계약체결, 평가진행, 평가서 수령 • 기술평가 비용 지원 신청
⑤ 사업계획서 작성 및 연구소기업 설립 계획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타당성 평가(기술평가기관) • 연구소기업 설립 계획 심의 및 확정 • 연구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관 내부 규정 정비
⑥ 출자 완료 및 법인 등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소기업 설립 약정 체결 • 현물(기술 등) 및 현금 출자 • 법인 등기(설립등기, 변경등기) • 연구소기업 설립 결과 보고
⑦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 신청(특구진흥재단) • 등록증 발급(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출처 : 연구소기업 설립 GUIDEBOOK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15)



IV. 대학기반 창업의 특수 유형



※ 출처 : 연구소기업 설립 GUIDEBOOK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15)

| 그림 21 | 연구소기업의 설립과 등록단계

바 연구소기업의 설립현황

- 2006년 제1호 연구소기업(원자력연구원이 설립한 ㈜콜마비엔에이치)이 설립된 이후, 매년 연구소기업 설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따르면 2016년 5월 기준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연구개발특구에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누적기준으로 234개, 운영기준으로 219개이다.
- 참고로 연구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 때문에 최근에는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들의 연구소기업 등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 연구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 연구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등의 감면 대상이 된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다만, 연구소기업으로 등록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 간주한다. 또한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 합계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의 제3 각 호를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감면한도로 하여 세액을 감면한다.
- 참고로 연구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에도 적용되고 있다.

| 표 40 | 연구소기업 설립 세제혜택

국세	지방세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감면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감면	면제

아 대학 기술을 활용한 연구소기업 설립사례

(주)제윤메디컬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출자) ▶▶▶

- 2009년 설립된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제윤메디컬은 2014년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로부터 ‘골절 방지 의복’, ‘투벳트 트레드밀 및 이를 구비한 보행재활 훈련장치’ 등의 기술을 출자받아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였음.
- 전체 직원 14명 중 12명이 연구인력인 제윤메디컬에서는 하지근력이 약한 고령자와 보행이 어려운 장애 환자가 낙상으로 인한 골절을 방지하기 위한 복합 센서기술과 제품(낙상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 낙상 관련 제품 외에 이 회사는 이미 스마트 약상자를 이용한 복약모니터링 솔루션(제품명 스마트 필박스)를 출시해 국내외 의료시장에 공급 중임.

※ 출처 : 연구소기업 설립 GUIDEBOOK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15)

(주)효원파워텍 (부산대학교기술지주회사 출자) ▶▶▶

- 2014년 부산대학교기술지주가 기술을 출자해 설립한 효원파워텍은 ‘ BLDC모터 구동 인버터회로 입력 전류의 추정장치기술’을 사업화하는 전기전자제어 기업으로 부산연구개발특구가 배출한 최초의 연구소기업임.
- 효원파워텍은 현재 각종 제어장치의 연구개발과 함께 자체 제어기를 적용한 전기휠체어를 생산하며 부산 최초 연구소기업으로서 새로운 시장영역을 개척 중임.

※ 출처 : 연구소기업 설립 GUIDEBOOK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15)



IV. 대학기반 창업의 특수 유형

표 41 | 연구소기업과 유사제도의 비교

구분	근거규정	제도시행	정의	설립 주체	주요 요건
연구소 기업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05. 7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	공공연구기관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구 안에 설립 설립 주체가 20% 이상의 연구소기업 주식(지분 포함) 보유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이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 창업 전문회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07. 8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	대학(산학협력단 포함)	주식회사 설립주체가 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 보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산학연 협력 기술지주 회사 및 자회사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07. 12	<p><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p> <p><자회사>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p>	<p>산학협력단</p> <p>학교법인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p> <p>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p>	<p><기술지주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회사 설립주체가 기술지주회사 자본금의 30%를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 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 상근 전문인력이 1명 이상 전용공간 확보 <p><자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 보유
			<p><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p> <p><출자회사>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편입한 회사</p>	<p>공공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등)</p>	<p><기술지주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회사 보유기술이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 기술 또는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 할 것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 <p><출자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지주회사는 2년 동안 출자회사 주식의 20% 이상 보유
공공연구 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 및 출자 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0. 4	<p><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해당 회사의 사업을 지배하거나 관리·지원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p> <p><출자회사>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직접 설립하거나 제3의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인수하여 편입한 회사</p>	<p>공공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등)</p>	<p><기술지주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회사 보유기술이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 기술 또는 「산업발전법」에 따른 첨단기술에 해당 할 것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 <p><출자회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지주회사는 2년 동안 출자회사 주식의 20% 이상 보유

※ 출처 : 연구소기업 설립 GUIDEBOOK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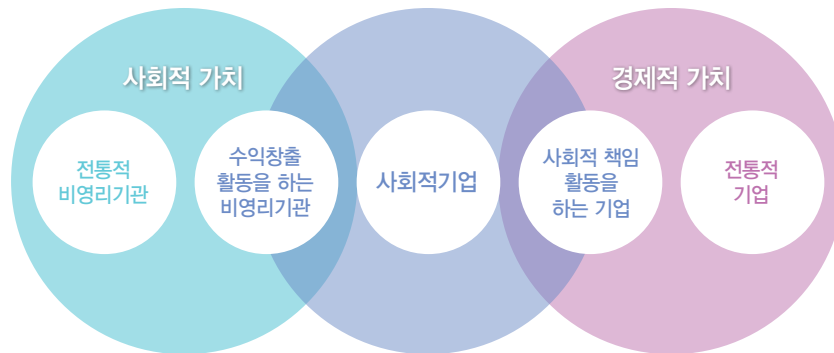
3. 사회적기업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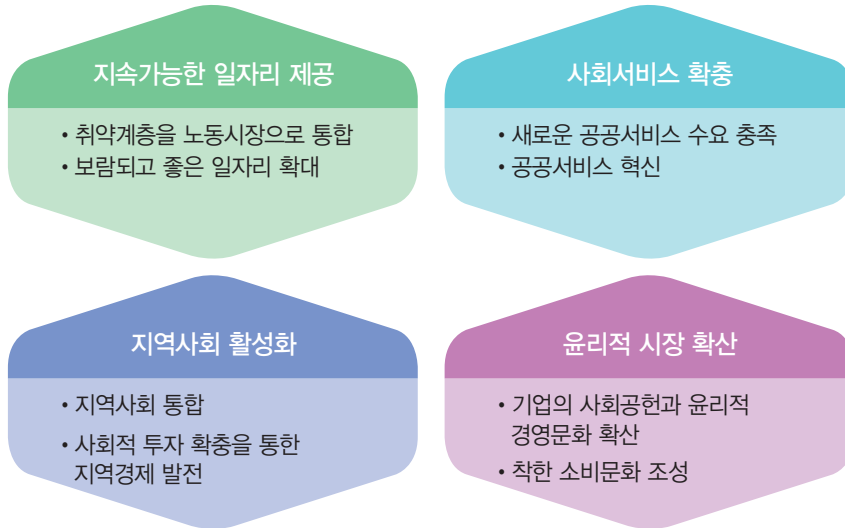
사회적기업이란? ▶▶▶

-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해 돈을 벌지만, 그 활동의 동기가 사주나 주주의 이익 실현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있는 조직을 말한다.
-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데 비해,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각종 사회 문제의 해결, 지역 통합, 일자리 창출 등의 목적을 위해 영업활동을 수행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서는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 출처 : 사회적기업 개요집 109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 그림 22 | 사회적기업의 영역



※ 출처 : 사회적기업 개요집 109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 그림 23 |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제1호)과 동법 시행령(제8조)」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조직 형태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②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 ③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의 유형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아래와 같이 5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 ①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②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③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④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⑤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나 사회적기업의 인증

인증 요건 ▶▶▶

-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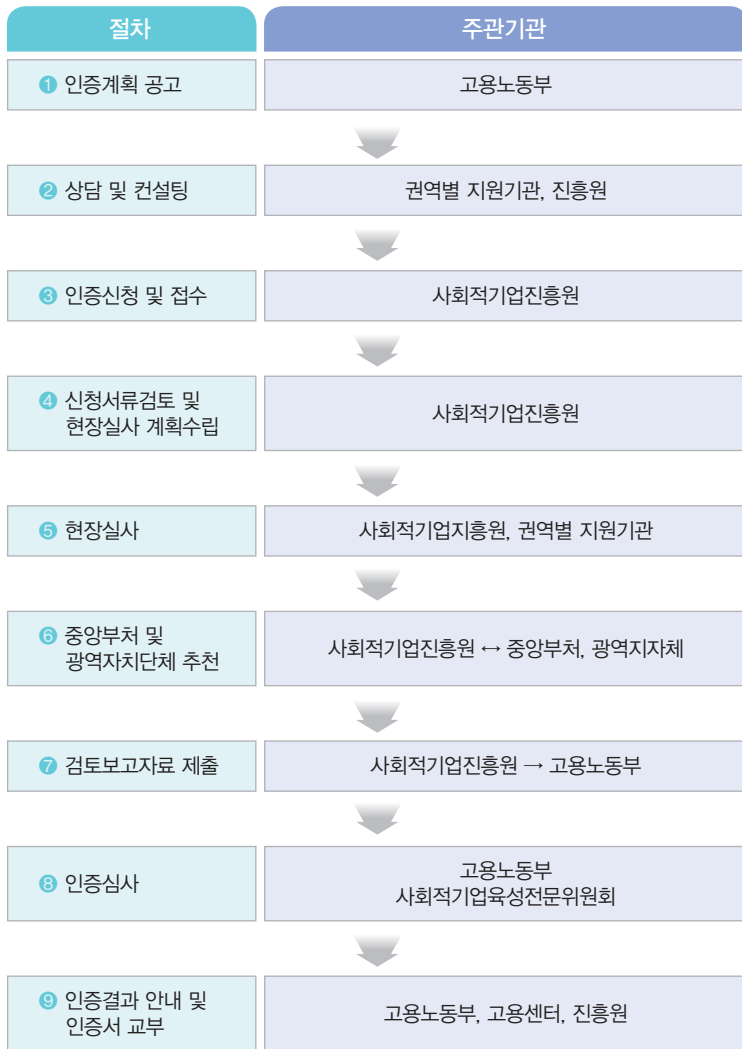
| 표 42 |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요 건	내 용
조직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해관계자 참여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영업활동 수입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
정관이나 규약	사회적기업 육성법(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인증 절차 ▶▶▶

-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앞서 언급한 요건을 갖추어 한국사회적기업인증원에 언제든지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인증심사위원회는 격월(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로 개최되며, 인증절차는 아래와 같다.



※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foundation/valid.do?dep1_kind=2)

| 그림 24 | 사회적기업의 인증 절차

인증 관련 컨설팅 ▶▶▶

-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인증 관련 사전 상담과 컨설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권역별로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표 43 | 권역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 리스트

지역	지원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서울	(사)한국마이크로 크레딧 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충청로 2가, 본관)	070-7600-0510, 02-365-0354	02-365-0440	joyfulunion@naver.com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20번길 7(파장동, 덕성빌딩2층)	070-4763-0130	070-4763-0120	pns@pns.or.kr
인천	(사)사회문화정책 연구원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229 인천 IT타워 1층 117호	032-245-7901	032-245-7904	seincheon@hanmail.net
강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033-749-3352	033-749-3345	coopcc@hanmail.net
대구 경북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182 2층 (대명9동 724-1번지)	053-956-5001~3	053-217-5003	ucsr@hanmail.net
부산	(사)사회적기업 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2층	051-517-0266	0303-3261-1119	kingei@rise.or.kr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149, 2층	052-267-6176	052-267-6177	ulsan@sescoop.or.kr
경남	사단법인 경남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822 백화아트빌 2층	055-263-2931~2	070-7545-2931	gncsee@hanmail.net
광주	(사)광주NGO 시민재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062-383-1136	062-381-1135	ses@socialcenter.kr
전북	사단법인 전북사회경제포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11(엠플러스빌딩 301호)	063-251-3388	063-251-3348	masterjse@gmail.com
전남	(사)전남지역 발전포럼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남악리 1970번지(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층)	061-283-6881~2	061-287-4577	jnsec@hanmail.net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광로 241-1(삼도일동, 영지빌딩7층)	064-722-4843	064-755-4843	jejusen2015@hanmail.net
대전	협동조합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0번길 9 풀뿌리시민센터 2층	042-223-9914	042-222-0906	c-cmail@hanmail.net
충북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운천동, 5층)	043-222-9001	043-223-9201	cbse@hanmail.net
충남	(사)충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순천향로22 순천향대학교 공과대학 9130호	041-415-2012	041-415-2013	cnse1212@gmail.com

※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foundation/valid.do?dep1_kind=2)



IV. 대학기반 창업의 특수 유형

인증 현황 ▶▶▶

- 2016년 8월 5일 기준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은 총 1,578개이며, 이들의 지역적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 표 44 | 사회적기업의 권역별 인증수

구분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대전	충북	충남	세종
인증수 (개)	268	255	90	94	59	101	93	54	78	78	99	75	39	43	73	71	8

※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foundation/valid.do?dep1_kind=2)

| 표 45 | 사회적기업 인증 사례

유형 (기업명)	주요 내용
일자리제공형 (한빛예술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 연주단의 전문적인 연주를 통하여 장애인 공연 예술을 발전시키고 장애인 예술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함. • 주요사업 : 음악 및 예술분야의 시각장애인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사업, 문화 콘텐츠 개발 등
사회서비스제공형 (충남교육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촌의 교사/지역주민/지역사회/지역학교가 교육을 필요로 하는 곳에 교육 인력을 배치하고, 그 인력을 적절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성함 • 주요사업 : 청소년문화학교 느티나무, 학교지원사업, 지역사업, 교육연수
혼합형 (행복도시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식이웃에게 무료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고 취약계층에게는 조리와 배송 등의 과정에 참여하게 하여 일자리를 제공함. • 주요사업 : 결식이웃 무료급식, 도시락사업, 김치 등
지역사회공헌형 (홍성풀무나누미 영농조합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풀무학교와 친환경농산물을 중심으로 형성해 온 홍동지역의 많은 시설기반과 인적기반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소포장 및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만족도를 증진함. • 농촌여성인력의 생산가공활동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가정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농 간의 교류를 통한 생산소비자 공동체를 구현함.

※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socialenterprise.or.kr/kosea/example.do>)

4. 협동조합



가 개요

근대적 협동조합의 기원 >>>

- 세계 최초의 근대적인 협동조합으로 인정받는 것은 1844년에 설립된 영국의 로치데일공정선구자조합(Rochdale Society of Equitable Pioneers)이다. 로치데일 지역의 노동자들은 적정가격으로 믿을 수 있는 품질의 일용 생필품을 공동으로 구매하는 낮은 단계의 활동부터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생산과소비를 통합하는 협동조합 사회를 만들자는 웅장한 비전을 공유하면서 로치데일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이후 160여 년 동안 여러 가지 유형의 협동조합이 생겨나면서 협동조합에 대한 정의도 다양해졌다(협동조합 설립운영 안내서, 기획재정부(2013)).

협동조합이란? >>>

- 협동조합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나 그 목적과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조직과 다르다.
-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의제1호)에 따르면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 한편, International Cooperative Alliance에서는 협동조합이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7대 기본원칙 >>>

-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은 협동조합이 지켜야 할 7대 기본원칙을 표명하였다. 동 원칙의 서문에는 『원칙이란 계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행동 판단과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 협동조합은 원칙을 글자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정신을 따라야 하며, 각 원칙이 품고 있는 정신을 전체적으로 협동조합의 일상적인 활동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협동조합의 원칙은 연례행사에서만 꺼내는 진부한 목록이 아니라 협동조합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틀이자 에너지를 제공하는 요인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협동조합 설립운영 안내서, 기획재정부(2013)).



IV. 대학기반 창업의 특수 유형

| 표 46 | 국제협동조합연맹이 표명한 협동조합의 7대 기본원칙

구 분	내 용
① 자발적·개방적 조합원 제도	(제1원칙)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 있다.
②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제1원칙)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해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한다.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 개별협동조합에서는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 연합회에서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하고 운영된다.
③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제3원칙)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조성하는데 공정하게 참여하며, 조성된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다.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잉여금을 배분한다. (1)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잉여금의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2) 조합원의 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3)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여타의 활동을 위한 지원
④ 자율과 독립	(제4원칙)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⑤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제5원칙)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을 제공한다. 협동조합은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⑥ 협동조합 간 협동	(제6원칙) 협동조합은 지방, 전국,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 사업을 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한다.
⑦ 지역사회 기여	(제7원칙)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조합이 속한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출처 : 협동조합 설립운영 안내서, 기획재정부(2013)

나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골격

협동조합기본법의 목적과 취지 ▶▶▶

- (목적) 협동조합기본법(제1조)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취지)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등 기존 8개의 개별법 체제에 포괄되지 못하거나 「상법」에 의한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 또는 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주로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별도로 도입하며, 협동조합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의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즉, 기존 법체계에서 협동조합이 법인격이 없음으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1월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다.

| 참고 |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배경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대안적 경제모델로 주목받았다. 이는 협동조합이 이용자 소유기업으로서 단기적인 이윤추구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에 관심을 두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일자리 확충과 고용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사회 양극화와 빈부격차 등 사회갈등 요인을 치유하고 공생발전의 포용적인 새로운 시장경제의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협동조합은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협동조합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새로운 경제성장의 추동력으로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UN총회는 2012년을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세계 각국에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권장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에 대응하여 협동조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사회통합적인 경제모델을 우리 사회에 구축하기 위해 2012년 1월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다(협동조합 설립운영 안내서, 기획재정부(2013)).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 ▶▶▶

-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숫자로 풀어보면 아래 표와 같이 8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IV. 대학기반 창업의 특수 유형

| 표 47 | 숫자로 풀어본 알기 쉬운 협동조합기본법

숫자	내 용		의 의
	요약	상세	
1	1인 1표	출자액수에 관계없이 1인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 부여	주식회사(1주 1표)와 다른 민주적 운영방식
2	2개의 법인격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영리·비영리 부분의 정책수요 모두 반영
3	최소설립조합수 3개	30이상의 협동조합이 모여 연합회 설립가능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4	자본주의 4.0 (대인적 기업모델)	기존 주식회사, 비영리법인과 달리 소액·소규모창업, 취약계층 자활을 통한 '공생발전' 모델	양극화 해소·서민경제 활성화의 대안모델
5	최소설립인원 5인	5인 이상 자유롭게 설립가능 (기존 개별법 : 300~1000명)	자발적 소규모 활동 지원
6	기본법 제6조 (협동조합 기본원칙)	조합원을 위한 최대 봉사 자발적 결성·공동소유·민주적 운영 투기·일부조합원 이익 추구 금지	협동조합 정신 반영
7	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의 날)	협동조합의 날(7월 첫 토요일) 협동조합주간(그 전 1주간)	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8	8개 협동조합법의 일반법	기존 8개 법과 독립적인 일반법 농협, 수협, 신협, 중기협, 생협, 새마을, 엽연초, 산림조합법	협동조합 설립 범위 확대 개별법과 관계 정립

※ 출처 : 협동조합 홈페이지(<http://www.coop.go.kr/COOP/introduce/mainContents.do>)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유형 ▶▶▶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의 유형은 협동조합(일반협동조합을 의미)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된다.
- 협동조합의 연합회 조직의 유형도 협동조합연합회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구분된다.

| 표 48 |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비교

	협 동 조 합	사회적협동조합
법 인 격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설 립	• 시도지사 신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 인가
사 업 분 야	• 금융·보험업 금지 외 제한 분야 없음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금융 및 보험업 제외, 다만 조합원 대상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가능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배 당	• 배당 가능	• 배당 금지
청 산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국고 등 귀속

※ 출처 : 「협동조합 기본법」시행과 향후 정책 방향 (관계부처 합동, 2012. 12)

| 표 49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전후 비교

구분	법시행 전	법시행 후	기대효과
법령 (설립분야)	농협·수협 등 8개 분야에 한정된 개별법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일반법	• 「협동조합기본법」 • UN '협동조합의혜'에 맞춰 법제정(2012년) • 개도국 파급 효과 (일본 등 도입 못함)
법인격	법인격 부재 회사(상법), 사단법인(민법) 형태로 사업	법인격 부여 (영리 비영리법인)	• '대안적 기업모델' 도입 • 4,000~8,000 단체이상 법인격 획득(초기)
최소설립인원 (조합원수 기준)	100~1000명 이상	5인 이상	• 다양한 협동조합 설립 활성화 •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복지정책	'복지'와 '일자리' 정책 연계성 한계	'복지정책' 보완	• '일하는복지' 구현 • 복지사업 보완(사회적기업, 자활 등) • 복지전달체계 개선
신규창업 (일자리)	설립 제한 (협동조합 설립 제한)	사실상 모든 경제사 회분야 설립	• 소액·소규모 창업 활성화(청년창업 등) •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다양한 경제수요 충족
노동자 협동조합 (조합원=직원)	설립 제한	설립가능	• 청소·택배·퀵서비스· • 재활용·대리운전 등 협동조합 설립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	특수형태 근로자 보호 취약 (법인격단체 설립 제한)	특수형태 근로자 협 동조합 설립가능	• 캐디·학습지도사·돌봄근로자 등 보호 강화 (4대보험 혜택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영세상인, 상공인 등)	자영업자간 법인격 단체 설립 제한	자영업자 (개인·법인) 협동조합 설립 가능	•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 (협력·협업·공동구매 등) • 미래시장상인 지원 • 지역경제 활성화 등

※ 출처 : 협동조합 홈페이지(<http://www.coop.go.kr/COOP/introduce/mainContents.do>)



다 협동조합 설립 절차

협동조합 ▶▶▶

-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제1항). 이와 관련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표 50 | 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 출처 : 협동조합 홈페이지(<http://www.coop.go.kr/COOP/introduce/mainContents.do>)

사회적협동조합 ▶▶▶

-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 제1항). 이와 관련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표 51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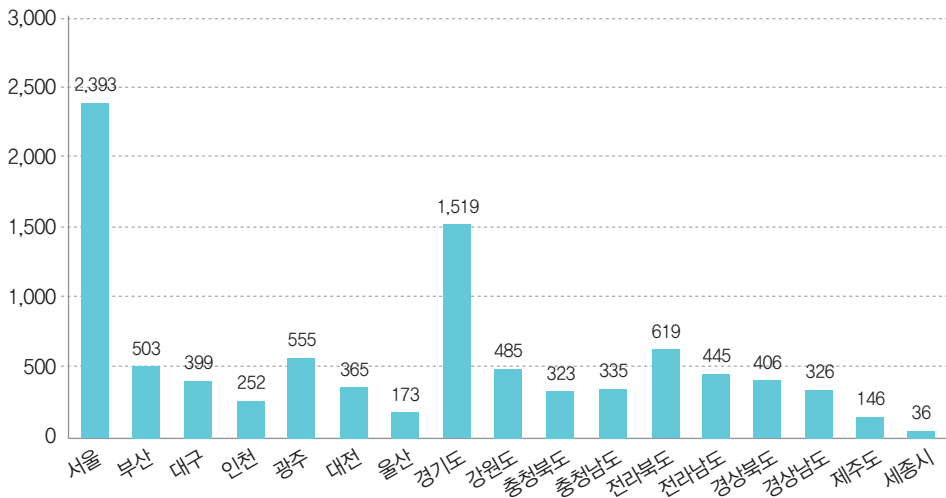
※ 출처 : 협동조합 홈페이지(<http://www.coop.go.kr/COOP/introduce/mainContents.do>)



IV. 대학기반 창업의 특수 유형

라 협동조합 설립 현황

- 2012년 12월 1일부터 2016년 8월 6일까지 설립된 협동조합은 총 9,838개이다. 이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일반협동조합 9,280개, 사회적협동조합 504개, 일반협동조합연합회 50개,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4개이다.



※ 출처 : 협동조합 홈페이지(<http://www.coop.go.kr/COOP/introduce/mainContents.do>)

| 그림 25 | 일반협동조합(9,280개)의 지역별 분포

마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http://www.setcoop.net>)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는 과학기술인들의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1)교육지원, 2)상담지원, 3)컨설팅지원, 4)일자리·일거리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 동 센터가 말하는 과학기술 협동조합의 정의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참고 | 과학기술 협동조합의 정의 및 기준

이공계 인력*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등의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

*이공계 인력의 기준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을 따름

**조합 내 이공계 인력이 설립동지자의 50% 이상이거나, 전체 조합원에서 이공계 인력이 5명 이상이어야 함. 조합원 중 법인이 포함된 경우 이공계 인력이 2명 이상 근무하는 법인은 이공계 조합원 1인으로 봄

***'과학기술 관련 서비스'라 함은 연구개발(R&D) 및 이를 위한 지원, 과학기술 서비스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과학기술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활동)등을 말함.





참고 문헌

1.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 매뉴얼, 2012
2. 한국연구재단,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결과(각 연도).
3. 교육부, 한 눈에 보는 (학생)창업지원 MAP, 2016.
4. 교육부, 학생창업가이드북, 2012
5. 김선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자료(신기술창업전문회사), 2015. 12.
6.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보도자료, 제1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탄생, 2008. 02. 26.
7. (사)벤처기업협회, 벤처 기업 현황(2016)
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소기업 설립 GUIDEBOOK, 2015
9.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 개요집 1094, 2014
10.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설립운영 안내서, 2013



부록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6.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사회적기업육성법
8.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9. 협동조합 기본법
10.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창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15.9.28.] [법률 제13225호, 2015.3.27., 일부개정]



교육부(산학협력정책과) 044-203-6764

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産學研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3.12.30.>

1. “산업교육”이란 제2호의 산업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하는 교육을 말한다.
 - 가. 삭제 <2011.7.25.>
 - 나. 삭제 <2011.7.25.>
 - 다. 삭제 <2011.7.25.>
2. “산업교육기관”이란 산업교육을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 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 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나. 직업 또는 진로와 직업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산업교원”이란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敎員)을 말한다.
4. “산업자문”이란 산업교원이 산업체의 경영이나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에 관하여 산업체, 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자문(諮問)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5.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나. 국공립 연구기관
 -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바.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7. “학연교수”란 대학과 연구기관의 합의에 의하여 양 기관 모두에서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8.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란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9. “자회사(子會社)”란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조(학생의 진로 지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12.30.>

1. 산업교육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
3.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
4. 산업교육에 필요한 현장 실습계획의 수립·시행
5. 산업교원 연수계획의 수립·시행
6.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7.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8. 산업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관리·감독
9.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②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7.25.>

1. 산학연협력촉진의 중기·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산학연 간 인력 유동성 촉진
4.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
5.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 6. 산학연 간 연구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지원 등
-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 [전문개정 2007.12.2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12.30., 2016.3.22.>

1. 산업교육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
 3.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
 4. 산업교육에 필요한 현장 실습계획의 수립·시행
 5. 산업교원 연수계획의 수립·시행
 6.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 6의2. 산업교육기관 학생의 창업지원 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7.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8. 산업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관리·감독
 9.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
- ②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7.25.>

1. 산학연협력촉진의 중기·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산학연 간 인력 유동성 촉진
 4.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
 5.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6. 산학연 간 연구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지원 등
- ③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 2016.9.23.] 제4조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개정 2007.12.21.>

제5조 삭제 <1997.3.27.>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체등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단기 산업교육시설은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3.22.〉

③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신설 2016.3.22.〉

④ 제2항에 따른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과 시설·설비 기준, 그 밖에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 2016.9.23.] 제6조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의 융합인재 및 청년창업가 양성 특별과정의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① 산업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로,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학과·학부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앞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학부나 유사한 학과·학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지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④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은 제1항 각 호의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3.27.〉

⑤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발방법, 정원, 납부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

[전문개정 2007.12.21.]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기관이 제8조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약학과등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산업체등이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산업체등에 의한 신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3.27.]

제8조의3(보고·검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계약학과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교육기관에 대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3.27.]

제9조(산업자문 등) ① 산업교원은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되는 분야의 산업체등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자문을 할 수 있다.

② 산업자문이 필요한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이나 산업교원에게 산업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자문을 요청 받은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산업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산업교원과 산업체등의 장은 산업기술의 개량·개발 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업체등의 연구기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산업자문과 연구기기의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0조(실험·실습 시설의 확보) ① 산업교육기관의 설립·경영자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고 그 시설·설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실험·실습비에 관한 특별배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배정할 때에 산업교육이 효율적으로 진흥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12.30.>

1.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기술인력의 양성체제 구축
2.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산학연협력을 촉진하는 교육 개편, 청년창업가 및 융합인재 양성 지원
4.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인력 양성

5.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기술인력의 재교육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8. 여성기술인력의 양성 및 산업기술계의 진출 촉진
9.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 사업을 수행할 때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7.25.]

제12조(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원의 자격·정원 및 대우에 관하여는 산업교육의 특수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2조의2(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교원이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승진·보수 등에 적정하게 평가·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제13조(신기기 등의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따른 새로운 원리의 적용이나 기술의 복합 등으로 기능이 현저하게 향상된 신기기(新機器)와 신기술(새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개발·생산된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을 개발·생산한 산업체 등은 그 신기기와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3조의2(산업교육센터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산업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산업교육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산업교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산업교육기관 간의 협력망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산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업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산업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3.22.]

[시행일 : 2016.9.23.] 제13조의2

제3장 삭제 <2010.3.17.>

제14조 삭제 <2010.3.17.>

제15조 삭제 <1997.3.27.>

제16조 삭제 <1997.3.27.>

제17조 삭제 <1997.3.27.>

제4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개정 2007.12.21.>

제18조(실험·실습시설 설치비의 부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확보·유지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19조(실험·실습시설 운영비의 부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설립·경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의 실험·실습시설 운영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산업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私立)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1조 삭제 <1997.3.27.>

제22조(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 등) ① 국가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과용 도서의 편찬, 검정·인정 및 발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산업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2조의2(교육과정 평가·인증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업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학회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3조(장학금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5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신설 2003.5.27., 2011.7.25.>

제24조(산학연협력계약)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과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이하 “산학연협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설립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산학연협력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산학연협력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5.>

③ 산학연협력계약은 호혜적 원칙과 계약당사자 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체결한다.

<신설 2013.12.30.>

④ 산학연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12.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드는 비용(시설·장비·인력·지식재산권 등의 활용 비용을 포함한다)의 부담이나 보전(補填)에 관한 사항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과 배분에 관한 사항

⑤ 산학협력단 설립 당시의 대학의 장이나 대학의 설립·경영자가 체결한 산학연협력계약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5., 2013.12.30.>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제25조(산학협력단의 설립·운영) ① 대학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산학연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산학협력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명칭에는 해당 학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⑤ 산학협력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은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학교법인에 귀속하는 남은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편입한다.

⑥ 산학협력단의 능력, 주소, 등기, 재산목록, 이사,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 제54조, 제55조제1항,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5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를 준용하며, 산학협력단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59조제2항, 제61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6조(정관)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을 설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하부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
7. 단장, 연구원 및 직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8. 단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7.12.21.]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12.21., 2011.5.19., 2011.7.25., 2013.12.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③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3.12.30.>

[본조신설 2003.5.27.]

제28조(산학협력단의 단장) ① 산학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대학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④ 산학협력단의 단장은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⑤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29조(산학협력단의 조직) 산학협력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0조(사업연도)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는 해당 대학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1조(수입)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11.7.25.〉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학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학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학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제36조에 따라 국·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으로부터의 운영 수입금
6.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7. 그 밖에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산학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6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1.〉

[본조신설 2003.5.27.]

제32조(지출)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11.7.25.〉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연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제36조에 따라 국·공립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설치한 학교기업의 운영비
6.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7. 제38조에 따른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 지원비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되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본조신설 2003.5.27.]



제32조의2(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 등의 제한) 산학협력단은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3조(회계원칙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그 수입과 지출,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가 명백히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4조(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교직원에게 산학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5조(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①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계약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5.19., 2011.7.25.>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취득·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계약을 체결할 때 기술의 사업화 및 산학협력 촉진을 위하여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취득·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④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⑤ 제4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관리 및 기술의 이전·사업화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12.30.>

1.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보호,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사업화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활용 범위, 기본 요건 등에 관한 사항
3. 기술의 이전·사업화 정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연구자(발명자) 또는 기술이전에 기여한 사람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3.5.27.]

[제목개정 2011.5.19.]

제36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가공·수선·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2.21.>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업교육기관 회계(국·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말한다)

2.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학협력단 회계

③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본조신설 2003.5.27.]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① 산학협력단 및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산업교육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하 “산학협력단등”이라 한다)은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1. 다른 대학의 산학협력단

2. 학교법인(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구기관

② 기술지주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인가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2013.12.30.>

1. 주식회사일 것

2.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산학협력단등(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출자하고,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할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③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는 이로써 「상법」 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설립·경영관리 및 이에 딸린 업무와 기술지주회사 운영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의3(자회사의 설립 방식) ①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등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② 기술지주회사는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를 통하여 자회사로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 자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한다. <개정 2011.7.25.>



④ 삭제 <2011.7.25.>

⑤ 삭제 <2011.7.25.>

⑥ 삭제 <2011.7.25.>

⑦ 삭제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제36조의4(자회사의 출자 등) ①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에 기술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②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는 “기술”은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이어야 하며, 정관을 인증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된 기술을 현물출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 현물출자 시의 평가액을 자회사의 현물출자액으로 할 수 있다.

④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지분 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술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및 다른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7.25.]

[중전 제36조의4는 제36조의5로 이동 <2011.7.25.>]

제36조의5(기술지주회사의 명칭) ① 기술지주회사는 상호 중에 대학(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과 공동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을 포함한다)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기술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기술지주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상법」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제36조의4에서 이동, 중전 제36조의5는 제36조의6으로 이동 <2011.7.25.>]

제36조의6(이익배당의 사용제한) ① 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제27조제1항에 따른 업무와 대학의 연구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대학의 연구활동과 직접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3.12.30.>

② 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에서 받은 배당이나 그 밖의 수익금은 연구개발 활동이나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재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6은 제36조의7로 이동 <2011.7.25.>]

제36조의7(교직원, 연구원의 겸직 및 휴직) ① 대학의 교직원 및 연구기관의 직원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에 따라 겸직 또는 휴직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제36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7은 제36조의8로 이동 <2011.7.25.>]

제36조의8(기술지주회사의 인가 취소 등)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기술지주회사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1. 제36조의2제2항 각 호의 설립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36조의2제4항으로 정하는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한 경우
3. 제36조의6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8은 제36조의9로 이동 <2011.7.25.>]

제36조의9(청문) 교육부장관은 제36조의8제2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36조의9는 제36조의10으로 이동 <2011.7.25.>]

제36조의10(「상법」의 준용)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상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제36조의9에서 이동 <2011.7.25.>]

제37조(협력연구소) ①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19조,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운영하는 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를 두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지상권을 설정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7.25.)

② 대학의 설립·경영자는 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학과 협력연구소의 시설·기자재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지의 임대 또는 지상권 설정의 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끝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은 해당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대학의 설립·경영자에게 기부하거나 교지를 원상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37조의2(인력의 공동활용) ①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제2조제5호가목의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및 같은 호 다목·라목의 연구기관만 해당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상호 합의하여 인력의 공동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대학 교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연구기관의 학연교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은 원 소속 기관장과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원래의 소속과 직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해당 대학의 학연교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37조의3(파견) ①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및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국공립대학 교원을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기관에 파견할 경우에는 소속 대학의 장이 승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파견 시 급여는 파견받는 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 기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을 가는 사람은 파견으로 인한 신분상·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37조의4(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등) ① 국가는 연구시설·장비 활용 효율화, 장비운용 전문인력의 육성 등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산업교육기관은 다른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부터 해당 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활용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38조(산학연협력 관련 협의회 등) 산학협력단등, 산학연협력에 참여하는 연구기관, 단체 및 산업체등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협의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1. 산학연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산학연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학연협력 업무담당자 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학연협력의 촉진 및 산학연협력 성과의 홍보 등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제39조(산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

협력단등이나 그 밖에 산학연협력사업을 하거나 산학연협력을 촉진·지원하는 단체 및 그 사업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12.30.>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교육기관과 산학연협력을 추진할 때에 그 산업교육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산학연협력의 성격과 목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

[제목개정 2011.7.25.]

제39조의2(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산학연협력 관련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기초 자료의 작성·유지·관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제40조(학자금 용자계약의 지원)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등이 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여하고 그 학생의 근로 제공에 따라 그 상환을 면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홍보, 정보의 제공, 알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6장 보칙 <개정 2007.12.21.>

제41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외국정부·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산업교육기관·훈련기관·산업연구기관·산업체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에 관한 정보교류
2. 산업교원의 교류 및 연수
3. 산업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 참가
4. 그 밖에 산업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전문개정 2007.12.21.]

제42조(학원의 학습자에 대한 보조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제43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권한위탁에 관한 절차 등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7.25.]



제44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7.25.]

제45조(비밀유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1.7.25.]

제46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1.7.25.]

부칙 <제13225호, 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폐지 신고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4.12.] [대통령령 제27092호, 2016.4.12., 일부개정]



교육부(취업창업교육지원과) 044-203-6885

교육부(산학협력정책과) 044-203-676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란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한다)
3. 산업수요 맞춤형 학과 또는 전문계 과정(課程)을 설치한 일반고등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54조에 따른 고등기술학교

②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25.>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2. 「국방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3.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사관학교
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국군간호사관학교
5.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6.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7.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8.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9.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10.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③ 법 제2조제5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국가로부터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出資)받거나 출연(出捐)받은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업화 대상 기술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되었거나 등록을 신청 중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식재산



2. 제1호의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資本財)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술에 관한 정보
4. 이전과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

제4조(진로 지도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생이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맞는 산업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의 진로 지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별 진로상담실의 설치·운영과 학생의 진로 지도를 담당하는 교원(敎員)의 배치·연수 등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진로 지도를 위하여 진로 지도 담당 교원과 관계 전문가·기관 및 단체 등이 협력할 사항
3. 학생의 진로 지도에 필요한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진로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개발 또는 제공하는 기관·단체의 육성
5. 그 밖에 학생의 진로 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산업교육 진흥 종합계획 등) ①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교육 진흥 종합계획은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1년 단위의 연도별 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충 및 정비계획
2. 현장실습 등 산학연협력(産學研協力) 증진계획
3. 산업교원의 연수계획
4.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산업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현장 실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의 내용 및 평가
2. 산업체의 현장실습 실시능력의 향상 방안
3.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 자료의 개발·공급
4. 산업재해의 예방과 보상
5. 학생의 후생복지
6. 그 밖에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교원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수기관과 산업현장에서의 연수에 관한 사항
2. 국외연수에 관한 사항
3.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중 부전공 과목의 표시를 위한 부전공 연수
4. 연수기관 외의 기관·단체 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산업체등에서의 연수·연구 등 실적의 경력 인정 방안
5. 그 밖에 산업교원 연수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 알선과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업 알선기관과 산업교육기관의 협조 방안
2. 전문 분야별 기술의 향상 방안
3. 그 밖에 취업 알선 등에 필요한 사항

⑤ 교육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산학연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산학연협력의 실태
2. 산업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과 산업체·사업자단체 및 직능단체(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의 산학연 협력에 대한 만족도
3. 산학연협력 담당 교직원 및 관련 시설·설비의 현황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제6조(단기 산업교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에 따라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산업교육기관에 부설한다.

②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수업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③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학급당 학생 수는 50명 이하로 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교원과 사무직원은 그 단기 산업교육시설을 부설한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사무직원을 겸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에 두는 교원과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교원과 사무직원의 배치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원과 시설·설비를 갖추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한다. <개정 2013.3.23.>

제7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직업교육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산업교육기관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체결하는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명칭
2. 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훈련생의 정원과 선발에 관한 사항
4.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경비의 산출기준과 부담방법을 포함한다)
5.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에 관한 사항
6.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③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 선발은 실기시험,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추천이나 근무경력 등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하되, 산업교육기관은 교육훈련생의 소질·적성 및 능력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방법과 기준을 다양하게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교육훈련생 정원은 교원 1명당 학생 수, 학생 1명당 교사(校舍) 기준면적 등 그 산업교육기관의 교육 여건과 사회적 인력 수급(需給) 전망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별로 산업교육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계약으로 정한다.



⑤ 직업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훈련비의 총액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등을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그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고등학교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와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고등학교과정 및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교육기관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 포함시켜야 한다.

1. 계약학과등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학생 선발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
6. 학생이 부담하는 수업료 등 납부금에 관한 사항
7. 학기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8.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9. 계약학과등이 그 설치·운영기간이 끝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 그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③ 계약학과등의 수업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학생 선발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입학전형방법이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⑤ 계약학과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의 부담금은 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⑦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기간은 계약학과등에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⑧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등에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등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려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체결일 2주 전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등 설치·운영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려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학과등 폐지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9.22.]

제9조(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학위수여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9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년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9.22.]

제10조(산업자문 등) 법 제9조에 따라 산업체등의 장이 산업자문을 요청하거나 연구기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 산업교원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이에 응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교원으로부터 연구기기 사용을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산업체등의 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시설·설비의 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설비 기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2조나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제12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법 제11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기술인력 양성 관련 정보의 수집
2. 산업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촉진과 취업 지원
3.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대상)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등”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4조(산학연협력 실적 등의 평가·반영)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산업교원이 산학연 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그 성과가 그 산업교원의 평가·승진·보수 등에 적절하게 평가·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5조(신기기와 신기술의 공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기기(新機器)와 신기술을 산업교육기관에 공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기와 신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신기기 및 신기술을 개발·생산한 산업체등의 장이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 기기로 한다. <개정 2013.3.23.>

제3장 실험·실습시설 등에 대한 국가의 부담

제16조(국고보조의 기준)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보조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설비 등의 보조금은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설치 등에 드는 경비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험·실습시설의 운영과 실험·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그 경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산업교원의 현직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금은 현직 교육을 받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교육비 전액

제17조(교과용 도서의 발행에 대한 보조)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그 발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 도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3.23.>

1.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 도서
 2.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산업교육에 관한 교과용 도서
 3. 산업교육에 관한 인정도서
- 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그 금액은 제1항 각호의 도서 발행에 필요한 총 경비의 10분의 2 이상 10분의 5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18조(장학금의 지급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장학금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산학연협력의 촉진

제19조(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단장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 ② 산학협력단의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 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학칙 사본
 2. 산학협력단의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사본
 3. 단장의 취임승낙서 사본

제20조(산학협력단의 업무)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연구원과 직원의 수, 사무소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학협력단의 업무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 대학 내 산학연협력 총괄 기획·조정
2. 삭제 <2014.6.30.>
3.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 지원
4. 해당 대학 안에 설치·운영 중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와 이에 입주한 기업 등에 대한 지원
5. 해당 대학 안에 설치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이하 “실험실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
6. 산학연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산학연협력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8. 산학연협력과 관련하여 해당 대학의 소속 교직원이 소유하거나 소속 교직원과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수탁관리
9. 해당 대학과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이하 “협력연구소”라 한다) 간의 상호 협력 활동 지원
10.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이하 “산업기술단지”라 한다) 안에 해당 대학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업기술단지 안에 포함된 대학의 교지(校地) 안에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11. 그 밖에 해당 대학의 교지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과 연구소 등에 대한 지원

제21조(산학협력단의 수입)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이자수입(利子收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이자수입
2. 다른 대학이나 산업체등이 활용하여 지급하는 해당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 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제22조(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재원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재원의 성격, 수입금액의 정도, 지급대상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달리하며,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산학협력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대학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다.

제23조(산학협력단의 지출) 법 제3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에 관한 업무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3. 제20조 각 호의 업무

제24조(산학협력단의 회계 관리) ① 산학협력단 소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산학협력단의 회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산학연협력에 관한 법령이나 산학연협력에 관한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할 수 있다.

제25조(산학협력단의 회계기관) ①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② 단장은 수입 징수 또는 지출 명령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에는 그 수입과 지출의 집행기관으로 수입원과 지출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입원과 지출원은 단장이 임명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의 규모에 따라 수입원과 지출원을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산학협력단의 지출방법) ①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지출 명령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출원이 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지출은 금융기관의 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한다. 다만, 정관에서 정하는 소액 지출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등)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시행일 : 2013.1.1.] 제27조

제28조(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 ① 산학협력단의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심의기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16.4.12.>

② 단장은 사업연도마다 산학협력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고,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해당 예산안을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2.>

③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의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4.12.>

④ 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⑤ 제4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1.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표 부속 명세서
2. 운영계산서와 운영계산서 부속 명세서
3. 현금흐름표
4. 부속 서류

⑥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단의 사업연도가 끝난 후 7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의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시행일 : 2013.1.1.] 제28조

[제목개정 2016.4.12.]

제29조(결산보고서의 비치 및 공개) ① 단장은 제28조제6항에 따라 결산이 확정되면 주된 사무소에 결산보고서를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6.4.12.>

② 단장은 이해관계인이 결산보고서의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하여야 한다.

제30조(감사) 대학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이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산학협력단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監査)하게 하여야 한다.

제31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계획 등)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기업 설치·운영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기업의 소재지
2. 사업종목, 관련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
3. 담당 직원 현황
4. 재정투자계획

5. 시설·설비 및 기자재 운용방법

-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터넷, 산업교육기관의 신문 등을 이용하여 학생·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설치·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학칙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④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2조(학교기업의 소재지) ①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학생 교육에 필요한 경우 산업교육기관이 있는 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교사시설 또는 교지 밖으로 할 수 있다.

- 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3조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른 교사 안
-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교지(학생교육에 사용되는 농장 등의 실습장 부지를 포함한다)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5조에 따른 교지 안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밖에 있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제주특별자치도 안에 학교기업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의 소재지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33조(학교기업의 사업종목)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종목 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종목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정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제34조(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 지출 범위)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그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학교기업의 설치·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서 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은 산업교육기관 회계의 연간 수입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학교기업의 사업종목과 학교기업의 수
- 2. 학교기업 관련 학부·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수
- 3. 학교기업 관련 직원과 학생의 수

제35조(학교기업의 지원조직 등) ① 산업교육기관은 그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에 학교기업을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직에는 학교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36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을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의 시설·설비,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적절성, 직원의 수 및 인적 구성, 실습 여건 및 후생복지 등이 학생의 현장실습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기업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8조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된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받으려는 학생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산업교육기관의 장과 미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기업 관련 학과 학생들이 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현장실습학점 등의 인정)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수 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4분의 1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결과를 산업교육기관의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결과를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학칙에 현장실습학기 또는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에 따른 학점·이수단위 또는 교육과정의 이수 정도를 정하여야 한다.

제38조(학교기업의 예산)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회계연도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관련된 예산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기업의 예산 편성·집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학교기업의 회계처리)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복식부기의 원리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기업의 회계를 처리할 때에는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운영계산서 및 현금흐름표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40조(교직원 등에 대한 보상) ①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학교기업에서 순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수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과 학생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용도로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순수익 재원의 성격, 순수익 금액의 규모, 관련 직원과 학생이 학교기업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41조(학교기업 운영 세칙)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운영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주체 및 설립 요건)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4.6.30., 2015.9.25.>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4.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② 법 제36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1. 상근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2. 전용공간을 갖출 것

[제목개정 2014.6.30.]

제43조(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법 제3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2.3., 2016.4.12.>

1. 자회사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자문 업무
2. 자회사의 기업 공개를 지원하는 업무
3. 자회사와 다른 회사 간의 합병, 자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매각, 자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자회사의 분할 등에 관한 업무
4. 자회사의 채용 조달을 지원하는 업무
- 4의2. 자회사에 대한 시설임대 업무
5.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가 보유한 기술의 자회사에 대한 이전·사업화 및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이전·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자회사의 홍보, 교육·훈련, 마케팅에 관한 업무
7. 창업보육센터, 실험실공장,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력연구소, 산업기술단지 또는 교지 안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및 연구소와의 상호 협력 업무
8.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는 업무
9.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하거나 자회사에 출자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투자조합 결성 또는 운영 업무
10.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등으로 이전하고 사업화를 중개하는 업무
11. 해당 산업교육기관과 자회사 외의 다른 산업교육기관 및 다른 회사에 대한 기술·경영 지원 및 교육·훈련 지원 업무

제44조(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법 제3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2.7.26.>

1. 해당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실험실공장
3.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른 연구소기업

제45조(자회사 주식보유 의무 예외 사유) 법 제36조의4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2.3.>

1. 기술지주회사가 지분 양도 등으로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
2. 자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
3. 자회사가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우선 배정하여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
4. 자회사가 「상법」 제513조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이 청구되거나 같은 법 제516조의2에 따라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그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제46조(이익배당 사용업무) ① 법 제36조의6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그에 따른 용도를 말한다.

1. 연구시설과 기자재의 구입, 운영, 유지·보수 업무
2. 연구개발 기획 업무
3. 연구개발 성과의 평가와 보상에 관한 업무

제47조(교직원 등의 겸직 및 휴직) 법 제36조의7제1항에 따른 교직원 및 직원의 겸직 및 휴직은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제48조(협력연구소)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대학의 교지 안에 협력연구소를 두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립대학의 설립·경영자는 대학의 교지 안에 협력연구소를 두려는 경우에는 미리 대학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인력의 공동활용)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제2조제5호가목의 연구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3.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4.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5.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6.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 ② 대학의 장과 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연교수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학연교수의 임용 목적
 2. 초청기관에서의 학연교수의 신분과 임용기간
 3.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관에서의 업무 기여 비중
 4.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관에서의 교육 또는 연구에 관한 사항
 5. 초청기관에서의 연구 공간과 시설·장비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초청기관에서의 근무 조건에 관한 사항
 7. 학연교수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8. 학연교수 임용 중에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 ③ 학연교수에 대한 급여와 법정부담금은 원 소속 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관이 협의하여 학연교수의 업무 기여 비중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④ 학연교수의 정년과 연금에 관한 사항은 원 소속 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 ⑤ 학연교수는 초청기관에서 부여받은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지위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 ⑥ 원 소속 기관과 초청기관은 학연교수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력의 공동활용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의 학칙 또는 정관, 연구기관의 정관 또는 복무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49조의2(산학협력단의 운영비 보조) 지방자치단체(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인건비 등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4.12.]

제50조(산학연협력 통계의 작성)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은 산업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학연협력 활동 전반을 말한다.

제5장 보칙

제51조(기술계열 학원 학습자에 대한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기술계열 학원의 학습자에게 수강료와 교재비 등 학습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와 교재비 등의 보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원의 설립·경영자에게 학습자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만 한다.

제52조(업무의 위탁) 법 제4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2.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수탁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53조(규제의 재검토)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15.12.31.>

1. 제8조에 따른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 2014년 1월 1일
- 1의2. 제20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 : 2016년 1월 1일
2. 제33조에 따른 학교기업 사업종목의 제한 : 2014년 1월 1일
3. 제42조에 따른 기술주주회사의 설립 요건 : 2014년 1월 1일
4. 제44조에 따른 자회사로 할 수 있는 회사 : 2014년 1월 1일
5. 제46조에 따른 이익배당의 사용 제한 : 2014년 1월 1일

②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1. 제11조에 따른 실험·실습 시설의 기준 : 2015년 1월 1일
2. 제27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 :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부칙<제27092호, 2016.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6.5.29.] [법률 제14271호, 2016.5.29., 일부개정]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 042-481-4425

제1장 총칙 <개정 2007.8.3.>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2조(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②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③ 삭제 <2006.3.3.>

④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⑥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協業化)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⑦ “전략적 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시설·정보·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8.3.>

⑧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7.8.3.>

⑨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와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7.8.3.>

[제목개정 2007.8.3.]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9.5.21., 2010.1.27., 2011.3.9., 2014.1.14., 2016.5.2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 (3)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 (4) 「여성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 (6)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9.5.21., 2010.1.27., 2011.3.9., 2014.1.14., 2016.3.22., 2016.5.2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 (3)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 (4) 「여성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 (5)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 (6)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 2016.9.23.] 제2조의2

제3조(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의 결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8.>
[전문개정 2007.8.3.]

제2장 벤처기업 육성기반의 구축 <개정 2007.8.3.>

제1절 자금공급의 원활화

-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행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 ③ 삭제 <1998.12.30.>
- ④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4.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제목개정 2007.8.3.]

제4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7.8.3.>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행하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③ 삭제 <1998.12.30.>

④ 「보험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6.3.29.>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4.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제목개정 2007.8.3.]

[시행일 : 2016.9.30.] 제4조

제4조의2(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①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관리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5.21., 2015.5.18.>

②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5.21., 2015.5.18.>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모태조합의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09.4.1., 2015.5.18., 2015.7.24.>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5. 신기술사업투자조합
 6.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④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모태조합의 자산을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그 밖에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 ⑤ 삭제 <2009.1.30.>
 - ⑥ 삭제 <2009.1.30.>
 - ⑦ 삭제 <2009.1.30.>
 - ⑧ 삭제 <2009.1.30.>
 - ⑨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에 모태조합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 [전문개정 2007.8.3.]

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5항제3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5.5.18.>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 ②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0.1.27.>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
 3. 법률에 따라 공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7에 따른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신설 2010.1.27.>

④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기간을 포함한 결성 요건과 신고 사항,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에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5.5.18.>

1.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투자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그 밖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⑥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⑦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전문개정 2007.8.3.]

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6항제3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 매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게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5.29.>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16.5.29.>

③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 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투자회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6.5.29.>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
 3. 법률에 따라 공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8에 따른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신설 2010.1.27., 2016.5.29.>
 - 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기간을 포함한 결성 요건과 신고 사항,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2016.5.29.>
 - ⑥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에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5.5.18., 2016.5.29.>
 1.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투자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그 밖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 ⑦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6.5.29.>
 - ⑧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2016.5.29.>
-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 2016.8.30.] 제4조의3

제4조의4(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 ①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한다.

-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나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 외의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행위. 다만,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제2항제5호 단서에 따라 담보권의 실행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전문개정 2007.8.3.]

제4조의5(한국벤처투자조합 조합원 지분의 양도)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③ 유한책임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2016.5.29.]

[중전 제4조의5는 제4조의6으로 이동 <2016.5.29.>]

제4조의6(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07.8.3.]

[제4조의5에서 이동, 중전 제4조의6은 제4조의7로 이동 <2016.5.29.>]

제4조의7(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①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0.1.27.>

1. 존속기간의 만료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③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당시의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이 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4조의6에서 이동, 중전 제4조의7은 제4조의8로 이동 <2016.5.29.>]

제4조의8(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② 중소기업창업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8.3.]

[제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8은 제4조의9로 이동 <2016.5.29.>]

제4조의8(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5.7.31., 2016.5.29.>

② 중소기업청장은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5.7.31., 2016.5.29.>

[본조신설 2007.8.3.]

[제4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8은 제4조의9로 이동 <2016.5.29.>]

[시행일 : 2016.8.1.] 제4조의8

제4조의9(전담회사의 설립 등) ①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회사(이하 “전담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전담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09.5.21.>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담회사에 대하여 조세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4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9는 제4조의10으로 이동 <2016.5.29.>]

제4조의10(전담회사의 업무 등) ① 전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개정 2013.3.22.>

1.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에 대한 출자
2.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3. 해외벤처투자자금의 유치 지원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5. 정부가 관련 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출연·출자 등을 통하여 조성한 투자재원의 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附隨)되는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위탁하는 사업

② 전담회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 전담회사는 자본금과 적립금총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담회사의 정관을 변경할 때는 중소기업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전담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전담회사가 제1항제2호의 업무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4조의9에서 이동 <2016.5.29.>]

제5조(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벤처기업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5조(우선적 신용보증의 실시) 기술보증기금은 벤처기업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 2016.9.30.] 제5조

제6조(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



제7조 삭제 <1998.12.30.>

제8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외국인이 행하는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

제9조(외국인의 주식취득 제한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대한민국에 6개월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의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09.1.30.>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그 벤처기업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10조 삭제 <1998.12.28.>

제10조의2 삭제 <2010.1.27.>

제11조 삭제 <2001.2.3.>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1.7.25.>

1. 대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2. 국공립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그 밖에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2013.3.22.>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3. 보유인력과 보유시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 ④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개정 2010.1.27., 2015.5.18.>
1. 대학·연구기관 또는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

2. 제1호에 따른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회사의 설립. 다만, 제1항제1호의 대학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없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의 설립·운영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 4의2.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운용
 5. 전문회사가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6.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산업체 등으로의 이전 알선
 7. 대학·연구기관의 교원·연구원 등이 설립한 회사에 대한 경영·기술 지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업
- [전문개정 2007.8.3.]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해당 기관이 설립한 전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5.5.18.>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를 설립할 때나 그 전문회사가 신주(新株)를 발행할 때에 산업재산권등의 현물이나 현금을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제1호의 대학이 현금만을 출자하여 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전문회사에 보유기술을 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③ 전문회사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부, 정부가 설치하는 기금, 국내의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11조의4(기금의 우선지원)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전문회사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전문개정 2007.8.3.]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교원·연구원 또는 직원이 전문회사의 대표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겸직 또는 겸임하는 경우에는 제16조 및 제16조의2를 준용한다.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현물을 전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산업재산권등에 대한 가격의 평가와 감정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인 연구기관이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회사를 등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전문개정 2007.8.3.]

제11조의6(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①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출자자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
2. 해당 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와의 채무 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
3.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전문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만 제1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한 투자나 출자로 발생한 배당금·수익금과 잉여금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11조의7(전문회사 등록의 취소) 중소기업청장은 전문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11조의6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3. 제1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7.8.3.]

제1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특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13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투자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5.18.〉

1. 개인
 - 나. 모태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 다.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및 투자를 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며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기일을 3개월 이상 지난 채무가 1천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5.29.〉
- ③ 제1항 각 호의 자가 제1항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려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조합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2013.3.22., 2015.5.18., 2016.5.29.〉
- ④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기간을 포함한 등록 요건과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2016.5.29.〉
-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자금을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대한 투자는 개인투자조합의 자금으로 할 수 없다. 〈신설 2013.3.22., 2016.5.29.〉
- ⑥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⑦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투자조합의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지위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2., 2016.5.29.>

⑧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전문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한 경우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4. 개인인 업무집행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경우

⑨ 개인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조합원 중 1인을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선임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개인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6.5.29.>

1. 존속기간의 만료
2. 조합원 전원의 탈퇴
3.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탈퇴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⑩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 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6.5.29.>

⑪ 개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자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86조의4 및 제86조의9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

[전문개정 2007.8.3.]

제13조의2(개인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및 운영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의 개인투자조합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4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벤처투자조합”은 “개인투자조합”으로 본다. <신설 2016.5.29.>

② 출자금 총액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 재산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2., 2016.5.29.>

1.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에 위탁할 것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③ 제2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재산을 위탁받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3.3.22., 2016.5.29.>

1.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업무집행조합원의 개인투자조합 재산 운용 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④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자산을 운용할 때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투자되지 아니한 조합자산에 대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 예치하거나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2013.3.22., 2016.5.29.>

⑤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



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투자실적의 변동이 없는 조합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6.5.29.>

[전문개정 2007.8.3.]

[제목개정 2016.5.29.]

제13조의3(등록의 취소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6.5.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3. 제1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한 경우
4.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합가입을 권유한 경우
5. 제13조제4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금을 투자한 경우
7. 제13조제7항에 따른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8.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경우
9.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재산을 관리한 경우
10. 제1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26조제3항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2. 제2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6.5.29.>

1. 시정명령
2. 경고
3. 주의

③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이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6.5.29.>

1. 경고
2. 주의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인 때에는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1. 해임요구
2. 경고
3. 주의

[전문개정 2007.8.3.]

[제목개정 2015.5.18.]

제14조(조세에 대한 특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투자대상 및 감면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제지원 대상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8.3.]

제2절 기업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제15조(벤처기업의 주식교환)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및 제16조의3에서 같다)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9.1.30., 2013.5.28.>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상법」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하여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이 가능한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전략적제휴의 내용
2. 자기주식의 취득 방법, 취득 가격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사항
3. 교환할 주식의 가액총액·평가·종류 및 수량에 관한 사항
4. 주식교환을 할 날
5.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 ④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그에 관한 이사회 결의가 있을 때에는 즉시 결의내용을 주주에게 통보하고, 제3항에 따른 주식교환계약을 갖추어 놓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⑤ 벤처기업이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따라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이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따라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2항에 따른 자기주식의 취득 기간은 제3항의 주주총회 승인 결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15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주총회 승인 결의 전에 그 벤처기업에 서면으로 주식교환을 반대하는 의사를 알린 주주는 주주총회 승인 결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벤처기업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식은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15조의3(합병 절차의 간소화 등)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결의(제15조의9에 따른 소규모합병 및 제15조의10에 따른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의결의를 말한다)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합병결의를 한 날부터 1주 내에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0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사항을 최고(催告)하여야 한다.

②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는 「상법」 제36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일 7일 전으로 할 수 있다.

③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하기 위하여 합병계약서 등을 공시할 때는 「상법」 제52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시 기간을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7일 전부터 합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④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가 결의한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의 주주는 「상법」 제522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전에 벤처기업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알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⑤ 벤처기업이 제4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 및 제53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74조의2제4항 중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은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일”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

제15조의4(신주발행에 의한 주식 교환 등)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전략적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주식이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위하여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그 벤처기업의 주주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승인 결의에 관하여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1. 전략적제휴의 내용
 2. 교환할 신주의 가액 · 총액 · 평가 · 종류 · 수량 및 배정에 관한 사항
 3. 주식교환을 할 날
 4.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와 주식을 교환할 경우 주주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교환할 주식의 종류 및 수량
- ③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을 통하여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가 보유한 주식이나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

업이 보유한 주식을 벤처기업에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 그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때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에 따라 감사인이 조사를 한 것으로 보거나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법」 제422조제3항 및 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

④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15조의5(신주발행 주식교환 시 주식매수청구권)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15조의6(주식교환의 특례) ① 벤처기업이 제15조나 제15조의4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는 경우 그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에 제15조제3항이나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벤처기업은 주식교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의 주요 내용

2.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교환을 한다는 뜻

④ 벤처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알린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주식교환을 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제15조의2나 제15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15조의7(주식교환무효의 소) 제15조나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무효의 소(訴)에 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60조의14제2항 중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완전모회사가 된 회사”는 “벤처기업”으로, “완전자회사가 된 회사”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

제15조의8(다른 주식회사의 영업양수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9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9.1.30., 2013.5.28.>

② 제1항에 따른 경우에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다른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다른 주식회사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



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영업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
2.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수한다는 뜻
- ④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제3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가 있었던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를 반대하는 의사를 알린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영업양수를 할 수 없다.
- ⑤ 제1항에 따른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15조의9(벤처기업 소규모합병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의 총수가 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하인 때에는 그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 그 금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7.8.3.]

제15조의10(벤처기업 간이합병의 특례)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다른 주식회사와 합병을 하는 경우 「상법」 제52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는 「상법」 제522조의3제2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7.8.3.]

제15조의11(간이영업양도)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른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려는 회사는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영업양도·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
2.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도한다는 뜻
- ④ 제3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2주의 기간이 지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의 매수청구에 관하여는 「상법」 제374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1.30.]

[중전 제15조의11은 제15조의12로 이동 <2009.1.30.>]

제15조의12(준용규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제24조제1항제4호는 창업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벤처기업”은 “창업자”로 본다. <개정 2009.1.30.>

[본조신설 2007.8.3.]

[제15조의11에서 이동 <2009.1.30.>]

제15조의13(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의 지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의 인수합병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정보의 수집·제공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의 기업가치평가모델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중소기업의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의 인수합병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인수합병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1.30.]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기업청장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1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9.1.30.]

제16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허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5.5.18.>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조 제1항제3호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직 기간은 5년(창업 준비기간 6개월을 포함한다)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교원의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4.12.30., 2015.5.18.>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대학의 교원이나 공공연구기관·공공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러 그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공공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이나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2., 2015.5.18.>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교원이나 공공연구기관·공공기관의 연구원 등이 휴직한 후 복직하는 경우 해당 소속 기관의 장은 그 휴직으로 인하여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3.22., 2015.5.18.>

[전문개정 2007.8.3.]

[제목개정 2013.3.22.]

제16조의2(교육공무원등의 겸임이나 겸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공무원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 부출연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은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을 겸임하거나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과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 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8.6.>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②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 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기간

5.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이나 명칭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와 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주식을 해당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그 벤처기업의 이사회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0.>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30.>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⑨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내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⑩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07.8.3.]

제16조의4(벤처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정부는 벤처기업의 창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투자·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벤처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에 대한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항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개인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8.3.]

제16조의5(벤처기업인 유한회사에 대한 특례) ① 삭제 <2015.5.18.>

② 삭제 <2015.5.18.>



③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580조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16조의6 삭제 <2015.5.18.>

제16조의7(산업재산권 사용에 관한 특례)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제16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하거나 겸직을 승인받은 교육공무원 또는 연구원에게 직무발명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휴직·겸직 이후 완성한 직무발명에 대하여는 해당 교육공무원 또는 연구원이 희망할 경우 정당한 대가에 대한 상호 합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3.3.22.>

②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연구개발 경비를 지원하여 획득한 성과로 얻어지는 발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3.3.22.>

[전문개정 2007.8.3.]

제3절 입지 공급의 원활화 <개정 2007.8.3.>

제17조 삭제 <2006.3.3.>

제17조의2(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유한 교지나 부지의 일정 지역에 대하여 창업자·벤처기업 등의 생산시설 및 그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때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집적지역개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역의 지정을 요청받으면 제17조의3 각 호의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하여 집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할 때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면 집적지역이 속하는 특별시장·광역시·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17조의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나 부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지정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전문개정 2007.8.3.]

제17조의4(집적지역에 대한 특례 등) ① 집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지역 중 보전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② 집적지역에서 창업자나 벤처기업은 「건축법」 제19조제1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만을 말한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0.1.27.>

③ 집적지역 중 지정 면적이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면적 이상이고 도시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본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집적지역의 관리권자(「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를 말한다)가 된다.

⑤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집적지역의 관리기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이 된다.

⑥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국유재산법」 제18조와 제2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와 제20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창업자·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집적지역에 건물(공장용 건축물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집적지역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갱신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간이 끝나면 그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물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기부하거나 교지나 부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9.1.30.>

⑦ 제6항에 따른 임대료와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집적지역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⑨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집적지역의 창업자나 벤처기업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7.>

[전문개정 2007.8.3.]

제17조의5(집적지역의 운영 지침) 중소기업청장은 집적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17조의6(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중소기업청장은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7조의3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전문개정 2007.8.3.]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3.21., 2009.1.30.>

1.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



- 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일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 면적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 ③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과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07.8.3.]

제18조의2(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속 기관의 장(제4호의 경우에는 실험실공장을 설치하게 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21., 2010.1.27., 2012.1.26., 2015.5.18.>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교원 및 학생
 2. 국공립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
 3. 과학이나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4. 벤처기업의 창업자
- ② 제1항에 따라 실험실공장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5.5.18.>
- ③ 실험실공장은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물 등의 건축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 ④ 실험실공장의 총면적(실험실공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은 해당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물 등의 건축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18.>
-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실험실공장에 대한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 ⑥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설치한 자가 퇴직(졸업)하더라도 퇴직(졸업)일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험실공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5.5.18.>
- ⑦ 실험실공장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 [전문개정 2007.8.3.]

제18조의3(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특례) ①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창업보육센터 운영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10.1.27., 2012.1.26.>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창업보육센터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센터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로부터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③ 대학이나 연구기관 안에 설치·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 제1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설군으로 본다. <개정 2008.3.21.>

[전문개정 2007.8.3.]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촉진지구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 달성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④ 촉진지구의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① 중소기업청장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④ 촉진지구의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 2016.9.30.] 제18조의5

- 제19조(국공유 재산의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가격, 임대료, 임대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인 부동산을 벤처기업에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탁업자에 신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부동산의 신탁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2009.1.30., 2013.3.22.>
- ④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인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및 제20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국공유 토지나 대학 교지의 일부를 임대하여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해당 시설물의 종류·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시설물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토지 또는 교지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되돌려 주는 것을 임대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 ⑤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축조한 시설물을 임대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收益)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 [전문개정 2007.8.3.]

- 제20조(시설비용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집적지역의 조성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7.8.3.]

- 제21조(건축금지 등에 대한 특례)** ① 삭제 <2006.3.3.>
-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지역(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는 「건축법」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이나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2008.3.21., 2012.1.26.>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을 받으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제목개정 2007.8.3.]

제22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등)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1998.9.23., 1999.2.5., 2002.1.26., 2002.12.30., 2005.7.21., 2006.3.3., 2007.4.11., 2007.8.3., 2008.3.28.>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삭제 <2007.8.3.>
3.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② 삭제 <2006.3.3.>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건축하려는 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미술장식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8.3.>

[제목개정 2007.8.3.]

제3장 삭제 <2007.8.3.>

제23조 삭제 <2007.8.3.>

제4장 보칙 <개정 2007.8.3.>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1. 제6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행위
2. 제9조에 따라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이 해당 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행위
3. 삭제 <2010.1.27.>
4. 제15조 및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식교환 등의 행위
5. 제16조의3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행위
6. 제16조의5에 따라 사원을 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하여 설립한 행위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였던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



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8.3.]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으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2.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 : 2016.9.30.] 제25조

제25조의2(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2. 제2조의2의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휴업·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대표자·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流用)하거나 은닉(隱匿)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26조(보고 등) ①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한국벤처투자조합 또는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따른 개인에 대하여 업무 운영상황에 대한 확인 및 검사[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따른 개인에 대한 확인 및 검사는 제외한다]를

실시하거나 투자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5.18.〉

② 중소기업청장은 분기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 운영상황에 대한 확인 및 검사(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에 대한 확인 및 검사는 제외한다)를 실시하거나 투자실적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④ 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하여금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실적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 출입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입주 현황과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실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중소기업청장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8조의2에 따른 교원이나 연구원의 휴직·겸임 및 겸직허가 실적, 실험실공장 설치승인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⑧ 중소기업청장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제11조의2제4항 각 호에 관한 자료나 전문회사의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8.3.]

제28조(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① 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5.5.18.〉

1.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4조의3제4항에 따른 결성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4. 제4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한 경우
5.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6조제1항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제1항제2호·제4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1. 경고
2. 주의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1. 해임요구
2. 경고
3. 주의

[전문개정 2007.8.3.]

[제목개정 2015.5.18.]

제28조(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① 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5.5.18., 2016.5.29.〉

1.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4조의3제5항에 따른 결성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4. 제4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한 경우
5. 제4조의4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제26조제1항에 따른 확인 및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7. 제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조합결성 목적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제1항제2호·제4호·제5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2016.5.29.〉

1. 경고
2. 주의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5.18.〉

1. 해임요구
2. 경고
3. 주의

④ 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제1항의 위반사항에 해당하고 해당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경우 금융위원회에 해당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전문개정 2007.8.3.]

[제목개정 2015.5.18.]

[시행일 : 2016.8.30.] 제28조

제29조(청문)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1. 제13조의3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취소
2. 제18조의4에 따른 촉진지구의 지정해제
3. 제11조의7에 따른 전문회사의 등록취소
4. 제17조의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5. 제15조의14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전문개정 2007.8.3.]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아닌 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7.8.3.]

제30조의2(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와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 및 확인의 취소 업무에 종사하는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

제30조의3(불복 절차)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이나 확인의 취소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기업의 확인·확인취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8.3.]

제31조(다른 법률의 준용) 한국벤처투자조합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투자조합”을 “한국벤처투자조합”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13조의3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취소 사유 : 2015년 1월 1일
2. 제17조의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 : 2015년 1월 1일
3. 제28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 : 2015년 1월 1일
4.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유 :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5.5.18.]

제5장 벌칙 <신설 2004.12.31.>

제3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5.18.>

1. 제4조의4제2항·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13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0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4. 제31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결산서를 제출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③ 삭제 <2009.1.30.>
 - ④ 삭제 <2009.1.30.>
 - ⑤ 삭제 <2009.1.30.>
- [전문개정 2007.8.3.]

부칙<제14271호, 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는”을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의8제4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5.12.30.] [대통령령 제26804호, 2015.12.30., 타법개정]



중소기업청(벤처투자과) 042-481-4487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 042-481-4494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09.11.20., 2010.11.15., 2011.6.24., 2014.3.24.>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자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5.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는 자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1.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1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1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1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8.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 나.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 다.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 마.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 20. 그 밖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8.11.4.]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09.11.20., 2010.11.15., 2011.6.24., 2014.3.24., 2016.5.31.>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자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5.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는 자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1.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1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1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16.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8.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 나.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 다.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 마.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20. 그 밖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8.11.4.]

[시행일 : 2016.9.30.] 제2조

제2조의2 삭제 <2006.6.2.>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4.6.30.>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29., 2010.11.15., 2015.1.6., 2015.10.23.>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2의2. 삭제 <2014.12.30.>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6.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③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서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개인을 말한다. <신설 2014.6.30., 2015.11.1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투자금액(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억원 이상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 1) 벤처기업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기업
 - 나. 인수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창업자(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
 - 나.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다.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의 연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사람
 -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투자심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 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2)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
 -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마.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바.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
 - 사.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공인회계사
 - 아.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 자.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변리사
 - 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 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된 감정평가사
 - 타.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
 - 파. 그 밖에 교육과정 이수 또는 투자 관련 경력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 ④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자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따른 개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방법 및 제출자료의 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6.30.>
- ⑤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30.>
1.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2.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 ⑥ 제5항에 따른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2.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기관의 장이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 ⑦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09.8.18., 2014.6.30.>
1. 기술신용보증기금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 ⑧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성 평가기준은 제품경쟁력, 사업추진 능력, 시장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 ⑨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4.6.30.>

⑩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창업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는 제1호의 기준을 4천만원으로 하고,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증 또는 대출금액(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20., 2014.6.30.>

1.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2.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⑪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른 기술성 평가기준은 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활용도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전문개정 2008.11.4.]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8)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인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4.6.30.>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29., 2010.11.15., 2015.1.6., 2015.10.23.>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의2. 삭제 <2014.12.30.>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6.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③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서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개인을 말한다. <신설 2014.6.30., 2015.11.18.>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투자금액(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 해당 조합의 투자금액 중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억원 이상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 1) 벤처기업
 -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기업
 - 나. 인수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닐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창업자(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

나.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등기된 사람에 한정한다)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벤처기업의 창업자이거나 창업자이었던 사람으로서 재직 당시 해당 벤처기업의 연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적이 있었던 사람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투자심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 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2)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유한회사
-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마.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바.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변호사

사.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아.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세무사

자. 「변리사법」 제5조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등록한 변리사

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된 감정평가사

타.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한다)를 소지한 사람

파. 그 밖에 교육과정 이수 또는 투자 관련 경력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④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자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따른 개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 또는 개인투자자에게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방법 및 제출자료의 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6.30.>

⑤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30.>

1.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2.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⑥ 제5항에 따른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2.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기관의 장이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⑦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09.8.18., 2014.6.30., 2016.5.31.>

1. 기술보증기금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 ⑧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성 평가기준은 제품경쟁력, 사업추진 능력, 시장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 ⑨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4.6.30.>
 - ⑩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창업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는 제1호의 기준을 4천만원으로 하고,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하며, 보증 또는 대출금액(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20., 2014.6.30.>
 1.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2.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 ⑪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른 기술성 평가기준은 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활용도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6.30.>
- [전문개정 2008.11.4.]

[시행일 : 2016.9.30.] 제2조의3

제2조의4(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1.18.]

제3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의 2의 기금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②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 주체(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로 하여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나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3조의2(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의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모태조합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에 변동이 있으면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투자관리전문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3조의3 삭제 <2009.4.30.>

제3조의4(모태조합의 존속기간) 법 제4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3조의5(모태조합의 관리 등) ① 법 제4조의2제9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해의 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모태조합 운용지침안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모태조합에 출자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4.30., 2014.3.24.>

1. 모태조합 자산의 배분 기준
2. 법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한도
3.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한도
4. 그 밖에 모태조합의 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사항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의 모태조합 운용실적을 4월 3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3조의6(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결성계획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座)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의 모집계획
4.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5.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약력 및 투자경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5.11.18.>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③ 삭제 <2014.3.24.>

④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1.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명 이하일 것
 4.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을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조합원총회의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규약
 2. 조합원 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과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 ⑥ 업무집행조합원은 제5항의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면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변경신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해당 조합의 존속기간
 5.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 [전문개정 2008.11.4.]

제3조의7 삭제 <2007.4.26.>

- 제3조의8(투자수익의 산정방식 등)** ① 법 제4조의3제7항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투자수익은 한국벤처투자조합 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운영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4.20.>
- ② 법 제4조의3제7항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 발생에 이바지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 [전문개정 2008.11.4.]

- 제3조의9(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 ① 법 제4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5.6., 2014.3.24., 2015.10.23.>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② 법 제4조의4제2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해당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직접 설립한 것만 해당한다)
 2. 투자상담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



③ 법 제4조의4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5.6., 2014.6.30., 2015.10.23., 2015.11.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하는 행위

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이나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업무집행조합원이 해당 한국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만 해당한다)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 2)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가) 모태조합

나)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

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마)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협은행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아)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차)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2.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조합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한국벤처투자조합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다. 「여성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라.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마.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3.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증개하는 행위

4.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이나 자산 매각 등 투자에 따르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4.6.30.>

1. 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투자하거나 그가 발행한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증권”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행위
 2. 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행위(현금·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고,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전문개정 2008.11.4.]

제3조의10(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① 법 제4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20.>

1.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가 생겨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조합 총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조합원이 해산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의 지분의 3분의 2 이상과 조합 총지분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서에 적고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새로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3조의6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4조(기술평가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09.8.18., 2009.12.24., 2011.10.28., 2013.12.11.>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기술신용보증기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한다)
5. 국가기술표준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문개정 2008.11.4.]



제4조(기술평가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09.8.18., 2009.12.24., 2011.10.28., 2013.12.11., 2016.5.31.>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기술보증기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한다)
 5. 국가기술표준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전문개정 2008.11.4.]

[시행일 : 2016.9.30.] 제4조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등록하려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0.5.4., 2013.3.23.>
1. 정관
 2. 사업계획서(출자비율, 출자내용, 보유인력 및 보유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임원의 이력서
- ③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
 4. 보유인력
 5. 보유시설
 6.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주주
- ④ 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경영 분야나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상근(常勤) 전문인력
 2. 전문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
- [전문개정 2008.11.4.]

제4조의3(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란 전문회사와 해당 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 간의 거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다만, 인수·합병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거래행위는 제외한다.

1. 채무 보증
2. 담보 제공

② 법 제11조의6제3항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
2.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해당 전문회사에 대한 재투자
4.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이바지한 인력과 부서에 대한 보상금

[전문개정 2008.11.4.]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과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투자 목적과 출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신설 2015.11.18.>

1. 사업내용에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에 대한 투자 또는 이에 투자하는 조합에 대한 출자를 포함하고 있을 것
2. 출자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②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6.30., 2015.11.18.>

1. 출자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조합원 수가 49명 이하일 것
4.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조합원 모집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④ 제3항에 따른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총회 개최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1.18.>

1. 조합 규약
2. 조합원 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과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⑤ 중소기업청장은 제4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28., 2015.11.18.>

1. 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등록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등록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5.11.18.>



⑦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이 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5.11.18.>

1. 조합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2.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및 주소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해당 조합의 존속기간

[전문개정 2008.11.4.]

[제목개정 2015.11.18.]

제5조의2(해산사유)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3.24.>

1.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조합원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조합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생겨 중소기업청장이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총지분 각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11.4.]

제5조의3(조합의 운영)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0.26.]

제6조(조세감면을 위한 투자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투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7년 이내인 기업에 대한 투자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개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청장에게 투자실적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투자실적의 확인 요청을 받으면 그 투자실적을 확인하여 투자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투자실적을 확인받은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그 투자지분을 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회수하거나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을 말한다. 이하 제6조의2제3항에서 같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실적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6조의2(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①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15조 또는 법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의 확인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그 주식교환이 법 제15조 또는 법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에 해당하면 주식교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을 받은 자가 주식교환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6조의3(공인평가기관) 법 제1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13.8.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가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기술신용보증기금

[전문개정 2008.11.4.]

제6조의3(공인평가기관) 법 제1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13.8.27., 2016.5.3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가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기술보증기금

[전문개정 2008.11.4.]

[시행일 : 2016.9.30.] 제6조의3

제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1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1.20., 2014.3.24.>

1. 법인일 것
2. 업무 내용에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로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본조신설 2009.4.30.]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의14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30.]

제9조 삭제 <2001.11.22.>

제10조 삭제 <2001.11.22.>

제11조 삭제 <2001.11.22.>

제11조의2(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과학기술기초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개정 2008.11.4.]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이상이어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1.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
 - 나. 해당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2.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12.4.10.>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4.6.30.>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5.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7.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10.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대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 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11.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12.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
13.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2.3., 2012.4.10.>

[전문개정 2008.11.4.]

제11조의4(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① 법 17조의2제2항에서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2. 해당 기관이 보유한 학교 부지나 부지의 연면적
3.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11조의5(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법 제17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11조의6(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4.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 ②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 ③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4.20.>

[전문개정 2008.11.4.]

제11조의7(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① 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4.26.]

[중전의 제11조의7은 제11조의11로 이동 <2007.4.26.>]

제11조의8(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15.11.18.>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계속 입주하고 있는 기업
2.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5.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시설
 2. 공용회의실, 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3. 휴게실,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 [전문개정 2008.11.4.]

제11조의9(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11조의8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1.4.]

제11조의10(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연구실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설치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4.20.>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4.20., 2012.7.26.>

1.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

[전문개정 2008.11.4.]

제11조의11(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20.]

[종전 제11조의11은 제11조의12로 이동 <2010.4.20.>]

제11조의12(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①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5.26.>

1. 해당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
3. 교통·통신·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②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요청서와 촉진지구 육성계획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의 명칭
 2. 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촉진지구 육성계획의 개요
-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촉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11조의11에서 이동 <2010.4.20.>]

제12조(국유재산의 매각)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13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로 나누어 낼 수 있다. <개정 2009.7.27.>

②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두 해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 임대료의 100분의 10 이상 오르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09.7.27.>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 이하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1.4.]

제14조(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도시형공장 중 공장건축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설치하려는 공장의 적재하중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적재하중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전문개정 2008.11.4.]

제15조 삭제 <2008.2.29.>

제16조 삭제 <2008.2.29.>

제17조 삭제 <2008.2.29.>

제18조 삭제 <2008.2.29.>

제18조의2 삭제 <2008.2.29.>

제18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 법 제25조제1항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18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 법 제25조제1항에서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5.31.>

1. 기술보증기금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

[전문개정 2008.11.4.]

[시행일 : 2016.9.30.] 제18조의3

제18조의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20.]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면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그 벤처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4.6.30.>

1. 일반정보 : 상호, 업종, 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요 제품 및 그 변경사항
2. 재무정보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3. 투자 관련 정보 :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같은 목 (1)부터 (8)까지 규정된 자료부터 투자받은 금액, 투자시기 및 그 변경사항
4. 보증 또는 대출 관련 정보 :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규정된 자료부터 보증이나 대출을 받은 금액(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한다), 그 시기 및 그 변경사항
5. 벤처기업확인서 : 발급일, 유효기간 및 그 변경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18조의6(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3.24.>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업의 대표자·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의 확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1.4.]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1.18.>

1.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2.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투자실적확인서의 발급 및 투자실적 등의 통보와 자료 제출
3.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4.6.30.>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실적 보고에 한정한다)의 접수 및 투자실적 확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 ③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회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4.6.30.>

1. 제2조의3제4항에 따라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따른 개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자료의 접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따른 개인의 투자실적 보고에 한정한다]의 접수 및 투자실적 확인에 관한 사항

④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보고내용 확인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협회(이하 “벤처기업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15.11.18.>

[전문개정 2008.11.4.]

제20조(권한 위탁 등에 따른 조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제19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협회에 제19조제4항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③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벤처기업협회는 제19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협회 가입을 강제하거나 그 밖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1.18.>

[전문개정 2008.11.4.]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기업청장(법 제2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8)에 따른 개인의 투자실적 보고에 한정한다]를 받는 경우 투자실적 확인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3.1.16.]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제2조의3에 따른 벤처기업의 요건 : 2014년 1월 1일
2. 제3조의6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절차, 신고 요건 및 절차 : 2014년 1월 1일
- 2의2. 제3조의10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요건 : 2016년 1월 1일
3. 제4조의2 및 별표 2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대상, 등록요건 및 절차 : 2014년 1월 1일
- 3의2. 제4조의3에 따른 전문회사의 행위제한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배당금 등의 사용용도 제한 : 2016년 1월 1일
4. 제5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과 절차 : 2014년 1월 1일
5.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및 절차 : 2014년 1월 1일
6. 제11조의4제1항에 따른 법 제17조의2제2항의 집적지역개발계획에 포함되는 사항 : 2014년 1월 1일
- 6의2. 제11조의5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 2016년 1월 1일
- 6의3. 제11조의6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집적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공장의 범위 및 그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2016년 1월 1일
7. 제11조의8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 2014년 1월 1일
8. 제11조의10에 따른 실험실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 신청 절차 :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21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11.4.]

부칙<제26804호, 2015.12.30.>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5.9.28.] [법률 제13231호, 2015.3.27.,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지역연구진흥과) 02-2110-2741

제1장 총칙 <개정 2012.1.26.>

제1조(목적)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사업화”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
 3. “첨단기술기업”이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분야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4.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5.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립연구기관
 -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6. “연구소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하여 특구 안에 설립된 기업으로서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등록된 기업을 말한다.
 7.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9. “외국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한 연구기관을 말한다.
 10. “입주기관”이란 제3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은 자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전문개정 2012.1.26.]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이 법에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규정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27.>

②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27.>

[전문개정 2012.1.26.]

[제목개정 2015.3.27.]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제2장 특구의 지정 등 <개정 2012.1.26.>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청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3.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②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집적(集積)·연계되어 있을 것
2. 제1호의 기관이 산출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벤처기업의 창업에 하기에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3.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4.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되어 있을 것

③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 중 제2항의 지정요건에 해당하여 특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시·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과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에 필요한 서류로서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지정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절차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 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5조(특구의 지정해제)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1. 특구 지정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해당 특구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이나 특구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상당한 기간 내에 특구를 개발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4. 첨단기술기업의 창업 및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5.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를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8.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9.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
10. 투자의 확대 및 재원(財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11. 특구의 체계적인 개발에 대한 사항
12. 특구의 산업 및 기술의 특성화 전략에 관한 사항
13. 특구 및 다른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한 특구육성종합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전문개정 2012.1.26.]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구별로 특구의 개발에 관한 특구개발계획(이하 “특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의 명칭·위치
2. 대상 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특구의 개발 필요성
4. 대상 지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
6.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7. 재원조달방법
8.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9. 인구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 계획
10. 교통처리계획
11. 대학·연구소 및 기업 유치계획
12. 보건의료·교육·복지 시설 설치계획
13. 환경보전계획
14.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15.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구개발계획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업 단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특구개발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특구개발계획을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6.]

제6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의 개발 시 협의) 특구 내 특구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인가·지정·승인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미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인·허가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6.]

제7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 ① 특구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1. 특구에 관한 주요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특구의 지정,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특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된다. <개정 2013.3.23.>
- ④ 당연직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 ⑤ 위촉위원은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⑦ 삭제 <2013.3.23.>
- [전문개정 2012.1.26.]

제7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특구별로 종합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특구별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공개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제3장 연구개발 및 사업화 강화

제8조(특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기반 구축) 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특구에서 이루어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특구의 대학·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취득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특구의 대학·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거래 시장과의 연계체계 등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의 대학·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한 성공 사례를 발굴하여 포상을 하고, 법률·회계·엔지니어링 및 경영 자문 등 기업경영 활동과 관련한 서비스업을 육성하는 등 특구의 과학기술혁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제9조(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의 국내외 특허권(「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포함한다)을 보유할 것
2. 제1호에 따른 특허권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것
3. 특구에 입주하고 있을 것
4.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 및 제2호에 따른 생산·판매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9조의2(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첨단기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휴업·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12.30.]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회사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내용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③ 연구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할 것
2.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할 것



3. 특구 안에 설립할 것

④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한 공공연구기관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을 연구개발 활동이나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再出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9조의4(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연구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보유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3. 연구소기업의 영업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9조의3제3항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휴업, 부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제9조의5(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휴직 및 겸직 허용 등) ① 공무원이 아닌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한 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3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연구소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③ 제1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이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부터 해당 공공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12.30.]

[제목개정 2014.5.28.]

제10조(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연구소·기업 간 교류·협력 체계의 구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내외 기업, 국내외 대학 또는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2. 특구의 대학에 대한 창업과정의 개설 및 운영 지원
3.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및 경영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4. 연구 및 기술 인력의 교류 활성화 및 산업현장 교육 내실화(內實化) 지원
5. 연구장비 운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6.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전문 연구개발 인력 지원
7.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8.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9.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10. 연구인력, 연구과제 및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11. 그 밖에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전문개정 2012.1.26.]

제10조(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연구소·기업 간 교류·협력 체계의 구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5.29.>

1. 국내의 기업, 국내의 대학 또는 국내의 연구기관과의 연계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2. 특구의 대학에 대한 창업과정의 개설 및 운영 지원
3. 연구개발 지원 전문인력 및 경영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지원
4. 연구 및 기술 인력의 교류 활성화 및 산업현장 교육 내실화(內實化) 지원
5. 연구장비 운용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6.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전문 연구개발 인력 지원
7.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우대 추천
8. 이공계 석사 및 박사 연구인력 고용보조금의 우선 지원
9.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 지원
10. 연구인력, 연구과제 및 연구장비 등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11. 그 밖에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지원

[전문개정 2012.1.26.]

[시행일 : 2016.11.30.] 제10조

제11조(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 안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장래 수요의 예측에 따른 전문분야별 유연한 연구조직의 구축
2. 정부출연연구기관 사이의 인력 교류 활성화
3.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학습과 재교육시스템의 구축
4.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그 소속 연구원의 평가 및 보상시스템의 개선

[전문개정 2012.1.26.]

제12조(특구육성사업의 추진)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 및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사업(이하 “특구육성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하고, 매년 특구육성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구에 입주한 대학·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특구육성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특구육성사업의 실시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13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제14조(세제 지원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2.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6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5.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7.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전문개정 2012.1.26.]

제15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과 그 밖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으로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에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제16조(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특구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제17조(투자조합에의 참여)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은 특구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기업 또는 회사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5.3.11.>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5. 첨단기술기업
6. 연구소기업
7.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전문개정 2012.1.26.]

제18조(핵심분야별 전문 연구생산 집적지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전문 기술분야별 연구생산 집적지(集積地)를 조성하고 그 상호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구육성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연구생산 집적지의 육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생산 집적지별로 각종 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통합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제4장 특구 운영 성과의 확산 <개정 2012.1.26.>

제19조(특구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과 시행)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특구의 주요 운영 성과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특구 외의 지역으로 확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1. 특구 안과 밖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과의 공동연구 활성화
2. 연구개발 성과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3.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 교류 및 협력 활성화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1.26.]

제20조(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 체계의 구축) ① 진흥재단은 특구의 주요 기술·장비·인력 및 관련 시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산화하여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특구의 기술 및 시장 정보를 전산화할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연계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21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구성 및 운영)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 운영 성과의 전국적인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구 안과 밖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이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교류 협력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모임에 대한 구체적 지원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5장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생활 여건 개선 <개정 2012.1.26.>

제22조(외국인학교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외국인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있는 국내대학이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할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제23조(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의 외국인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인 진료병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 진료병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23조의2 삭제 <2015.2.3.>

제24조(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세제·자금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하 “외국투자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투자기관을 특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관에 임대하는 부지의 조성, 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하여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④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또는 대부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25조(옴부즈만의 설치) ① 특구에 입주한 외국투자기관의 경영 및 외국인의 생활 애로 사항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흥재단에 옴부즈만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은 외국인투자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③ 그 밖에 옴부즈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6장 특구개발사업의 시행

제26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특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13.3.23.>

1.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3. 진흥재단
4.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 부지를 조성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특구를 개발할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특구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특구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지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제26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 지정이나 제27조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제26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27조제1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 미래창조과학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1.26.]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 시행기간 및 재원 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진흥재단과 협의(진흥재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제30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거나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20일(제29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2.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2.3.>

④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2.3.>

[전문개정 2012.1.26.]

제28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① 시·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되는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29조(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5.28., 2015.8.11.>

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

- 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신고
 6.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9.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1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합 설립의 인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과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2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3.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24.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 26.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2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 2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39조의7에 따른 재생시행계획의 승인
- ② 시·도지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그 실시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의 다음 날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26.]

제29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 ① 시·도지사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고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제30조(특구개발사업의 착수) ① 특구개발사업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실시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전문개정 2012.1.26.]

제30조의2(경제자유구역 등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특구에 포함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해당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1.26.]

제31조(토지수용) ① 사업시행자(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수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32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가 특구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쳤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협의(진흥재단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에 따른 그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32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특구의 산업·유통 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1.26.]

제3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특구에 포함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6.]

제33조의2(비용의 부담) ①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과 그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7장 특구의 관리



제34조(특구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구관리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 및 협의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구 관리의 기본방향
2. 특구의 위치 및 면적
3. 특구 안의 토지의 용도 구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4. 용수, 에너지, 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특구의 기반시설의 설치
5. 녹지 및 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의 사본과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제35조(토지의 용도 구분 등) ① 제3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주거구역 : 특구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
2. 상업구역 :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3. 녹지구역 : 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
4.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 교육·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 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 활용 등을 통하여 교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5. 산업시설구역 :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구역 및 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7.>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도시·군계획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제36조(건축행위의 규제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역에 대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특구에 건축되는 건축물이 특구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제37조(입주승인) ①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

래창조과학부장관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주승인 사항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은 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26.]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①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수·임차·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거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부지의 취득가격

나.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38조(부지의 양도제한 등) ① 입주기관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양수·임차·사용대차 또는 전차(轉借)하거나 건축물등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받으려는 자는 미리 제37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의 양도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19.>

1. 부지에 대한 양도가격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가. 부지의 취득가격

나. 부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 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2.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취득가격·취득일 등 양도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6.]

[시행일 : 2016.9.1.] 제38조

제39조(경매 등에 따른 건축물등의 취득 등) 경매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관으로부터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건축물등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37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40조(입주승인의 취소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입주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입주승인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입주기관이 제37조를 위반하여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경우
5.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등을 양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은 그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수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제41조(건축물등의 양도명령)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관이 소유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의 건축물등을 양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입주기관이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42조(건축 허가 등의 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서의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등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7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입주승인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이 취소된 입주기관

[전문개정 2012.1.26.]

제43조(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① 특구가 지정된 후 특구개발계획이 고시되면 그 내용에 따라 「산업입

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구는 진흥재단이 관리한다. 다만, 진흥재단은 특구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한 관리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의 국가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
- ③ 진흥재단은 특구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업무처리규정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④ 산업시설구역의 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⑤ 제2항 각 호의 지역을 관리하는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과 특구의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44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관한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제45조(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특구 안에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전문개정 2012.1.26.]

제45조(특구의 부동산 가격안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도지사는 특구 안에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전문개정 2012.1.26.]

[시행일 : 2016.8.12.] 제45조

제8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개정 2012.1.26.>

제46조(설립) ①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을 설립한다.

- ② 진흥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47조(정관) ① 진흥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진흥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제48조(사업) ① 진흥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3.11.>

1. 특구의 개발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토지·건물, 연구개발 관련 시설 및 기자재에 대한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 나. 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및 유통 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
 - 다. 학교와 병원 등 특구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교육·보건의료·문화·체육·복지 시설의 유지·설치 및 관리·운영
 - 라. 연구개발 성과물의 전시·홍보, 과학기술 인식 향상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
 - 마. 특구관리계획의 수립 지원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 바.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과 산업시설구역에서의 매각, 임대, 그 사후관리 및 입주에 관한 업무

- 사. 특구 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 아. 환경친화적 특구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 자. 그 밖에 입주기업체·입주기관의 활동지원 등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 2. 특구의 연구개발과 그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특구육성사업의 추진에 대한 지원
 - 나. 대학·연구소 및 기업 사이의 교류 증진
 - 다.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지원
 - 라. 교수·연구원 등에 대한 창업 지원
 - 마. 사업화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 바.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 교육
 - 사. 기업 등에 대한 경영 지원 서비스 제공
 - 아. 제17조 각 호의 기업 또는 회사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투자조합에의 참여
- 3. 특구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투자유치사업
 -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안내·홍보·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 대행 등 종합적 지원
 - 다. 그 밖에 내국인과 외국인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수익사업
- 5.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 ② 진흥재단은 특구의 특성화·차별화된 발전을 지원하고 특구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구별로 지원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48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진흥재단은 특구 내 입주기관이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6.]

제49조(임원) ① 진흥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③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임원 가운데 결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거나 선임하되, 그 임기는 임명 또는 선임된 날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5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진흥재단을 대표하고 진흥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진흥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51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가운데 진흥재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제52조(대표권의 제한) 진흥재단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서로 반대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진흥재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재단을 대표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5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5.28.>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전문개정 2012.1.26.]

제54조(이사회) ① 진흥재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진흥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제55조(직원의 임면) 진흥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5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진흥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26.]

제57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진흥재단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제58조(자금의 조달)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12.1.26.]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제59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는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흥재단에 국유재산(산업재산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무상 대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의 중앙관서의 장과 진흥재단의 계약으로 정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임대할 용지 매입비의 용자나 그 밖에 특구육성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제60조(예산서 등의 승인) 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제61조(결산보고) 진흥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제62조(사업연도) 진흥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6.]

제63조(회계규정 등) 진흥재단은 그 조직과 예산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제64조(자금의 차입 등) ①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제65조(사업에 대한 출자 등)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6.]

제66조(채권의 발행 등) ①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른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정부는 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진흥재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기일부터 기산(起算)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채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67조(지도와 감독)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진흥재단을 지도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진흥재단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68조(남은 재산의 귀속) 진흥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69조(「민법」의 준용) 진흥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9장 보칙 <개정 2012.1.26.>

제70조(이행강제금)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양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 이내에 그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양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할 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양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양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양도명령을 받은 자가 양도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1.26.]

제71조(국회에 대한 보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특구의 추진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시·도지사과 협의하여 매년 정기국회의 개최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제72조(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특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제7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진흥재단의 임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1.26.]

제10장 벌칙 <개정 2012.1.26.>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7조(제38조제2항 및 제39조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입주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한 자 또는 승인받지 아니하고 입주승인사항을 변경한 자
2. 제56조를 위반하여 진흥재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전문개정 2012.1.26.]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제1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등을 양도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한 입주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5.2.3.>

[전문개정 2012.1.26.]



부칙<제13482호, 2015.8.1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9호 중 “같은 법 제39조의9”를 “같은 법 제39조의7”로 한다.

② 생략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5.9.28.] [대통령령 제26454호, 2015.8.3., 일부개정]



미래창조과학부(지역연구진흥과) 02-2110-2741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7.26.]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원형지”란 입주기관이 소유하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토지 중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상태로 보전할 필요가 있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토지를 말한다.
2. “시험공장”이란 입주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험제품 생산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된 시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5항에 따른 실험실공장

[전문개정 2012.7.26.]

제3조(공공연구기관의 범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전문개정 2012.7.26.]

제3조의2 삭제 <2010.3.26.>

제4조 삭제 <2012.7.26.>

제5조(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특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있을 것
 - 가.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분원(分院)을 포함한다]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사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이공계 학부를 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대학”이라 한다) 3개 이상
2. 대학·연구소 및 기업 상호간 협의기구가 있을 것
3. 해당 지역 또는 인근에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단지가 있을 것



4. 연구개발투자비 및 특허등록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을 것
 5. 교통·통신·기반시설 및 생활 여건 등에서 외국과의 교류 협력이 쉬울 것
 6. 해당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전문개정 2012.7.26.]

제6조(특구의 지정고시 등) ① 법 제4조제7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지정 목적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4.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5. 구역 안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6.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해제되는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특구의 지정해제 사유
3. 관련 도서의 열람방법
4. 구역위치, 구역경계, 지적 및 임야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5. 구역 안 토지의 지번·지목 현황

[전문개정 2012.7.26.]

제7조(특구육성종합계획)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이하 “특구육성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7.26.]

제7조의2(특구개발계획) ① 법 제6조의2제2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이하 “특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기간
2. 특구개발사업의 대상 지역 간 연계 발전방안
3.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4. 도시경관계획
5. 공동구(共同溝) 등 지하 매설물 계획
6. 주요 유치시설과 그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7. 특구 개발에 필요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등 기반시설계획의 경제성 검토

② 법 제6조의2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4.>

1. 특구개발사업 면적 또는 토지이용계획 용도별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거나 3만제곱미터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주요 기반시설계획 시설별 규모의 5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3. 수용예정 인구수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4.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하여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세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를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7.26.]

제7조의3(특구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 시의 협의 예외) 법 제6조의3 단서에서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개발에 대한 인·허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승인 등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대상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2.7.26.]

제8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되는 사람이 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 기획재정부차관
2. 국방부차관
3. 행정자치부차관
4. 농림축산식품부차관
5. 산업통상자원부차관
6. 보건복지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고용노동부차관
9. 국토교통부차관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연구개발·환경·외국인투자·기술사업화·기업경영·도시정책 등 특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전문개정 2012.7.26.]

제9조(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사무기구(이하 “사무기구”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7.26.]

제10조(의견청취)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26.]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7.26.]

제12조(사무기구의 업무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사무기구의 업무수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임원·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특구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기획
2. 특구에 관한 법제(法制)의 운영
3. 특구육성종합계획의 협의
4. 위원회 의안 작성 등 위원회 운영의 보좌
5. 특구에 관한 자료의 조사·홍보 및 국제 협력
6. 특구의 운영 및 육성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7. 특구의 생활 여건 개선에 관한 제도 마련

[전문개정 2012.7.26.]

[제목개정 2013.3.23.]

제12조의2(특구별 성과 평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특구별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특구별 종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사업 성과, 특구 구성원의 만족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특구발전에 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미래창조과학부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통보하고,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평가의 기준·절차, 종합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2.7.26.]

[중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2.7.26.>]

제12조의3(첨단기술기업의 지정요건)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분야”란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연간 총매출액은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매출액을 합한 것으로 하되, 기업 창업 후 2분기 이상이 지나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해서는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분기 매출액을 모두 합한 것으로 한다.

1. 연구개발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및 같은 표에 따른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을 말한다)가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연구·시험용 시설의 취득비용의 상한은 연간 총매출액의 3퍼센트로 한다.

2.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산·판매한 제품의 매출액이 연간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2.7.26.]

[제12조의2에서 이동, 중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4로 이동 <2012.7.26.>]

제12조의4(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에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미래창조과학부장은 제1항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업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하고, 첨단기술기업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7.26.]

[제12조의3에서 이동, 중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5로 이동 <2012.7.26.>]



제12조의5(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법 제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7.26.]

[제12조의4에서 이동 <2012.7.26.>]

제13조(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적합한 회사”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는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출자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및 노하우
2. 현금
3. 부동산
4. 연구시설 및 기자재
5. 그 밖에 양도 가능한 자산

③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려는 기관 또는 회사는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2. 보유 인력 및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주식 보유 비율 및 명세에 관한 서류
4. 사업계획서(사업 타당성 평가를 포함한다)

④ 법 제9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연구소기업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소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대표자
4.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 따른 주식 보유 비율

⑤ 법 제9조의3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소기업의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7.26.]

제14조(수익금 등의 사용) ① 공공연구기관은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연구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발생한 수익금과 잉여금(이하 “수익금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3.>

1.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2.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3.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4.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기여한 인력 및 부서에 대한 보상금
5. 기관운영경비

② 공공연구기관이 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에 참여한 인력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수익금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5.8.3.>

[전문개정 2010.3.26.]

제14조의2(연구소기업의 등록 취소) ① 법 제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보유 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란 법 제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회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당 연구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비율이 20퍼센트(등록된 연구소기업이 기술개발 투자를 위하여 자본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10퍼센트)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1.4.>

② 법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 보유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 비율이 제1항에 따른 비율 미만이 된 날부터 5년 동안 등록의 취소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③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11.4.>

[전문개정 2012.7.26.]

제15조(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 교류·협력 강화) 법 제10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대학·연구소 및 기업 간 공동연구개발
2. 대학 및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의 거래 촉진

[전문개정 2012.7.26.]

제16조(협약의 체결방법)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과제 요약서
3.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및 그 지급방법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7.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8.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9. 협약의 변경 및 해약
10.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11.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26.]



제17조(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3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7.26.]

제18조(국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등)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액에 1퍼센트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2.7.26.]

제1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특례 적용의 필요성
 2. 공동연구·기술개발에 참여하려는 사업자(이하 “참가사업자”라 한다)의 성명·주소(참가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말한다) 및 사업장 소재지
 3. 공동연구·기술개발의 내용 및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과의 관계
 4. 공동연구·기술개발을 하려는 기간
 5.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 영업보고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연구·기술개발의 협정서 사본
 3. 공동연구·기술개발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른 인가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전문개정 2012.7.26.]

제20조(기술분야별 연구모임의 지원)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술분야별 연구모임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연구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알선
 2. 국내외 기술정보의 보급
 3. 기술개발 및 개량에 관한 홍보
 4. 그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
- [전문개정 2012.7.26.]

제20조의2 삭제 <2015.8.3.>

제21조(옴부즈만의 운영 등) ① 법 제25조에 따른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의 애로사항에 대한 업무 지원
 2. 특구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 수집

3. 특구 안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정보 수집
 4. 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 ③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옴부즈만은 분기별로 애로사항의 처리실적을 분석하여 매 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2.7.26.]

제22조(사업시행자) ①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 등을 직접 개발하려는 자
 - 나. 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를 개발하여 일부는 특구개발사업에 적합한 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려는 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공시된 해당 연도의 시공능력 평가액이 특구개발사업의 연평균 사업비(보상비는 제외한다) 이상인 자
-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7.26.]

제23조(특구개발사업의 대행)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구개발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주소
2. 대행하려는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 위치 및 시행면적
3. 특구개발사업의 대행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
 - 가. 사업의 목적
 -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 다. 사업 시행기간
4. 자금 조달계획
5. 토지이용계획 및 위치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과 산업 및 연구 시설의 설치를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특구개발사업 중 그 신청인이 사용할 산업 및 연구 시설용지의 조성사업 등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일부를 특구에 입주할 자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특구개발사업의 대행자가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계약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6.]



제23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 법 제26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2.7.26.]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3.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

②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도지사”란 해당 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특구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사업시행자와 실시계획의 승인권자가 같은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地籍圖)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8.3.>

1. 위치도
2.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 설명서를 포함한다)
3. 사업비 및 자금 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5.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 및 보상계획에 관한 서류
7.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산출 명세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9. 특구개발사업대행계획서(해당 계획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도시·군관리계획(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1.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인 경우만 해당한다)
1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서류
13. 제4항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이 통보한 의견서

④ 제1항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요청받은 진흥재단은 해당 실시계획과 법 제34조에 따른 특구관리계획(이하 “특구관리계획”이라 한다)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5.8.3.>

⑥ 삭제 <2015.8.3.>

⑦ 제3항제7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및 대체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7.26.]

제25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도지사가 공보에 고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3.>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

[전문개정 2012.7.26.]

제25조의2(특구개발사업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특구개발사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특구개발사업협의회”라 한다)는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구개발사업협의회 회의에서 인·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특구개발사업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특구개발사업협의회 회의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26.]

제26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공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진흥재단과 협의한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 시행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법 제2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 산출 명세서를 포함한다)
 5. 신·구 지적대조도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제4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 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명세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제3항에 따라 진흥재단이 통보한 의견서
 - ③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진흥재단은 해당 준공검사가 실시계획과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7일 이내에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 일정을 정하여 준공검사 신청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사일 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참여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준공검사일 전날까지 참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준공검사를 한 후 특구개발사업이 법 제27조에 따라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준공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3.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 연월일
 5.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
- [전문개정 2012.7.26.]

제27조(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① 특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분양받은 자가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검사 전에 그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용 범위를 정하여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그 사용이 특구개발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26.]

제27조의2(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재투자하여야 하는 개발이익의 범위는 특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7.26.]

[중전 제27조의2는 제27조의3으로 이동 <2012.7.26.>]

제27조의3(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대상은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6.]

[제2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7조의3은 제27조의4로 이동 <2012.7.26.>]

제27조의4(비용의 보조) ①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특구 안의 용지매입비 또는 시설 등의 건설비
2. 그 밖에 위원회가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비용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7.26.]

[제27조의3에서 이동 <2012.7.26.>]

제28조(특구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특구의 위치 및 경계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착오 등으로 인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2. 용수(用水)·에너지·통신·교통·유통시설 등 기반시설의 면적·규모를 10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특구 안 토지 용도의 구분에 있어 착오 등으로 인한 토지 용도를 정정하는 경우
4. 원형지를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7.26.]

제29조(주거구역 및 산업시설구역의 세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구역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나눌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3.>

1. 주거구역 : 전용주거구역·일반주거구역 및 준주거구역
2. 산업시설구역

가. 산업육성구역 :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 및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산업지원구역 : 산업육성구역의 생산 및 연구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전문개정 2012.7.26.]

[제목개정 2015.8.3.]

제30조(건축행위 규제 등)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8.3.>

1. 전용주거구역 :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
2. 일반주거구역 : 별표 2에서 정하는 건축물
3. 준주거구역 : 별표 3에서 정하는 건축물
4. 상업구역 : 별표 4에서 정하는 건축물



- 5. 녹지구역 : 별표 5에서 정하는 건축물
- 6.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 별표 6에서 정하는 건축물
- 7. 산업육성구역 : 별표 7에서 정하는 건축물
- 8. 산업지원구역 : 별표 7의2에서 정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2012.7.26.]

제31조(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7.26.]

제32조(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입주승인 요건) 법 제37조에 따라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과학기술에 관한 연구 또는 교육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 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다. 대학
 - 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마. 국공립 연구기관
 -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 아. 과학기술분야의 관람 및 전시기관
 -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국기관
2. 연간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3.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 또는 그 창업 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7.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 증진 및 그 기관의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2.7.26.]

제33조(입주승인 신청 등) ① 법 제37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승인신청서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입주 목적에 관한 사항

2. 입주하려는 부지의 위치·총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입주승인 신청인의 연구개발계획 및 사업화계획의 타당성, 신청부지의 위치·면적의 적정성 및 설치하려는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주승인을 받을 당시의 입주 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구시설을 시험공장으로 하는 등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3. 부지 면적을 10분의 1 이상 또는 3천3백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4. 원형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5.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을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 변경하려는 경우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변경을 승인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7.26.]

제34조(부지의 양도 등)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의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려는 자는 건축물등 양도승인신청서에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38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부지 매입에 든 취득세와 그 밖의 각종 세금 및 공과금(양도인의 귀책사유로 추정된 세금은 제외한다)
2. 양도할 부지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3. 양도할 부지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양도할 부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③ 법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부지 양도가격의 산정 시 그 부지의 취득가액 및 취득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부지 : 그 분양가액 및 그 분양일
2. 제1호에 따른 부지 외의 부지
 - 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지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인근 부지 중 최초로 분양한 부지의 분양가액 및 그 분양일
 - 나.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지 : 실제 취득가액 및 그 취득일

[전문개정 2012.7.26.]

제35조(입주승인의 취소 등에 관한 기간산입의 특례) 부지조성, 설계심사 및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입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지연된 기간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기간은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6조(입주승인 취소 후 남은 업무의 처리)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입주승인 취소에 따른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등의 양도에 관한 업무
 2. 진행 중인 교육·연구업무 중 다른 지역에서 수행할 수 없고 6개월 이내에 끝낼 수 있는 남은 교육·연구 업무 및 그 부대업무
- [전문개정 2012.7.26.]

제36조의2(산업단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구 지정 당시 관리기관이 있는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특구의 관리에 관한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관리업무의 범위 및 기간
3. 그 밖에 특구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2.7.26.]

제3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에 따른 녹지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건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하되, 학교 등 도시계획 시설의 높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7.26.]

제38조(진흥재단의 설립등기) ① 진흥재단의 설립등기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한다. <개정 2013.3.23.>

② 진흥재단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전문개정 2012.7.26.]

제39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진흥재단은 법 제57조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진흥재단은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파견인원, 파견기간, 파견요청 사유 및 자격요건이 포함된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7.26.]

제40조(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 등) ① 진흥재단은 법 제65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7.26.]

제41조(채권의 발행) 진흥재단은 법 제66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발행할 금액(발행총액, 채권별 액면금액 등을 말한다)
2. 발행방법
3. 발행조건
4. 채권의 이율
5.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그 밖에 채권발행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7.26.]

제41조의2 삭제 <2012.7.26.>

제42조(업무의 위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신청서 접수 및 확인
2.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연구소기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3. 법 제37조에 따른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 입주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4.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등 양도승인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

[전문개정 2012.7.26.]

제4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진흥재단은 법 제53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중전 제42조의2는 제42조의3으로 이동 <2014.8.6.>]

제42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30조에 따른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1. 제12조의5에 따른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취소 기준 : 2015년 1월 1일
2. 삭제 <2015.8.3.>
3. 제23조의2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기준 : 2015년 1월 1일
4.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 : 2015년 1월 1일
5. 제36조에 따른 입주승인 취소 후 남은 업무의 처리 : 2015년 1월 1일
6. 제37조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관한 특례 범위 :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3.12.30.]

[제42조의2에서 이동 <2014.8.6.>]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법 제7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제42조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7.26.]

제4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5.8.3.>

[전문개정 2012.7.26.]

부칙<제26454호, 2015.8.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제24조제3항·제5항·제6항, 제25조, 제42조의3제2항, 제44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 제30조, 별표 7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시설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업시설구역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또는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대수선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호, 제30조, 별표 7 및 별표 7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 2012.8.2.] [법률 제11275호, 2012.2.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044-202-7430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을 취할 수 없다.

제4조 삭제 <2010.6.8.>

제5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의 추진방향



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8.]

제6조(실태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용정책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7조(사회적기업의 인증)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 2012.4.15.]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합자조합에 관한 부분

제9조(정관등)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용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관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 2012.4.15.]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합자조합에 관한 부분

제10조(경영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제10조의2(교육훈련 지원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8.]

제11조(시설비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용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 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 [전문개정 2010.6.8.]

제13조(조세감면 및 사회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5조(연계기업의 책임 한계)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조세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제16조의2(사회적기업의 날) ① 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기업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기업의 날로 하며, 사회적기업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적기업 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8.]

제17조(보고 등) ① 사회적기업은 사업 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 내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4월 말 및 10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2.2.1.>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를 기초로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고 사항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를 한 결과 필요한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6.8.]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 ④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
- [전문개정 2010.6.8.]

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사회적기업이 아닌 자는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2.2.1.>
 1. 사회적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기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
 3.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4.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5.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사회적기업 관련 국제교류 협력
 7.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진흥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등의 공공기관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⑧ 진흥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⑨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⑩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흥원을 지도·감독하며, 진흥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진흥원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⑪ 진흥원의 정관, 이사회·임원, 회계,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조,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⑫ 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0.6.8.]

[중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0.6.8.>]

제2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2.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에 관한 업무
3.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관한 보고서의 수리(受理)
4. 제1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전문개정 2010.6.8.]

[제20조에서 이동, 중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10.6.8.>]

제22조(벌칙)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0.6.8.]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를 위반하여 사회적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정관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0조제12항을 위반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21조에서 이동 <2010.6.8.>]

부칙<제11275호, 20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합자조합에 관한 부분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취소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거적이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16.7.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타법개정]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044-202-7430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0.12.9.]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보육 서비스
2.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3.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4.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5.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6.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7.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
 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 [전문개정 2010.12.9.]

제4조 삭제 <2010.12.9.>

제5조 삭제 <2010.12.9.>

제6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사회적기업의 경영인력 양성 및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교육·훈련
 3. 법 제5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에 드는 재정
 4. 그 밖에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주요 시책
- [전문개정 2010.12.9.]

제7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9.]

제7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9조에 따른 지역고용정책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2. 사회적기업을 통하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및 고용창출 목표량
3.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4. 법 제11조에 따른 시설비 등의 지원, 법 제12조에 따른 우선 구매 및 법 제13조에 따른 조세감면과 사회보험료 지원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5. 예산 등 재원 조달 계획
6.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도지사는 매년 전년도 추진 실적과 해당 연도 지원계획(이하 “연도별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 : 2011년부터 매 5년이 되는 연도의 1월 15일



2. 연도별 지원계획 : 2012년부터 매년 1월 15일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제출받으면 이를 정책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9.]

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2.6.5., 2012.8.3.>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전문개정 2010.12.9.]

제9조(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 후단에 따라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3.12.30., 2016.6.30.>

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50(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일 것
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50(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이상일 것
3.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가.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4.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30(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전문개정 2010.12.9.]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30.>
[전문개정 2010.12.9.]

제11조(정관등의 기재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2.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3. 사회적기업의 회계

[전문개정 2010.12.9.]

제12조(경영 지원업무의 위탁)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6.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한정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 가. 상근(常勤)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 나. 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다. 삭제 <2012.6.5.>
 - 라.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를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사립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9.]

제12조의2(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6.5.]

[중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4로 이동 <2012.6.5.>]



제12조의3(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2. 인증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3. 인증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증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본조신설 2012.6.5.]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5로 이동 <2012.6.5.>]

제12조의4(정관)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3. 임원
 4. 이사회
 5. 사업
 6. 예산 및 결산
 7. 재산 및 회계
 8. 정관의 변경
 9.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10. 해산
 11. 공고에 관한 사항
- ② 진흥원의 정관 변경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본조신설 2010.12.9.]

[제1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4는 제12조의6로 이동 <2012.6.5.>]

제12조의5(임원) ① 진흥원의 임원은 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한다.

-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원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2. 기획재정부에서 진흥원의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1명
- ⑤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임명한다.
- ⑥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에게는 직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0.12.9.]

[제1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5는 제12조의7로 이동 <2012.6.5.>]

제12조의6(이사회) ① 진흥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정관의 변경
2. 진흥원의 조직
3. 원장의 선임 및 해임
4. 중요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5. 사업계획과 예산·결산
6. 주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7.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2.9.]

[제12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6은 제12조의8로 이동 <2012.6.5.>]

제12조의7(회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12.9.]

[제12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2조의7은 제12조의9로 이동 <2012.6.5.>]

제12조의8(업무의 협조) 원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9.]

[제12조의6에서 이동 <2012.6.5.>]

제12조의9(설립등기)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3. 임원의 성명과 주소

[본조신설 2010.12.9.]

[제12조의7에서 이동 <2012.6.5.>]

제13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 제출의 명령, 시정명령
3. 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청문



4.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전문개정 2010.12.9.]

제1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에 관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의 용자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건비 지원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14.8.6.]

제1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0.12.9.]

부칙(제27299호, 2016.6.30.)(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2016.3.2.] [법률 제14053호, 2016.3.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협동조합정책과) 044-215-59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④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21.>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제3조(명칭) 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협동조합연합회는 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는 문자를 각각 명칭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 및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명칭과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④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그 명칭에 국가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가나 시·도의 대표성이 있는 것으로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자금, 회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2016.3.2.>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그 명칭에 제4항에 따른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국가나 지역에 대한 대표성 등에 일반인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그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시행일 : 2016.9.3.] 제3조제4항

제4조(법인격과 주소) ① 협동조합등은 법인으로 한다.

②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설립 목적)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 한다)의 복리 증진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며, 조합원등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수요에 부응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원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등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책무)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조합원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 또는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①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자율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 정부 및 기관과 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제10조의2(경영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

제10조의3(교육훈련 지원)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조합원등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

제11조(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발전 전략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상호협력 및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 실태조사의 결과 및 협동조합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과 협동조합의 자율적인 활동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와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총괄 및 기본계획의 수립과 협의·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협동조합의 활동현황·자금·인력 및 경영 등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하여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1.]



제11조의2(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① 협동조합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합병·분할의 신고 또는 인가에 관련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관리·감독에 관련된 사항
4. 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 등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협동조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12조(협동조합의 날) ① 국가는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로 지정하며,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일을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동조합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불공정거래행위 등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1.>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제4조제1항의 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인”은 “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항의 사회적협동조합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제1편제3장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은 “사회적협동조합등”으로, “사원”은 “조합원등”으로, “허가”는 “인가”로 본다.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15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

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16조(정관) 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③ 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1.21.>

제17조(규약 또는 규정) 협동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등) ① 발기인은 제15조의2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



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신설 2014.1.21.>

[제목개정 2014.1.21.]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 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제2절 조합원

제2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은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1조(가입) ① 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협동조합에 납입한 출자금은 협동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탈퇴)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파산한 경우
4.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6.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조합원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제명) ①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한 기간 이상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 및 경비의 납입 등 협동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조합원에게 제명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6조(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27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 ④ 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27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른 지분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절 기관

제28조(총회) ① 협동조합에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④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시기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 ⑤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총회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협동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 8의2.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9. 총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 제7호, 제8호, 제8호의2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의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1.>

제30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1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경우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다.

- ②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③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는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그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 ④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 ⑤ 대의원의 임기, 선출방법 및 자격 등 대의원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제32조(이사회) ① 협동조합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회의 개의 및 의결 방법 등 이사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제33조(이사회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협동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의 제정·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법령 또는 정관으로 이사회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협동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또는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4조(임원) ① 협동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의 정수 및 이사·감사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조합원인 법인이 협동조합의 임원인 경우 그 조합원인 법인은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고, 그 선임한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성격, 조합원 구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받아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제35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동조합의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4.1.21.>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제34조제4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1.>

[제목개정 2014.1.21.]

제3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3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협동조합은 임원 및 대의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 의 의 결을 준수하고 협동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려면 해당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대표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협동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4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협동조합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협동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4.1.21.>

제43조(감사의 대표권) ① 협동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을 하는 때에는 감사가 협동조합을 대표한다. <개정 2014.1.21.>

② 제34조제5항에 따라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소송을 하는 때에는 협동조합,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협동조합을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제4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협동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은 사업의 성격과 조합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⑤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4.1.21.>

제4절 사업

제45조(사업) ①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2. 협동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3. 협동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② 협동조합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협동조합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46조(사업의 이용) 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30.]



제5절 회계

제47조(회계연도 등) ① 협동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협동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각 회계별 사업부문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8조(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운영의 공개)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④ 삭제 <2014.1.21.>

제49조의2(경영공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은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50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이하 “법정적립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② 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적립(이하 “임의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50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잉여금 배당의 경우 협동조합사업 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결산보고서의 승인) ① 협동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3조(출자감소의 의결) ① 협동조합은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의결하면 의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협동조합은 제1항의 기간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에 신청하여야 할 것을 공고함과 동시에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54조(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53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의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협동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5조(출자지분 취득금지 등)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56조(합병 및 분할) ① 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협동조합이 합병할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합병신고를, 분할 후 새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설립신고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신고를 각각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⑤ 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 ⑦ 제6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 ⑧ 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제57조(해산) ① 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 ② 협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신고서를 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58조(청산인) ①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청산사무가 종결될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9조(잔여재산의 처리) ① 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개정 2014.1.21.>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2제4항에 따라 조직변경 시 협동조합의 적립금으로 한 사내유보금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동조합에 기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제60조(「민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6절의2 조직변경 <신설 2014.1.21.>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법인등과 조직이 변경된 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법인등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 ④ 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50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 ⑤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고·인가·허가·승인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 ⑥ 법인등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등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4.1.21.]

제7절 등기

제61조(설립등기) 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1., 2016.3.2.>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임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신고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2조(지사사무소의 설치등기) 협동조합이 지사사무소를 설치하였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지사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8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63조(이전등기) ① 협동조합이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면 전소재지와 현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제64조(변경등기) ① 협동조합은 제6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 및 해당 지사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각각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61조제2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등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등기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⑤ 출자감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65조(합병등기) ① 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6조(해산등기) ① 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청산인등기) ① 청산인은 그 취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이사장이 청산인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청산종결등기) ①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서에는 제58조제3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법인등이 제60조의2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를,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69조(등기부) 등기소는 협동조합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0조(「비송사건절차법」 등의 준용) 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법」 중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설립

제71조(설립신고 등) ①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제71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제71조에 따라 설립신고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신고를 반려하거나 보완 요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7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본다.

제2절 회원

제73조(회원의 자격) ① 연합회의 회원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으로 한다.

- ②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4조(탈퇴)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된다.
 1.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5조(의결권 및 선거권) 연합회는 회원인 협동조합의 조합원 수, 연합회 사업참여량, 출자좌수 등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을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76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원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제3절 기관

제77조(총회) 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회장과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78조(임원)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9조(준용규정) 연합회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제4절 사업

제80조(사업) ① 연합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정관으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② 연합회의 사업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요건·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③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80조의2(공제사업) ① 제8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 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회원들이 각자 나누어 낸 공제료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의 한도 내에서 공제료를 낸 회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②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요건 및 절차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

제81조(사업의 이용) ① 연합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회원인 조합의 조합원이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제5절 회계

제82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49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83조(준용규정) 연합회의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 제6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고, 제56조제4항 중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는 “제71조, 제71조의2 및 제72조”로 보며, 제58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제7절 등기

제84조(준용규정) 연합회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1조부터 제68조까지,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제4장 사회적협동조합

제1절 설립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삭제 <2014.1.21.>

제86조(정관) ①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의 출자좌수 한도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게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③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14.1.21.>



제87조(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① 발기인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사장이 그 사무를 인수하면 기일을 정하여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출자금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 현물출자자는 제2항에 따른 납입기일 안에 출자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등록, 그 밖의 권리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협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 <신설 2014.1.21.>

제88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17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본다.

제2절 조합원

제89조(출자금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①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은 탈퇴(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와 제90조에서 같다)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자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90조(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89조에 따른 출자금의 환급분을 계산할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탈퇴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의 납입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91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3절 기관

제92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기관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제4절 사업

제93조(사업)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지역(시·도의 관할 구역을 말하되, 실제 생활권이 둘 이상인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생활권 전체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지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1.2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4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신설 2014.1.21.>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호복리 증진을 위하여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에서 소액대출과 상호부조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액대출은 납입 출자금 총액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② 제1항의 사업에 따른 소액대출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사업의 이용) 사회적협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9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전년도 구매 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5절 회계 등

제96조(운영의 공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회계장부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21.>



- ③ 협동조합의 채권자와 조합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 ④ 삭제 <2014.1.21.>

제96조의2(경영공시)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정관과 규약 또는 규정
 2. 사업결산 보고서
 3. 총회,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상황
 4. 제93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4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결과 보고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공시를 대신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합 공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사회적협동조합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영공시 또는 통합 공시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97조(법정적립금 및 임의적립금)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 ② 사회적협동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등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 ③ 사회적협동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법정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8조(손실금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97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99조(부과금의 면제)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과 재산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제10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 및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제6절 합병·분할·해산 및 청산

제101조(합병 및 분할)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 또는 분할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를 준용한다.
- ⑤ 삭제 <2014.1.21.>
- ⑥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과 합병하거나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이외의 법인, 단체 및 협동조합 등으로 분할할 수 없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1.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2.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회사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5. 협동조합
- ⑧ 제7항에 따른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 ⑨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 및 분할에 관하여는 제53조 및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

제102조(해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의결
 3. 합병·분할 또는 파산
 4. 설립인가의 취소
- ② 사회적협동조합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14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103조(청산인)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파산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사회적협동조합의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다음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를 감독한다.

제104조(잔여재산의 처리)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할 경우 부채 및 출자금을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공익법인
4. 국고



제105조(「민법」 등의 준용)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제81조, 제87조, 제88조제1항·제2항,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제1항·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6절의2 조직변경 <신설 2014.1.21.>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2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개정 2016.3.2.>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 법인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6.3.2.>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6.3.2.>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개정 2016.3.2.>
- ⑤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 ⑥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 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

[본조신설 2014.1.21.]

제105조의3(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의 유한책임회사로의 조직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21.]

제7절 등기

제106조(설립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3.2.>

1. 제8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인가 연월일
4.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다만, 이사장이 아닌 임원의 주소는 제외한다.

③ 설립등기를 할 때에는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④ 제2항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설립인가서, 창립총회의사록 및 정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합병이나 분할로 인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서류
2. 제53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제54조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07조(합병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인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변경등기를,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해산등기를, 합병으로 설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각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8조(해산등기) ① 사회적협동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제4항의 경우 외에는 청산인이 신청인이 된다.

③ 해산등기신청서에는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설립인가의 취소로 인한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0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조직변경대상법인이 제105조의2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105조의2제7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14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21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은 해산등기를, 사회적협동조합은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

[본조신설 2014.1.21.]

제109조(등기일의 기산일) 등기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 등이 필요한 것은 그 인가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계산한다.

제110조(준용규정) 사회적협동조합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제8절 감독

제111조(감독)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설립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85조에 따른 설립인가 및 절차에 적합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이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의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이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사·검사·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게 할 수 있다.
- ⑥ 삭제 <2014.1.21.>

제112조(설립인가의 취소)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2016.3.2.>

1.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제1항에 따른 주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2회 이상 제1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5. 제106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면, 즉시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

제113조(청문)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12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제114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1.>

제115조(준용규정)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2장 중 제17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부터 제41조까지, 제4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69조 및 제7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이사장”은 “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19조제1항 중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로 보며, 제22조제2항 중 “조합원 1인”은 “한 회원”으로, “100분의 30”은 “100분의 40”으로 보고, 제40조제1항 중 “5분의 1”은 “3분의 1”로 보며, 제37조 중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②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3장 중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 제78조, 제80조, 제80조의2 및 제81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개정 2014.1.21.>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관하여는 제4장 중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6조, 제96조의2,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 제102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09조 및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보고, 제86조제1항제3호 중 “조합원 및 대리인”은 “회원”으로 보며, 제101조제4항 중 “제85조, 제86조 및 제88조”는 “제114조 및 제115조”로 보고, 제103조제4항 중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1.>

제6장 보칙

제11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주 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 등으로서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정하여 위탁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시행일 : 2014.7.22.] 제116조제3항

제7장 벌칙

제117조(벌칙) ①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사업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사용한 경우
2. 투기를 목적으로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용한 경우
-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45조제3항, 제50조제1항·제3항,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 제58조, 제80조제3항, 제97조제1항·제3항, 제98조, 제103조 및 제104조(제82조·제83조·제100조 또는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를 한 경우
 3.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직선거에 참여한 자
 2. 제37조(제79조·제92조 및 제11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18조(양벌규정)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업무에 관하여 제1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협동조합등 또는 사회적협동조합등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자
3. 제3조제5항에 따른 명칭의 사용 금지 또는 수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②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제76조·제91조 및 제11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 등 1인의 출자좌수 제한을 초과하게 한 경우
 2. 제23조제1항(제9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조합원의 의결권·선거권에 차등을 둔 경우
 3. 제46조, 제81조 및 제95조(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조합원등이 아닌 자에게 협동조합등의 사업을 이용하게 한 경우
 4. 제94조를 위반하여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의 총사업한도, 이자율, 대출한도, 상호부조의 범위, 상호부조금, 상호부조계약 및 상호부조회비 등을 초과하게 한 경우
- ③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임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1.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때

2. 제49조제2항(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제2항(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류비치를 게을리한 때
 3. 제49조(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9조의2(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6조(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6조의2(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영의 공개를 게을리한 때
 4. 감독기관 또는 총회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제14053호, 2016.3.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등기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고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1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되려면 2016년 11월 30일까지 제1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협동조합은 동일한 법인으로 본다.

② 2012년 12월 1일 이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가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되려면 2016년 11월 30일까지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소기준을 갖추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쳐 제106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등기 전 사업자와 설립등기 후 사회적협동조합은 동일한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6.5.10.]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5.10., 타법개정]



기획재정부(협동조합정책과) 044-215-59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①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한다)와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사회적협동조합등”이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분야와 내용
2. 사업구역
3. 조합원의 구성
 - ② 협동조합등과 사회적협동조합등은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에서 다른 협동조합등이나 다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이 등기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수정을 명할 때에는 해당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조(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1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 점검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5.6.30.]

제3조의2(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산림청 및 중소기업청
 2.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의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의 자격을 가진다.
 - 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④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6.5.10.>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5.6.30.]

제3조의3(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면 심의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 ④ 심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6.30.]

제4조(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협동조합의 신고와 경영공시 등 협동조합 정책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과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동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 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을 말한다.

1. 소규모 사업자 또는 소비자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할 것
2. 임의로 설립되고, 조합원 또는 회원이 임의로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을 것
3. 각 조합원 또는 회원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질 것
4.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정관에 정해져 있을 것

제2장 협동조합등

제6조(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③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開議)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記名捺印)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 ⑤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7조(협동조합등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8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임원 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필요한 기간은 그 처리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에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된 설립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의 설립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제2항 전단에 따른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이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신고확인증 발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9조(대의원 총회)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200인을 말한다.

제10조(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법 제44조제4항(법 제7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1.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임원이 직원을 겸직하기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3. 그 밖에 협동조합의 규모·자산·사업 등을 고려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1조(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법 제46조 및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
2. 그 밖에 협동조합등의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6.30.]

제12조(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①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협동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1.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
2. 직전 사업연도의 결산보고서(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에 적힌 출자금 납입총액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

② 협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변경되어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이 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 법 제56조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② 법 제56조제6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내유보금) 법 제6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등(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제15조(조직변경의 신고) ①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조직변경 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에 따라 발급하는 신고확인증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협동조합연합회 등의 공제사업) ① 법 제80조의2(법 제1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협동조합연합회”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2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가 공제사업의 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회원 수가 10인 이상일 것
 2.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② 법 제80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공제사업의 인가를 신청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제규정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제사업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80조의2에 따른 공제사업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제사업 인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공제규정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⑦ 법 제8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협동조합연합회는 공제사업 인가 변경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인가받은 사항의 변경 신청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사회적협동조합등

제1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 절차)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과 예산
3. 임원의 선출
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③ 창립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가운데 창립총회에서 선출한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19조(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등)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5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는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생산자, 소비자, 직원,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구성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기준에 따른다.

1. 개설되는 의료기관 1개소(個所)당 설립동의자가 500인 이상일 것
2. 설립동의자 1인당 최저 출자금이가 5만원 이상일 것.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인당 최고 출자금이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일 것. 다만,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총액을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자산 중 출자금 납입총액의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할 수 있다.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③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하려는 해당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마다 제2항 각 호의 요건(제2항 각 호 중 “설립동의자”는 “조합원”으로 본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및 인접 시·군·구에 추가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해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다.

제20조(사회적협동조합등 임직원의 겸직) ① 사회적협동조합등은 법 제92조 및 제115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직원을 겸직하는 임원 수가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등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이 직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를 적용할 때 “조합원”은 “전체 회원 조합에 속하는 총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

제21조(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93조제1항제1호의 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 가. 지역특산품·자연자원 활용사업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재생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 나.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 다. 그 밖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2. 법 제93조제1항제2호의 사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 가. 교육, 보건·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 나.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다.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3. 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사업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이나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일 것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 사업의 판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이하 이 조에서 “소액대출”이라 한다)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1. 조합원의 수
 2. 출자금 규모
 3. 소액대출의 종류
- ② 소액대출 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소액대출 이자율의 최고 한도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를 고려하여 정한다.
- ③ 소액대출의 연체이자율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다.
- ④ 소액대출 사업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23조(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①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이하 이 조에서 “상호부조”라 한다)는 조합원들이 조합원 간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각자 나누어 낸 상호부조회비를 적립금으로 하여 그 적립금으로 상호부조회비를 낸 조합원에게 혼례, 사망, 질병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 일정 금액의 상호부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상호부조금의 지급 사유와 사유별로 지급되는 상호부조금의 한도 등 상호부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 ③ 법 제94조제2항에 따른 상호부조계약과 상호부조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 ④ 상호부조를 위한 적립금은 법 제93조의 주 사업 및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따로 회계처리되어야 한다.

제24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법 제95조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없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5.6.30.>

1. 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사업
 2. 의료기관을 개설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보건·의료 사업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 성격·유형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과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제25조(보건·의료 사업을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①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원이 아닌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사람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제24조제2항에 따른 총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선택하는 기준을 적용하되,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공급고를 산정한다.

제26조(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 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협동조합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영공시)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9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법 제96조의2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28조(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①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흡수합병이 법 제5조에 따른 설립 목적과 법 제6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반하지 아니할 것
 2. 흡수합병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흡수합병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② 법 제101조제7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흡수합병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사내유보금) 법 제105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으로 한정한다) 및 법인등이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제30조(조직변경의 인가) ① 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인가받으려는 자는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조직변경 인가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보완할 필요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조직변경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제31조(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의 공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를 공고할 때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32조(권한의 위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93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주 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86조제3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인가
3. 법 제10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합병인가 및 분할인가
4. 법 제102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신고
5. 법 제103조제5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청산 사무의 감독
6. 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
7.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해산등기 촉탁
8. 법 제111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감독(제2항제8호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9. 법 제112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10. 법 제113조에 따른 청문
11. 법 제119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16조제3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교류·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행사 등 사업에 관한 사항
5. 법 제49조의2(법 제8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96조의2(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경영공시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6. 법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8.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감독에 필요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확인에 관한 사항
9. 법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 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항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기획재정부장관(법 제116조제2항·제3항과 이 영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72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합병신고·설립신고 및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83조에서 준용되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6. 법 제85조제1항 및 제114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무
 7. 법 제86조제3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정관 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8. 법 제101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합병 인가 및 분할인가에 관한 사무
 9. 법 제101조제7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흡수합병 인가에 관한 사무
 10. 법 제102조제2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11. 법 제103조제5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청산 사무 감독에 관한 사무
 12. 법 제105조의2제6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
 13. 법 제111조(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감독에 관한 사무
 14. 법 제112조제1항(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사무
- ② 시·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

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3.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합병신고·설립신고 및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협동조합의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등의 조합원 등이 아닌 자의 사업 이용 제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까지(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제27129호, 2016.5.10.>(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 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학 창의적
자산 기반

창UP

길잡이

집필진 김유신, 이지훈, 김해도, 박태식, 류인호, 김한기

발행일 2016년 8월 31일

발행처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가 격 비매품

문의처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진흥팀
박태식 연구원 042)869-6405 ptslib@nrf.re.kr

인쇄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203번길 56-7
세종디자인기획인쇄 042-633-3227

ISBN : 979-11-86956-04-5

본 책자의 원문파일(PDF)은 산학협력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uicc.re.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책의 저작권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 있으며
저작권법에 의해 대한민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발간에 참여하신 분들

• 기획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실
이상돈(교육부), 황현정(교육부), 박소하(교육부), 석종현(교육부),
김한기(한국연구재단), 김해도(한국연구재단), 박태식(한국연구재단)

• 집필진

김유신(한국PCP), 이지훈(한국기술지주회사협회),
김해도(한국연구재단), 박태식(한국연구재단), 류인호(한국연구재단),
김한기(한국연구재단)

• 감수진

박근태(부산대학교), 김승균(이산컨설팅그룹), 김훈배(연세대학교)

